

#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波及效果와 政策課題

貯蓄推進中央委員會  
韓國租稅研究院

## 序 言

1993년 8월 12일 전격적으로 실시된 金融實名制를 實名制의 始作이라고 한다면, 1996년부터 시행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實名制의 完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로서의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補充과 改善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國民經濟의 透明性을 確保하고 課稅의 衡平性을 提高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懷疑的인 視角과 憂慮가 제기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에 따른 資金移動으로 金融市場에 混亂이 誘發되고 이로 인해 國民經濟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반면에 이러한 가능성을 지나치게 우려하여 綜合課稅에 대한 例外를 넓게 허용함으로써 課稅衡平和 去來의 透明性 確保라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本然의 目的이 毀損되었다는 相反된 우려도 常存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否定的·懷疑的 視角을 拂拭시키고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를 國民的 合意下에 시행하고 또한 早期에 定着시키기 위해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에 따라 예상되는 經濟的 波及效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연구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는 명확한 概念의 定立이 행해진 후 客觀的이고 科學的인 分析이 따르는 深層的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斯界의 專門家들에 의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우선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과 그 意味를 살펴본 후,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과 우리 經濟에 미치는 效果를 深層의으로 分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金融機關 從事者와 經濟 專門家들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하여 그 結果를 分析함으로써 研究의 客觀性 및 完成度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 및 金融實名制의 問題點 및 그에 대한 補充課題, 金融市場 安定과 貯蓄增大를 위한 實踐的인 政策課題 등을 多角的으로 提示함으로써 政策의 樹立과 執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本 연구는 貯蓄推進中央委員會의 財政的 後援으로 韓國租稅研究院의 李仁杓 博士의 總括下에 安鍾範 博士, 崔興植 博士가 共同執筆하여 完成되었다. 이들이 본 연구에서 擔當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李仁杓 (總括,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經濟的 波及效果, 政策課題)

安鍾範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 및 示唆點, 政策課題)

崔興植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設問調査 實施 및 結果分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 연구를 훌륭하게 수행하여주신 세분 博士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貯蓄推進中央委員會와 韓國租稅研究院 任職員 여러분과 設問調査를 도와주신 코리아 데이터 네트워크 關係者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報告書에 담긴 모든 내용은 執筆者들의 意見이며 貯蓄推進中央委員會와 韓國租稅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12月

貯蓄推進中央委員會  
會長 李 相 哲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 目 次

I. 問題의 提起 .....	13
II.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 및 示唆點 .....	15
1.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 및 意義 .....	15
가. 綜合課稅 基準金額의 設定 및 源泉徵收稅率의 引下 .....	16
나.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과 稅金優待貯蓄의 廢止 .....	16
다. 債券利子所得의 課稅 .....	17
라. 長期利子所得에 대한 課稅方案 .....	18
마. 金融所得 등의 資料提出制度 補完 .....	18
바. 所得稅 稅率 및 控除體系 改編 .....	19
2.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租稅負擔의 變化 .....	20
III.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經濟的 波及效果 .....	22
1.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 .....	22
가. 資金移動의 種類 및 問題點 .....	22
나. 資金移動의 要因 .....	24
다. 移動資金規模의 推定 .....	25
라. 資金移動의 時期 .....	30
마. 豫想 資金移動 方向 및 移動量 .....	30
2.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波及效果 .....	57
가. 金融市場에 대한 影響 .....	58
나. 巨視經濟的 影響 .....	59

IV.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設問調查 結果 ..... 61

- 1. 設問調查 概要 ..... 61
  - 가. 設問調查의 目的 ..... 61
  - 나. 設問調查 設計 ..... 61
- 2. 設問調查 結果分析 ..... 63
  - 가.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에 대한 認知度 및 必要性 ..... 63
  - 나.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 ..... 64
  - 다. 金融商品에 流入되었던 資金 중 節稅가 必要한 高額 金融所得者의 比重 ..... 64
  - 라.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로 인한 주요 金融商品의 離脫 比重 ..... 65
  - 마. 資金移動 規模 ..... 67
  - 바. 資金移動 時期 ..... 68
  - 사. 資金 移動處 ..... 68
  - 아. 各 金融機關에 미치는 波及效果 ..... 70
  - 자. 金利·貯蓄에 미치는 影響 ..... 70
  - 차. 期待效果, 改善方向 等 ..... 71

V.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政策課題 ..... 76

- 1.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補完課題 ..... 76
  - 가. 基準金額 引下 ..... 77
  - 나. 低所得層 稅負擔 緩和 ..... 77
  - 다. 實物債券 差等課稅 ..... 78
  - 라. 有價證券 讓渡差益 課稅方案 ..... 80
  - 마. 長期金融所得 課稅方案 ..... 80

- 2. 金融實名制의 補完 ..... 81
  - 가. 借名防止對策: 非實名去來의 實名誘導 ..... 82
  - 나.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強化 ..... 83
  - 다. 金融所得 通報制度 實施 ..... 84
  - 라. 陰性的 資金去來 調節對策 ..... 85
- 3. 金融市場 安定과 貯蓄增入을 위한 政策課題 ..... 86
  - 가. 金融市場 安定對策 ..... 86
  - 나. 巨視政策方向 ..... 88
  - 다. 貯蓄增進方案 ..... 88

**VI. 要約 및 結論 ..... 91**

**參考文獻 ..... 98**

**附錄 I.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設問調查 結果 ..... 101**

- 1.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에 대한 設問紙 ..... 101
- 2. 設問調查 結果 ..... 112
  - 가. 應答者의 身上에 관한 設問 ..... 112
  - 나.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에 관한 設問 ..... 113
  - 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에 관한 設問 ..... 118

**附錄 II. 金融所得 綜合課稅 關聯 主要 法令 ..... 177**

- 1. 1994年 改正稅法(1994년 12월 22일), 施行令(1994년 12월 31일)  
 및 施行規則(1995년 5월 3일) ..... 177
- 2. 1995年 稅法改正(案)(1995년 9월 2일) ..... 192

3. 債券 等에 대한 綜合課稅 關聯 業務處理要領 (1995년 9월 30일)	198
4. 1995年 稅法 施行令 改正(案) (1995년 12월 12일)	210

### 附錄Ⅲ. 主要國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 215

1. 美國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215
가. 綜合所得稅 制度	215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218
다. 所得資料 提出	221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229
2. 英國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232
가. 綜合所得稅制度	232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240
다. 金融機關의 所得資料 提出	242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243
3. 獨逸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243
가. 綜合所得稅制度	243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248
다. 源泉徵收와 所得資料 提出	249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249
4. 프랑스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250
가. 綜合所得稅制度	250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253
다. 源泉徵收 및 申告	255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257

## 表目次

〈表 II- 1〉 稅率體系的變化	19
〈表 II- 2〉 金融所得에 대한 稅負擔 比較	21
〈表 III- 1〉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 金額의 推定	28
〈表 III- 2〉 既存 研究의 豫想 資金移動 規模	29
〈表 III- 3〉 家計 消費·貯蓄에 대한 稅制變化의 影響	32
〈表 III- 4〉 綜合課稅關聯 節稅型 金融商品	35
〈表 III- 5〉 個人部門 金融資產殘額 推移	36
〈表 III- 6〉 個人保有 金融資產殘額 現況(1995年 6月 末)	37
〈表 III- 7〉 金融機關의 主要 商品別 受信 動向	39
〈表 III- 8〉 1억원 以上 巨額預金의 推移(1995年 6月 末 現在)	40
〈表 III- 9〉 預金銀行 受信	40
〈表 III-10〉 投資金融會社의 受信	42
〈表 III-11〉 綜合金融會社의 受信	43
〈表 III-12〉 投資信託會社의 受信	43
〈表 III-13〉 1억원 이상 巨額預金의 推移(1995年 6月 末 現在)	45
〈表 III-14〉 銀行信託의 主要計定	46
〈表 III-15〉 相互信用金庫의 計定	46
〈表 III-16〉 長期 貯蓄性保險 收入保險料 推移	48
〈表 III-17〉 主要 長期債券 現況	50
〈表 III-18〉 5년 이상 長期債 發行 現況	51
〈表 III-19〉 綜合株價指數 推移	53
〈表 III-20〉 株式去來實績 推移	53
〈表 III-21〉 證券會社의 顧客預託金	53
〈表 III-22〉 實名制 實施 이후 現金通貨 動向	54

〈表 III-23〉住宅價格 및 傳貰價格 上昇率	55
〈表 III-24〉地價變動率 推移	55
〈表 III-25〉土地去來量 變動 推移	56
〈表 III-26〉金값 動向(도매기준)	56
〈表 III-27〉外貨資金의 對外支給 現況	57
〈表 IV- 1〉母集團 및 標本의 크기	62
〈表 IV- 2〉資金의 豫想 移動處	69
〈表 IV- 3〉金利 및 貯蓄에의 影響	71
〈附表 I- 1〉應答者의 勤務機關 및 勤務年數	112
〈附表 I- 2〉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認知 程度	113
〈附表 I- 3〉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必要性에 대한 意見	115
〈附表 I- 4〉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가 必要한 措置가 아니라고 判斷한 理由	116
〈附表 I- 5〉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 實施의 影響	118
〈附表 I- 6〉金融市場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判斷한 理由	120
〈附表 I- 7〉金融市場에 深刻한 影響을 미치리라고 判斷한 理由	122
〈附表 I- 8〉金融商品에 流入되는 資金 중 節稅가 必要한 高額金融所得者의 比重	124
〈附表 I- 9〉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銀行 貯蓄性 預金의 離脫比重	126
〈附表 I-10〉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銀行 金錢信託의 離脫比重	128
〈附表 I-11〉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어음賣出의 離脫比重	129
〈附表 I-12〉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CD의 離脫比重	130
〈附表 I-13〉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CP의 離脫比重	131
〈附表 I-14〉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CMA의 離脫比重	132

〈附表 I-15〉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公社債型 受益證券 離脫比重 .....	133
〈附表 I-16〉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滿期5年 미만 債券의 離脫比重 .....	134
〈附表 I-17〉 離脫 資金 總額 中 株式으로의 移動 比率 .....	136
〈附表 I-18〉 離脫 資金 總額 中 債券으로의 移動 比率 .....	137
〈附表 I-19〉 離脫 資金 總額 中 信用金庫의 定期豫受金으로의 移動 比率 .....	138
〈附表 I-20〉 離脫 資金 總額 中 長期 貯蓄性 保險으로의 移動 比率 .....	139
〈附表 I-21〉 離脫 資金 總額 中 長期債券 運用 商品으로의 移動 比率 .....	140
〈附表 I-22〉 離脫 資金 總額 中 證券投資信託으로의 移動 比率 .....	141
〈附表 I-23〉 離脫 資金 總額 中 私債 市場으로의 移動 比率 .....	142
〈附表 I-24〉 離脫 資金 總額 中 不動産으로의 移動 比率 .....	143
〈附表 I-25〉 離脫 資金 總額 中 골동품 등의 實物資産으로의 移動 比率 .....	144
〈附表 I-26〉 離脫 資金 總額 中 海外 流出로의 移動 比率 .....	145
〈附表 I-27〉 離脫 資金 總額 中 奢侈性 消費로의 移動 比率 .....	146
〈附表 I-28〉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銀行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	147
〈附表 I-29〉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短資社 및 綜金社의 收益에 미치는 影響 .....	149
〈附表 I-30〉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證券社의 受信庫 및 受益에 미치는 影響 .....	150
〈附表 I-31〉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保險社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	151

〈附表 I-32〉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投信社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152
〈附表 I-33〉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信協 등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153
〈附表 I-34〉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資金移動이 豫想되는 時期	154
〈附表 I-35〉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移動이 豫想되는 資金 規模	155
〈附表 I-36〉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한 資金移動의 問題點	157
〈附表 I-37〉 計劃中인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問題	160
〈附表 I-38〉 綜合課稅制度의 重要한 補完措置	162
〈附表 I-39〉 綜合課稅로 期待되는 效果	163
〈附表 I-40〉 5年 以上の 長期 貯蓄性 保險 差益 非課稅에 대한 意見	165
〈附表 I-41〉 綜合課稅가 金利의 下向安定化에 미치는 影響	167
〈附表 I-42〉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家計의 金融貯蓄에 미치는 影響	169
〈附表 I-43〉 業務와 관련하여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하여 問議를 받는 頻度	171
〈附表 I-44〉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顧客들이 가장 不便하게  생각하는 點	172
〈附表 I-45〉 現在 實施中인 金融實名制에 대한 評價	173
〈附表 I-46〉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로 借名 및 盜名 去來의 增減 豫測	175
〈附表 Ⅲ-1〉 所得의 種類	216
〈附表 Ⅲ-2〉 樣式의 種類	219
〈附表 Ⅲ-3〉 提出書式의 種類 및 內容	222
〈附表 Ⅲ-4〉 年齡 階級別 賦金限度額	238
〈附表 Ⅲ-5〉 獨身者의 稅負擔	247
〈附表 Ⅲ-6〉 夫婦合算申告時의 稅負擔	247

〈附表 Ⅲ- 7〉所得의 種類 및 內容 .....	251
〈附表 Ⅲ- 8〉課稅階級에 따른 稅率 .....	253

## 圖目次

[圖 III- 1] 家計의 消費·貯蓄 選擇 .....	23
[圖 IV- 1]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 ..	65
[圖 IV- 2] 節稅가  필요한 高額 金融所得者의 流入 比重 .....	66
[圖 IV- 3] 主要 金融商品의 離脫 比重 .....	66
[圖 IV- 4] 豫想 移動資金 規模 .....	67
[圖 IV- 5] 資金移動 時期 .....	68
[圖 IV- 6] 資金의 豫想 移動處 .....	69
[圖 IV- 7] 各 金融機關에 미치는 影響 .....	70
[圖 IV- 8]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期待效果 .....	72
[圖 IV- 9]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顧客이  불편해 하는 점 .....	73
[圖 IV-10]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問題點 .....	73
[圖 IV-11]  필요한 補完 措置 .....	74

## I. 問題的提起

1996년부터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가 實施됨에 따라 다양한 시각에서 論議가 進行되어 왔다. 기준 금액의 설정 등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구체적인 施行方案에 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며,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資金移動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資金移動이 金融市場 및 國民經濟 全體에 미칠 수도 있는 否定的인 影響이 부각되어 논의됨으로써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施行 自體에 상당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本 研究의 目的은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 및 國民經濟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波及效果를 豫測해 보고 그 意味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對策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또한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 發表 이후 제기된 問題點을 토대로 현행 金融所得 綜合課稅 制度의 問題點을 점검하여 長期的인 改善策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우선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意味 및 示唆點을 도출한 후, 그간 지속적으로 논란의 초점이 되어 온 바 있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의 移動 可能性을 평가한다. 여기서는 金融商品間, 金融機關間, 金融市場間, 金融市場과 實物市場間, 消費와 貯蓄間 등 상정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資金移動 可能性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뚜렷한 논리적 근거 없이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대규모의 資金移動을 유발함으로써 金融市場에 큰 혼란을 가져와 國民經濟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논리를 前提로 하고 논의를 전개하였음에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는 명확한 개념정립의 바탕위에서 가능한 한 客觀的인 分析과 科學的인 推論을 이끌어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어서 資金移動이 金融市場 및 巨視經濟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影響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現行 金融所得 綜合課稅 및 金融實名制의 諸般 問題點을 적시하고 그에 대한 補完 및 改善을 위한 政策代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가 短期的·一時的이나마 가질 수 있는 副作用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金融市場을 安定시키고 國民貯蓄을 지속적으로 增大시킬 수 있는 政策방향을 제시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研究의 客觀性を 提高하고 향후 制度改善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할 目的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部門에 미칠 影響에 대하여 金融機關 勤務者 및 金融部門 專門 研究者들이 認識하고 있는 程度를 조사하였던바, 본 보고서에 이 設問調査의 結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골격을 갖추어 온 過程과 그 구체적인 施行方案을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關聯 主要 法令과 施行令 등을 덧붙이는 한편, 주요 先進諸國의 金融所得 綜合課稅 制度를 整理하여 우리나라의 現行 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敎訓과 示唆點을 導出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II.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 및 示唆點\*

### 1.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 및 意義

1994년 稅制改編 당시 基本案이 마련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論難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문민정부 개혁의 상징인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은 결과, 지난 1995년 9월 2일 발표된 정부의 1995년 稅法改正案에서는 企業어음(CP)을 綜合課稅 對象에서 제외하는 등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適用對象 範圍를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예외조항을 크게 할 경우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원래 의미가 상실된다는 비난에 방향을 선회하여 CP뿐 아니라 讓渡性 預金證書(CD)를 綜合課稅 對象에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란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본래 취지인 公平課稅에 충실해야 한다는 租稅論理와 금융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綜合課稅를 수정해야 한다는 金融論理가 상충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논란은 일반적인 經濟問題와 마찬가지로 衡平과 效率의 相衝關係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融所得 綜合課稅 方案은 1994년 稅制改編案에 포함되어 그 骨格이 마련된 뒤 1995년 稅法改正案에 몇가지 問題點에 대한 補完을 反映하였다. 국회에 상정되어 1995년 稅法改正案에 反映된 補完事項을 包含

\* 研究者들은 本章의 研究에 있어서 韓國租稅研究院의 申基銜 研究員과 南美愛 研究助員의 助力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主要 內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綜合課稅 基準金額의 設定 및 源泉徵收稅率의 引下

1994년 稅制改革에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初年度인 1996년에는 金融所得 4천만원(부부합산 기준)을 超過하는 高額所得者에 대하여만 綜合課稅하고 向後 施行成果를 보아 基準金額의 下向 調整을 檢討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sup>.

金融所得이 4천만원을 超過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源泉徵收稅率로 分離課稅하고 4천만원 超過分은 다른 所得과 合算하여 累進稅率로 綜合課稅한 稅額과 源泉徵收稅率을 適用한 稅額 중 큰 金額으로 課稅하는 것으로 하였다. 4천만원 未滿의 金融所得에 대하여는 源泉徵收稅率로 分離課稅하고 綜合課稅選擇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

또한 源泉分離課稅 體制의 維持에 따른 低所得層의 相對的 不利益을 완화하기 위해 源泉徵收稅率을 現行 20%에서 1996년 15%, 1997년 10%로 段階的으로 引下하도록 하였다.

#### 나.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과 稅金優待貯蓄의 廢止

원칙적으로 모든 金融所得을 綜合課稅 對象으로 하였다. 現行 稅金優待貯蓄에 대해서는 源泉徵收稅率을 10%로 인상하고 基準金額 超過時 綜合課稅하며 1996년부터는 現行 貯蓄稅額控除制度(4종)를 廢止한다. 다만 長期貯蓄(2종) 즉, 個人年金貯蓄(10년 이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에 대해서는 政策的으로 支援하는 次元에서 現재와 같이 非課稅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1997년 이후에 一般源泉徵收稅率을 10%로 引下하게 되면 稅金優待貯蓄은 事實상 廢止된다.

1) 여기서 금융소득에 대하여 '夫婦合算 課稅' 하도록 한 것은 우리의 관행상 배우자명의로 금융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명의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증여 조사항목 및 실명확인절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保險差益의 경우 暫定的으로 5년 이상의 保險差益을 非課稅하도록 함으로써 非課稅 對象의 範圍를 縮小하였다(所得稅法 施行令 第25條). 上場株式의 讓渡差益 등 有價證券의 賣買差益에 대한 課稅問題는 1998년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였다.

稅金優待貯蓄 및 長期貯蓄性保險의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신설하였다. 1994년 9월 말 이전 가입자의 長期保險差益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고(所得稅法 附則 第3條), 1994년 9월 말 이전 稅金優待貯蓄 加入者의 경우 滿期商品에 대하여는 當初 契約內容에 따라 滿期(가입일로부터 3년 내)時까지 현행 규정(非課稅 또는 5% 低率分離課稅)을 적용하며(租稅減免法 附則 第13條), 다만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대하여는 1996년부터 3년간 改正稅法의 適用을 猶豫(1998년 말까지의 가입자는 비과세)하도록 하였다(租稅減免法 附則 第17條).

1995년 稅法改正案에서는 10%의 源泉徵收稅率로 分離課稅되는 家計生活資金貯蓄을 新設하여 信用卡과 家計의 決濟가 가능한 1세대 1통장만 허용하고 불입한도는 1,200만원으로 하였다. 즉,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들의 일상적인 신용카드와 가계수표의 결제 등을 위한 生活資金에서 발생하는 利子所得에 대해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時 合算하지 않고 分離課稅로 納稅義務를 종결함으로써 家計生活資金利用의 편의를 제고하고 金融機關과 稅務官署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 다. 債券利子所得의 課稅

債券의 경우, 長期債券을 세제상 우대하기 위하여 債券의 償還期間에 따라 源泉稅率을 二元化하였다. 즉, 5년 이상 長期債券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分離課稅를 선택할 경우 10년 이상은 25%,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는 30%로 源泉分離課稅하도록 함으로써 高額 金融所得者의 資金을 長期債券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1995년 稅法改正案에서는 만기 전 매각하는 各種 債券에 대하여도 源泉徵收하고 賣出者의 人的事項을 國稅廳에 通報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CD, CP 등의 實物保有와 中途賣却을 통해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회피하는 것을 防止함으로써 綜合課稅의 實效性을 재고시키기 위한 措置이다.

中途賣却하는 債券에 대한 源泉徵收義務은 金融機關뿐 아니라 모든 法人에게 부여하여 個人이 法人에 賣却할 경우에도 中途買入하는 法人이 源泉徵收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金融所得 本人通報制의 通報內容에 이미 지급한 이자 이외에 債券 등의 保有期間別 利子 상당액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 라. 長期利子所得에 대한 課稅方案

長期保險差益에 대하여 一般 源泉徵收稅率로 源泉徵收한 후 다른 金融所得과 합하여 基準金額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年分年乘法에 의거하여 綜合課稅하는 方案을 마련하되 對象 金融商品은 施行令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所得稅法 第62條 第3項)<sup>2)</sup>.

債券利子에 대하여는 短期債券인지 長期債券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課稅方法을 달리하되 短期·長期 基準은 追後 施行令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연분연승법에 의한 과세는 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는 長期利子所得(長期債券 利子所得)에 대해서만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長期利子所得으로 4천만원을 먼저 채우고 난 뒤 초과하는 금액을 연분연승하도록 하고 있다(所得稅法 第62條)<sup>3)</sup>.

#### 마. 金融所得 등의 資料提出制度 補完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는 所得資料의 성실

2) 연분연승법은 연평균소득(장기형성소득 : 소득발생연수)을 계산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 평균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소득발생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3) 예컨대 채권이자 5천만원이고 기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일 경우 연분연승 대상 채권이자 1천만원이다.

한 提出과 資料處理의 效率性이 중요하므로 資料提出을 간소화하고 加算稅 規程을 강화하였다. 현재 源泉分離課稅되는 金融所得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영수증 부분 제출제도를 두고 있으나 1994년분은 1995년 4월 말까지 1995년 이후분은 연 2회 제출(8월말, 익년 2월말)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다(所得稅法 第164條).

不誠實提出에 대한 加算稅를 강화하기 위하여 未提出 加算稅는 현재 지급액의 1.5%이던 것을 지급액의 3%와 건당 1천원 중 큰 금액으로, 그리고 遲延提出 加算稅는 현재 지급액의 0.3%를 1%(제출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는 2%)로 상향 조정하였다(所得稅法 第81條 第4項, 第5項).

바. 所得稅 稅率 및 控除體系 改編

金融所得 綜合課稅時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事業所得 課稅現實化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稅率體系를 단순화하였다.

우선 1995년 稅法改正案에서는 증산층 이상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課稅階級區間을 調整하였다.

< 表 II - 1 > 稅率體系의 變化

現 行	改 正
0 ~ 400만원 : 5%	
400 ~ 800만원 : 9%	0 ~ 1,000만원 : 10%
800 ~ 1,600만원 : 18%	1,000 ~ 4,000만원 : 20%
1,600 ~ 3,200만원 : 27%	4,000 ~ 8,000만원 : 30%
3,200 ~ 6,400만원 : 36%	8,000만원 초과 : 40%
6,400만원 초과 : 45%	
* 세율계급 : 6단계	* 세율계급 : 4단계

또한, 稅率體系 調整에 따라 각 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控除水準을 상향조정하고 控除制度를 통합·단순화하여 稅額計算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우선 基本控除인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그리고 扶養 家族控除의 경우 家族 1인당 100만원씩 控除하고 直系卑屬의 控除制限(2인)을 廢止하였다. 또한, 追加控除를 사유당 50만원씩으로 하여 단순화 하였다. 아울러 맞벌이부부 特別控除를 부녀자 세대주 공제와 통합하면서 控除事由를 명확히 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계기로 特別控除制度를 改善하여 控除適用 對象을 事業所得者도 포함하는 모든 所得者에게 擴大하였다.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平均支出費用 控除는 증빙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標準控除制度를 도입하였다. 즉, 各種 控除를 特別控除로 統合하여 現행과 같이 項目別로 控除받는 方法과 연 60만원을 標準控除받는 方法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는 標準控除만 적용된다. 또한 控除 綜合限度를 신설하여 연 240만원으로 하였다.

## 2.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租稅負擔의 變化

金融所得이 基準金額 이상인 高額 金融所得者에 대한 1996년도 所得稅의 計算은 기준금액까지는 15%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하여 綜合課稅하되 金融所得에 대한 稅額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15% 稅率로 課稅한다.

따라서, 高額 金融所得者의 경우 <表 II-2>에서 나타나듯이 綜合所得에 따라 現행보다 세부담이 증가 또는 감소한다. 단, 年間 金融所得 1억 2,380만원 이상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現行 分離課稅體制보다 세부담이 증가한다. 기준금액인 4천만원에서 1억 2,380만원까지의 금융소득을 가진 경우는 다른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세부담이 現행보다 감소할 수도,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1997년

부터 源泉徵收稅率이 15%에서 10%로 인하될 경우 세부담이 현행 분리과세체제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다.

< 表 II -2 > 金融所得에 대한 稅負擔 比較

(단위: 만원)

	현행 세부담 (다른 소득여부에 관계없이 20% 원천분리과세)	종합과세(개정안) 후 변화			
		다른 소득이 다음 금액일 경우 (인적공제전 금액)			
		0	1,000	4,000	8,000
4,000	800	-200	-200	-200	-200
5,000	1,000	-250	754	-146	-46
6,000	1,200	-300	-246	-46	154
7,000	1,400	-350	-246	54	354
8,000	1,600	-392	-192	154	554
9,000	1,800	-338	-192	308	754
10,000	2,000	-238	8	508	954
15,000	3,000	516	862	1,508	1,954
20,000	4,000	1,516	1,862	2,508	2,954

### Ⅲ.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經濟的 波及效果\*

#### 1.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

##### 가. 資金移動의 種類 및 問題點

일반적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에 대하여 專門家들이 가장 우려하는 요인 중 하나는 綜合課稅에 따른 대폭적인 資金移動으로 金融市場이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資金移動이 國民經濟的으로 否定的인 意味를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概念의 定立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既存 研究에서 있어서도 이러한 概念의 正立없이 논의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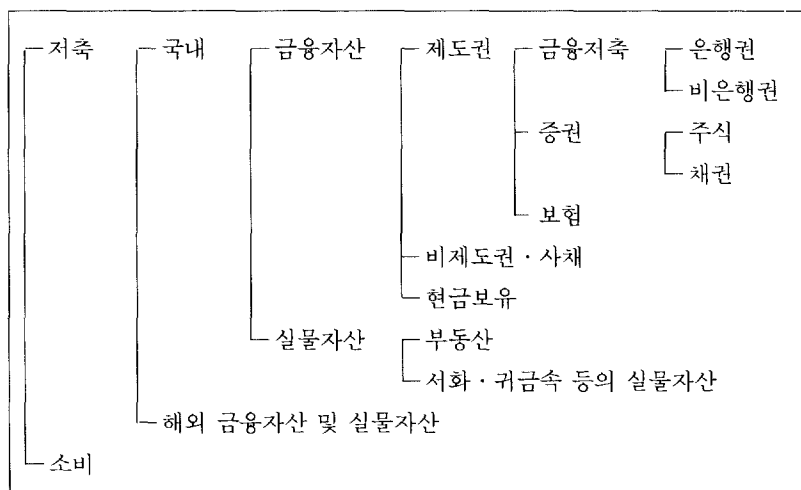
家計의 消費·貯蓄 選擇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圖 III-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의 移動 역시 이러한 消費·貯蓄 선택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 중, 우선 所得增大 및 全般의 生活水準의 向上에 따른 자연스러운 消費의 增加를 否定的으로 볼 수는 없으나, 金融貯蓄이 大幅 減少하고 사회 전반적인 과소비 풍조가 조성되는 것이 國民經濟的으로 바람직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한 生産的 投資行爲가 아닌 資金의 逃避로서 海外 不動產 혹은 金融資產을 취득하는 형태의 자금의 이동은 國富의 海外流出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셋째로 건전한 投資가 아닌 資金의 隱匿 혹은 投機를 목적으로 한 不動產, 貴金屬, 古書畫 등으로의 資金移動도

\* 研究者들은 資料의 分析과 整理에 獻身的으로 힘써준 韓國租稅研究院의 金池蓮 研究員과 尹惠順 研究助員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넷째로 私債市場으로의 資金移動은 租稅衡平 및 稅收確保, 稅務行政上 문제가 되며 國民經濟的으로도 해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섯째, 資産의 收益性보다는 資金의 隱匿을 위하여 現金保有가 증가되는 형태의 資金移動이 있을 수 있으며 바람직하다 할 수는 없으나 量的으로 微微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金融圈 내에서의 資金移動은 長期的으로 金利의 變化, 資金循環構造의 變化, 金融市場構造의 變化 등을 통하여 國民經濟的인 影響을 갖게 되지만 短期的으로는 國民經濟 전체로서보다는 개별 金融기관, 金融圈의 立場에서 볼 때 중요한 경우이다.

이상 여러가지 資金移動 중 綜合課稅와 關聯하여 처음 다섯 종류의 資金移動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마지막의 制度圈 金融市場間의 資金移動이 國民經濟的으로 갖는 影響에 대해서는 반드시 否定的이라고 判斷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資金移動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國民經濟的으로 否定的인 影響을 주는가에 대한 明確한 근거 없이 金融所得 綜合課稅

[圖 III- 1] 家計의 消費·貯蓄 選擇



가 대규모의 資金移動을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자금의 이동이 金融市場에 큰 혼란을 가져와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식의 單線的인 論議가 많이 이루어져 왔음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논의로부터 벗어나 가급적 엄밀한 분석에 기초한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 나. 資金移動의 要因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은 크게 두 가지 要因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순수히 經濟的인 動機에 의한 資金移動으로서 綜合課稅 施行時 稅後收益率의 提高를 目的으로 하며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의한 各 資産의 稅後收益率의 變化에 따라 보다 높은 收益率을 제공하는 代替資産으로 資金이 이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하여 자신의 金融資産 保有規模가 稅務當局 또는 一般에게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려는 動機에 의한 資金移動을 상정할 수 있으며 이런 資金의 移動은 代替資産의 收益率보다는 資産의 隱匿을 주목적으로 하게 된다<sup>4)</sup>.

兩者 모두 保有 金融資産의 滿期構造를 多樣化함으로써 利子 發生時點을 分散시키고, 법정한도 내 贈與를 活用하여 子女 名義의 預金을 통해 課稅對象 資産을 縮小시키며, 長期債券, 長期 貯蓄性保險, 個人年金貯蓄 등 각종 非課稅 및 分離課稅 대상 金融商品을 活用하는 合法의 手段 외에도 企業名義 使用, 合意借名을 이용한 計座의 分散 등의 非法的인 手段을 통해 節稅·脫稅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後者の 경우 稅後收益率 下落에 대응한 節稅보다는 資金의 出處를 의심받게 되거나 高額 金融所得者로 分類되어 國稅廳에 通報되는데 따른 資金出處調査, 稅務調査의 可能性을 회피하려는 것이 주요 목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姜錫勳(1995. 9) 참조.

적이 되므로 전술한 바와 같은 각종 節稅技法뿐 아니라 奢侈性 消費, 資金의 海外搬出, 現金保有 增加, 私債市場 혹은 實物市場으로의 資金 移動 등 가용한 모든 合法·非合法的 수단을 동원하여 최대한으로 綜合課稅를 회피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社會的 與件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예상되는 資金移動 중 상당 부분이 후자에 의한 것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으며 國民經濟的으로도 이 경우의 부작용이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 다. 移動資金規模의 推定

本 研究에서 資金의 移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稅制의 變化를 크게 나누어 보면, ① 稅率體系 變更 및 各種 控除額 引上으로 인한 稅率의 全般的 引下, ② 利子 및 配當所得 등 金融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稅率의 引下, ③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稅金優待貯蓄의 縮小 包含) 등이다.

家計의 消費 및 貯蓄行態에 대한 이들의 영향은 一義的으로 말할 수 없으나, 稅金優待貯蓄의 縮小가 對象家計들의 貯蓄에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리라는 것은 분명하며 金融貯蓄으로부터의 流出要因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稅金優待貯蓄 加入者는 一般的으로 中低所得層으로서 預金을 引出하여 債券, 株式, 實物資產 등 代替資產에 투자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기타 長期性 商品으로 資金을 대량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또한 전반적 稅率引下 및 金融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引下が 貯蓄에 대한 誘引으로 作用하게 된다. 따라서 일부 자금이 주식투자나 소비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稅金優待貯蓄의 縮小로 인한 자금의 이동은 微微할 것으로 상정하고 이하에서는 綜合課稅 對象 高額 金融所得者가 保有하는 金融資產의 移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기로 한다.

綜合課稅 대상 高額 金融所得者가 保有하는 金融자산 중 이동가능한 자금의 총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綜合課稅가 실시되는 金融所得 綜

합課稅 대상자의 소득분포 및 그들의 금융자산 보유현황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러한 자료가 可用하지 않으므로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추정할 수밖에 없으며 단순하나마 다음과 같은 계산이 가능하다.

1993년 정부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내용이 담긴 稅制改編案을 발표하면서 밝힌 바에 의하면, 1991년 자료를 기초로 하여 1996년의 基準金額 4천만원 이상의 金融所得者를 추정한 결과 종합과세 대상자 수는 약 10만명, 이들의 金融所得은 약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綜合課稅 對象者들의 平均 金融所得이 대략 1억원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5년 9월 11일의 財政經濟院 발표에 따르면 年間 金融所得이 4천만원을 超過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者數가 1994년 말 현재 3만 1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sup>5)</sup>.

綜合課稅 對象者들의 平均 金融所得을 1994년 말 현재 1억원으로 보고 金融資産 年平均 收益率을 12%로 가정하면, 이들의 평균 금융자산은 약 8억 3천만원이 되며 이들 3만 1천명이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약 26조원으로서 1994년 말 현재 개인부문 금융자산 총액 401조원의 약 6.4%가 된다.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의 분기별 평균증가율을 3%로 가정하면 1995년 9월 말의 개인부문 금융자산의 총금액은 438조원이 된다. 따라서 그 6.4%인 28조 2천억원이 1995년 9월 말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 규모가 될 것이다.

역시 금융자산 연평균 수익률을 12%로 가정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4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액수는 약 3억 3,300만원이 되며 따라서 源泉徵收對象 金額은 약 10조 3천억원(3억 3,300만원 × 3만 1천명)이 된다. 결국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자산 총액 28조 2천억원 중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총금액은 18조원 내외가 된다<sup>6)</sup>.

5) 예상 金融所得 綜合課稅 대상자의 수가 당초의 10만명에서 3만 1천명으로 대폭 감소하게 된 원인은 1993년 8월의 金融實名制에 따라 종래에 개인명의로 되어 있던 기업소유 금융자산이 기업소유로 환원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추정된 금액 전부가 代替資産을 찾아 이동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우선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에 따라 여타 소득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증가하는 金融所得 水準은 1억 2,380만원이며 여기에 年平均 收益率을 12%로 가정하면 이에 해당하는 金融資産 規模는 약 10억 3천만원이 된다. 즉, 고액 金融所得者라도 10억 3천만원 이하의 金融資産을 가진 자는 여타 소득이 없는 경우 오히려 稅負擔이 減少하여 資金을 移動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sup>7)</sup>.

또한 1995년 말의 비자금과문에서 드러났듯이 상당수의 거액자산가들이 이미 다양한 非課稅 및 分離課稅 對象 金融商品을 買入하였으며, 이외에도 合意借名, 企業名義 金融商品의 적절한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회피수단을 강구해 놓았을 가능성이 많다.

예컨대 대표적인 分離課稅 商品인 國民住宅債券 1, 2種(1995년 9월 현재 잔액은 약 9조원 추산)의 상당 부분을 이들이 保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1995년 들어 9월 말까지 발행된 만기 5년 이상 각종 長期債券(약 5조 8천억원) 역시 그 상당부분이 이들에 의해 買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년 이상 長期貯蓄性保險 역시 유력한 綜合課稅 回避商品으로서 고액 금융소득자들의 자금이 상당액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6) 이러한 추정은 여러가지 假定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중 종합과세 대상자가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발표 이후 綜合課稅 對象者의 數가 3만 1천명 이하로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1994년 말 현재 綜合課稅 對象者의 平均 金融所得 역시 1억원보다 작을 수도 있다. 따라서 1995년 9월 말 현재 綜合課稅 對象 總金額은 18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추정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러가지 수치를 사용해 본 결과, 假定에서 사용된 수치가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종합과세 대상 金融資産의 규모는 15조원~25조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7) 물론 금융소득이 10억 3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여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여 자금을 이동할 유인이 있으며, 세부담에 관계없이 자금은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금을 이동시킬 유인이 생기게 된다.

〈表 Ⅲ-1〉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 金額의 推定

(단위: 조원)

	1994	1995		
	12월	3월	6월	9월
개인보유 금융자산 계(A)	401	411	426	438 <sup>1)</sup>
종합과세대상자 보유 금융자산 계(B)	25.8	26.6	27.4	28.2
B/A	0.064 <sup>2)</sup>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수(명)	31,000 <sup>2)</sup>			
원천징수 대상 금액	10.3 <sup>2)</sup>			
종합과세 대상 금액	15.5	16.3	17.1	17.9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계	3.1	3.2	3.3	3.4
종합과세 대상자 평균금융자산(억원)	8.30	8.58	8.83	9.08
종합과세 대상자 평균금융소득(억원)	1.00	1.03	1.06	1.09

註: 1) 추정치.

2) 1994년 말 수치로서 이후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이상의 諸般 要因을 綜合的으로 고려할 때 綜合課稅에 對應하여 실제로 이동할 誘引이 있는 자금의 규모는 5조원 내외, 많아도 10조원 이하로 추정된다. 여기서 추정된 금액은 1995년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추정된 규모이며 따라서 1995년 10월 이후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의 규모를 말한다. 이러한 예상 이동자금 규모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수치이며 참고로 〈表 Ⅲ-2〉에 기존연구의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sup>8)</sup>.

물론 이러한 규모의 자금이 반드시 制度金融圈 밖으로 이탈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대부분의 자금이동이 制度金融圈 내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제로 자금이 이동하는 방향은 非課稅 혹은 分

8) 표에 정리된 기존의 연구들 중 일부는 예외 없는 종합과세 방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일부는 종합과세 대상자의 수를 10만명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크게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 表 Ⅲ-2 > 既存 研究의 豫想 資金移動 規模

연 구	예상 자금이동 규모
강석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가구수 및 금액추정」, 『월간경제』, 대우경제연구소, 1994. 10.	31조원
한국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파급효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1995. 6.	21조원
대우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금융권 자금 이동 규모 추정」, 테마자료, 1995. 7.	11조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1995. 8. (내외경제신문보도)	14조원
안효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 연구조사 95-15, 쌍용경제연구소, 1995. 8.	8.3 ~ 9.8조원
김장희 · 장광열, 「동향의 초점: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년부터 실시확정」, 『은행시장동향』, 국은경제연구소, 1995. 4/4분기.	7~9조원
안동규 · 윤성욱,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파급효과」, 『본드브리프』, 제일경제연구소, 1995. 9. 20.	5.8조원
장용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분석」, 『삼성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5. 10.	5~7조원
손영기,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시장」, 『기업경제』,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10.	14.4조원

離課稅가 허용되는 다양한 代替資産이 허용되고 이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신종 상품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국 이러한 대체자산의 有無 및 이에 따른 稅後收益率 水準 등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資金規模가 1995년 6월 말 個人部門 保有 金融資産 殘額(426조원)의 1.2%(9월 말 현재로는 그 이하로 감소), 전체

金融資産 殘額(1,659조원)의 0.3%에 불과해 자금이 이동하더라도 金融市場에 끼치는 영향은 微微할 것으로 예상된다.

### 라. 資金移動의 時期

당초 일반적인 예상은 債券 確保 및 債券 收益率 下落 可能性 등을 고려하여 1995년 7~8월 중부터 資金移動이 서서히 시작되어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기 직전인 1995년 9~12월 중 資金移動이 本格化되리라는 것이었으나 1995년 9월 初 정부의 綜合課稅 方針의 수시 변화<sup>9)</sup>, 그 이후의 비자금파문 등의 영향 등으로 뚜렷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으며 1995년 11월 현재 비자금파문의 여파로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의 觀望期를 거치면 결국 節稅 혹은 資金의 隱匿을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 걸쳐서 상당부분의 資金移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1996년 중에도 持續的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 마. 豫想 資金移動 方向 및 移動量

#### 1) 消費의 增加

9) 1995년 9월 2일, 정부는 금융실명제(1993. 8. 12)의 후속조치로서 「1995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초 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함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9월 7일 종합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화하였으나 이후 민자당측의 강력한 반발로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과세 대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하였다. 결국 동년 9월 13일 다시 CD, CP 등 유가증권의 중도환매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법인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향으로 종합과세제도의 방침을 전환하였으며 9월 14일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의 「유가증권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정부방침이 지속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항시 유동적이었으며 9월 30일 비로소 「채권 등에 대한 종합과세 관련 업무처리요령」이 발표되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가장 일차적인 영향은 個別 經濟主體의 消費·貯蓄行態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本研究와 관련하여 향후 家計의 消費 및 貯蓄 意思決定에 영향 미칠 要因은 크게 나누어 첫째로 稅率體系 變更 및 各種 控除額 引上으로 인한 稅率의 全般的 引下를 들 수 있고, 둘째로는 利子 및 配當所得 등 金融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引下, 그리고 마지막으로 稅金優待貯蓄의 縮小를 포함한 金融所得 綜合課稅 등 세가지이다.

이에 따른 家計의 消費 및 貯蓄行態에 대한 이들의 영향은 一義的으로 말할 수 없으나(表 III-3) 참조) 綜合課稅 對象者와 非對象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0)</sup>.

가) 綜合課稅 非對象者

먼저 金融所得 4천만원 이하의 綜合課稅 非對象 家計에 대해서는 消費, 貯蓄 兩者에 대한 誘引이 모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반적인 所得稅率 引下 및 各種 控除額 引上으로 稅後實質所得이 增加하게 되어 消費, 貯蓄 兩者에 대한 增加費시이 있다. 또한 金融所得에 대한 源泉稅率의 引下로 貯蓄의 實效收益率이 上昇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효수익률의 상승은 한편으로는 稅後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 저축 양자를 모두 증가시키는 所得效果를 갖는 반면, 한편으로는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래 소비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代替效果도 가지게 되어 그 효과를 一義的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貯蓄에 대한 誘引이 상당히 증가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대상은 아니지만 稅金優待貯蓄의 縮小의 影響을 받게 된다. 稅金優待貯蓄의 縮小는 貯蓄의 稅後收益率을 전반적으로 하락시킨다고 볼 수 있고 이는 稅後實質所得 감소를 통해 消費, 貯蓄 모두를 감소시키는 所得效果와 現在 未來所得의 價値를 減

10) 보다 자세한 논의는 안효원(1995. 8) 참조.

〈表 Ⅲ-3〉 家計의 消費·貯蓄에 대한 稅制變化의 影響

세제의 변화	경제적 효과	소비, 저축에 대한 영향
소득세율 전반적 인하 및 각종 공제액 인상	세후실질소득 증가 효과 → 소득 효과	소비 +, 저축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저축의 실효수익률 상승 → { 소득효과 대체효과	소비 +, 저축 + 소비 -, 저축 +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우대저축의 축소 포함)	저축의 실효수익률 하락 → { 소득효과 대체효과	소비 -, 저축 - 소비 +, 저축 -

少시킴으로써 現在의 消費를 增加시키고 貯蓄을 減少시키는 代替效果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金融所得 4천만원 이하를 보유하는 綜合課稅 非對象 家計는 消費, 貯蓄 兩者에 대한 誘引이 모두 강하다고 볼 수 있으나 綜合課稅와 關係해서는 상대적으로 消費보다는 오히려 貯蓄에 대한 誘引이 강하게 존재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나) 綜合課稅 對象者

綜合課稅 대상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저축감소에 대한 유인이 크다고 하겠다. 우선 所得稅率의 全般的 引下의 效果는 綜合課稅 非對象者의 경우와 같이 稅後實質所得이 增加되어 消費, 貯蓄 모두에 대한 增加 誘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貯蓄의 稅後收益率에 미치는 影響은 個別 家計의 非金融所得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컨대 非金融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金融所得 1억 2,380만원 초과시에만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非金融所得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金融所得 1억원부터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家計가 대체로 高所得임을 고려할 때, 貯蓄의 稅後收益率 下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貯蓄의 稅後收益率 下落은 稅後實質所得 減少를 통한 所得效果에 의해 消費, 貯蓄 모두를 減少시키는 效果와 消費를 增加시키고 貯蓄을 減少시키는 代替效果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綜合的으로 보면 이들 綜合課稅 對象의 경우 貯蓄의 稅後收益率 下落의 代替效果가 압도하게 되어 消費는 增加, 貯蓄은 減少되는 方向으로 影響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다) 綜合的 評價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綜合課稅 非對象者들에게는 消費, 貯蓄에 대한 誘引이 병존하며 全般的 所得 增大에 따른 消費 增加 및 消費의 고급화 추세에 비추어 보아 消費의 絕對額은 增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綜合課稅 對象者들에 대해서는 貯蓄이 減少하고 消費는 대폭 增加할 誘引이 存在한다. 그러나 全體的으로는 綜合課稅 非對象者들의 比重이 크고 이들에 대한 貯蓄 增加 誘引 역시 존재하므로 綜合課稅로 인한 貯蓄 減少와 消費 增加의 幅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 2) 金融貯蓄

### 가) 概觀

全般的 稅率引下 및 控除 擴大 등으로 少額所得者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줄어들며, 여타 소득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金融所得이 年 1억 2,380만원을 초과해야 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대다수 소액 금융저축 보유자의 자금은 금융시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金融所得 綜合課稅 적용대상이 되는 年 金融所得 4천만원 이상 고액 금융소득자들이 보유한 자금의 상당부분 및 세금우대상품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는 여타 金融資産이나 實物資産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술하였다시피 전체적인 자금이동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우선 상당수의 巨額資産家들이 이미 다양한 非課稅 및 分離課稅 對象 金融商品을 買入하였으며, 이외에도 合意借名, 企業名義 金融商品의 적절한 活用 등 다양한 방식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回避手段을 강구해 놓았을 可能性이 많다. 또한 확정된 金融所得 綜合課稅案에 따르면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과 長期貯蓄性 保險 및 株式을 제외한 거의 모든 金融資産으로부터의 金融所得이 예외 없이 綜合課稅 對象이 되므로 이들 외에는 마땅한 代替金融資産이 없는 형편으로 이들로의 資金移動을 제외하고는 金融商品間 資金移動 規模 역시 크지 않을 것이며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實物市場 등 金融圈 밖으로의 자금이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制度金融圈의 金融商品間 資金移動은 銀行의 CD, 표지어음과 投金·綜金の CP 등 일부 金融商品으로부터 長期 貯蓄性保險, 長期債券, 株式으로 資金이 移動할 것으로 전망되나 1995년 12월 정책당국이 은행 장기저축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등 각종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 金融機關이 節稅型 金融商品의 개발을 부단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결국 이러한 신종 금융상품의 競爭力과 個別 金融市場 狀況에 따라 자금이동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資金流出이 예상되는 金融商品으로서 일부 稅金優待商品과 巨額資金의 예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綜合課稅 回避가 곤란한 金融商品으로서 預金銀行의 短期 貯蓄性預金, CD, 표지어음, 거액상업어음 및 무역어음 일반매출 등과 일부 세금우대상품, 投資金融會社·綜合金融會社의 CP, CMA, 표지팩토링어음매출, 投資信託會社의 短期 公社債型 受益證券 및 株式編入比率이 50% 미만인 株式型 受益證券, 그리고 相

互信用金庫의 定期豫受金 및 稅金優待商品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반면 資金流入이 예상되는 金融資産은 滿期 5년 이상의 長期 貯蓄性 預金, 長期 貯蓄性保險, 長期債券, 株式, 그리고 長期債券·株式 編入商品 등이다. 참고로 1995년 12월 현재 각 금융기관이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종합과세관련 절세상품의 내용은 <表 III-4>와 같다.

<表 III-4> 綜合課稅關聯 節稅型 金融商品

상품종류	취급기관	상 품 특 징
장기채권형 신 탁	은 행	만기 5년 이상 국공채에 투자 예금을 고객별 단독펀드로 관리
타 익 신 탁	은 행	이자 수취인을 자녀 및 부모로 지정.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
장 기 채 권 저 축	증 권 사	만기 5년 이상 국공채, 금융채에 투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가능
분 리 과 세 공사채저축	투 신 사	만기 5년 이상 국공채, 금융채에 투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가능.
장 기 저축성보험	보 험 사	최고 5억원(1996년부터 1억원)까지 일시납으로 5년간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짐.
개 연 연 저 축	은행, 보험	이자소득세, 주민세 완전비과세. 종합소득 비합산

참고로 個人部門 金融資産殘額의 推移는 <表 III-5>와 같고 1995년 6월말 현재 總金融資産殘額 중 個人部門 金融資産의 比重 및 各 資産別 構成比는 <表 III-6>과 같다.

최근 金融機關의 主要 金融商品別 受信 推移가 <表 III-7>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 예금은행 수신 중 9월과 10월에 걸쳐 CD가 대폭 감소하였고 표지어음매출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은행신탁계정 중 가계금전신탁의 연중 증가폭이 1994년에 비해 상당히 둔화되었으며, 노후생활연금이 대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자사 수신 중 8월 이전까지 호조를 보이던 CMA가 9월 이후 부진하며, 중개어음매출이 9월까지

〈表 Ⅲ-5〉 個人部門 金融資産殘額 推移

(단위: 10억원)

	1994				1995		
	1/4	2/4	3/4	4/4	1/4	2/4	1995년 상반기중 증감액
금융자산 계	347,881	363,331	373,799	401,300	411,186	426,037	24,737
통화 및 통화성예금	12,237	13,147	5,615	14,837	14,676	14,834	-3
현금통화	7,159	7,243	7,791	8,607	8,408	8,380	-227
요구불 예금	5,078	5,905	5,615	6,231	6,267	6,455	224
기타 예금	174,631	185,421	197,685	211,288	217,597	227,122	15,834
저축성예금	58,095	60,416	63,604	68,583	68,852	71,295	2,712
양도성예금증서	4,241	5,389	5,592	6,227	7,558	8,173	1,946
신탁	32,765	36,626	40,596	42,025	44,903	50,157	8,132
단자	4,155	4,375	4,878	6,271	6,519	6,282	11
기타	72,881	76,003	80,247	85,515	86,134	87,578	2,064
환매조건부채권	2,493	2,611	2,768	2,668	3,631	3,637	969
생명보험 및 연금	59,614	60,961	63,518	65,103	67,207	69,192	4,089
단기채권	4,777	4,890	5,229	5,789	6,006	6,657	868
국공채	198	178	165	110	54	82	-29
금융채	1,199	1,130	802	1,481	238	431	-1,050
기업어음	3,380	3,583	4,263	4,197	5,714	6,144	1,946
장기채권	44,756	45,686	47,548	49,001	50,662	52,386	3,384
국공채	2,969	3,284	3,513	4,180	4,020	4,630	450
금융채	5,020	5,200	5,385	5,598	6,565	7,615	2,016
회사채	1,045	782	1,150	1,522	1,430	1,473	-49
투자수익증권	35,722	36,420	37,500	37,701	38,647	38,667	967
주식	28,930	29,292	29,830	30,804	29,793	30,443	-361
출자금	10,013	10,274	10,555	11,113	11,669	11,958	844
기타 금융자산·부채	12,926	13,660	13,818	13,364	13,578	13,446	82

資料: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호.

< 表 Ⅲ-6 > 個人保有 金融資産殘額 現況 (1995年 6月 末)

(단위: 10억원, %)

	개 인		전체(B)	A/B
	잔액(A)	구성비		
금융자산 계	426,036.9	100.0	1,658,555.1	25.6
통화 및 통화성예금	14,834.4	3.4	56,733.5	26.1
현금통화	8,379.5	1.9	12,112.8	69.1
요구불 예금	6,454.9	1.5	19,513.5	33.0
기타 예금	227,121.9	53.3	347,513.9	65.3
저축성예금	71,294.9	16.7	104,659.8	68.1
양도성예금증서	8,173.1	1.9	20,884.7	39.1
환매조건부채권	3,636.8	0.8	5,359.0	67.8
신탁	50,156.8	11.7	97,879.4	51.2
단자	6,282.1	1.4	15,754.4	39.8
기타	87,578.3	20.5	102,314.7	85.5
생명보험 및 연금	69,191.5	16.2	69,191.5	100.0
단기채권	6,656.8	1.5	63,395.8	10.5
국공채	81.9	0.0	6,310.8	1.2
금융채	431.4	0.1	19,564.8	2.2
기업어음	6,143.5	1.4	37,520.4	16.3
장기채권	52,385.5	12.2	210,602.2	24.8
국공채	4,630.4	1.0	20,053.9	23.0
금융채	7,614.7	1.7	35,446.7	21.4
회사채	1,473.0	0.3	78,569.0	1.8
투자수익증권	38,667.3	9.0	56,281.6	68.7
주식	30,443.0	7.1	111,702.5	27.2
출자금	11,957.6	2.8	29,094.9	41.0
기타 금융자산·부채	13,446.3	3.1	157,641.3	8.5

資料: 한국은행, 『자금순환』, 1995. 7.

는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다가 10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반면 팩토링어음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단자사 수신의 증가세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綜合적으로 1995년 10월까지 급격한 資金移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金融貯蓄으로부터의 資金離脫 혹은 金融資産間의 資金移動이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진행되더라도 매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나) 銀行預金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銀行預金 중 稅金優待貯蓄으로부터의 資金流出規模는 微微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은행예금 중에는 巨額計座의 比重이 높은 CD로부터의 資金流出의 可能性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저축성예금으로부터의 자금유출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1995년 12월 財政經濟院이 5년 이상 長期貯蓄에 대해 30%의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sup>11)</sup> 저축성예금으로부터의 유출 가능성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오히려 CD 등 은행권 금융상품과 여타 金融市場의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1995년 6월 말 현재 계좌당 1억원 이상의 巨額計座는 貯蓄性預金 약 18만계좌와 28조원, CD 약 3만계좌와 18조원 등 약 21만계좌와 46조원으로서 이 중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 預金은 약 9조원(저축성 예금 약 7조원, CD 약 2조원) 정도로 추산되었는데<sup>12)</sup> 이 중 일부는 金利優待商品이나

11) 30%의 세율로 分離課稅되는 長期貯蓄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간중에는 원금 인출을 할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만기가 5년이 넘는 저축은 5년이 지나기만 하면 만기 전에 해약 하더라도 分離課稅가 가능하다. 만기 전에 이자불 받는 저축도 이에 포함되지만 기존가입자는 가입 당시부터 만기 5년 이상 저축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5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의 종류는 銀行의 預金·積金·賦金·相互信用金庫의 長期賦金, 信用協同組合·새마을금고·단위 농·수·축협의 積金 등이 대상이다. 불입시마다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는 상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자유적립식 저축은 포함되지 않으며 銀行信託計定과 投信社, 短資社, 綜金社, 證券社의 상품은 제외시켰다.

12) 韓國金融研究院(1995. 10) 참조.

< 表 Ⅲ-7 > 金融機關의 主要 商品別 受信 動向

(단위: 증감액, 억원)

	1994		1995			
	10월	1-10월	8월	9월	10월	1-10월
예금은행수신	30,958	185,002	25,854	3,845	32,316	156,681
요구불예금(실세)	14,359	16,669	5,461	-8,505	24,805	23,838
저축성예금	6,850	114,922	9,863	13,723	6,589	77,574
CD <sup>1)</sup>	6,072	33,550	6,075	-4,215	-61	38,307
포지어음	3,677	19,861	4,455	2,842	983	15,962
금전신탁 <sup>2)</sup>	11,624	274,718	29,555	37,347	27,094	293,015
(특정금전신탁)	(3,110)	(106,434)	(8,648)	(12,371)	(6,218)	(78,758)
(일반불특정)	(326)	(3,712)	(8,990)	(9,016)	(12,668)	(84,824)
(개발신탁)	(8,371)	(67,878)	(2,295)	(1,967)	(-195)	(74,920)
(가계금전)	(1,472)	(45,117)	(1,051)	(5,304)	(5,623)	(18,402)
(기업금전)	(-5,061)	(569)	(3,093)	(1,332)	(-3,407)	(-27,533)
(노후생활연금)	(-73)	(23,046)	(-1,450)	(-1,209)	(-1,523)	(-11,118)
(개인연금)	(1,032)	(7,752)	(649)	(798)	(809)	(7,235)
투금사수신	6,346	106,042	12,265	21,351	15,767	130,536
자체발행어음	660	238	1,269	-943	1,526	5,116
CMA	2,009	8,938	8,058	343	2,884	27,140
어음매출	-1,387	62,866	10,757	21,917	9,263	124,903
중개팩토링	5,064	34,000	-7,819	34	2,094	-26,623
투신사수신 <sup>3)</sup>	3,170	68,793	6,487	11,686	11,081	12,459
주식형수익증권	8,357	39,581	-417	-888	985	-9,364
공사채형수익증권	-5,371	28,996	6,995	12,261	9,748	22,801
(단기공사채형)	(784)	(-1,987)	(-626)	(3,133)	(1,853)	(2,948)
(장기공사채형)	(-6,155)	(30,983)	(7,621)	(9,128)	(7,895)	(19,853)
신탁형증권저축	184	216	-91	313	348	-978
증권사수신	4,381	3,200	-1,109	832	784	6,458
고객예탁금	5,058	11,107	-43	796	-712	1,572
환매채	-1,208	-9,964	-957	-119	1,014	-755
(거액환매채)	(-1,226)	(-9,952)	(-886)	(-124)	(867)	(-880)
BMF	696	-532	-260	-75	482	-911
새금우대소액채권	-165	2,589	151	230	-	6,552
계	56,479	637,755	73,052	75,061	87,042	599,149

註: 1) 순발행액 기준.

2) 예금은행 및 개발기관 취급분.

3) 종금사 취급액 제외, 순매각잔액 기준.

資料: 한국은행, 미출판자료.

高金利 信託商品과 債券市場으로 移動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CD를 중심으로 1조 5천억원 정도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表 Ⅲ-8 > 1억원 以上 巨額預金の 推移 (1995年 6月 末 現在)

(단위: 천계좌, 10억원)

		1994년 3월말	1994년 12월말	1995년 3월말	1995년 6월말
저축성 예금	계좌수	138	159	165	176
	금액	21,460	25,957	25,797	27,785
CD	계좌수	19	22	25	27
	금액	12,314	14,913	16,363	18,038

資料: 韓國金融研究院 (1995. 10)

< 表 Ⅲ-9 > 預金銀行 受信<sup>1)</sup>

(단위: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원화예금	118,008.5	115,842.7	116,964.0	121,589.1	5,857.3	137,431.2	133,671.8	135,644.7	135,861.7	671.7
요구불예금	29,162.5	24,562.0	25,295.4	28,289.1	-4,950.7	33,432.7	28,831.6	29,807.2	28,653.0	-6,411.7
저축성예금	88,846.0	91,280.7	91,668.6	93,299.2	10,807.2	103,998.5	104,840.1	105,837.5	107,208.7	7,083.4
CD	18,823.6	18,731.7	18,364.4	17,866.4	3,262	20,884.7	21,892.2	22,737.4	22,614.9	4,709.9
매출어음	76.9	565.5	1,328.0	1,667.4	1,577.1	2,883.5	3,146.8	3,595.8	3,898.5	1,601.6
표지어음	-	495.1	1,281.9	1,618.4	1,123.3	2,801.8	3,017.8	3,463.6	3,747.8	1,498.4
RP	1,192.1	1,380.8	1,380.7	1,361.2	519.8	2,546.6	3,003.3	3,074.7	3,122.6	1,335.2

註: 1) 말잔기준.

2) 7~9월 증감액.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1995년 11월 현재까지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이 이동한다는 명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長期債券에 대한 需要가 꾸준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株式市場이 호전되면 CD로부터의 資金離脫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은행에 경쟁력 있는 장기저축상품이 계속 도입될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은행예금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은 상당히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投資金融·綜合金融

投金·綜金の 경우 各 金融機關 中 高額 金融所得者의 比重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마땅한 종합과세 회피용 금융상품이 없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資金流出의 可能性이 높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投金·綜金 商品 中에는 기업어음(CP)으로부터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投金社의 경우 分離課稅가 가능한 長期商品의 開發이 어려워 資金移動의 可能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綜金社의 경우에는 分離課稅가 가능한 長期 公社債型 受益證券 등 節稅商品 개발에 노력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의 성과 여부에 따라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그러나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더라도 CP가 稅後收益率面에서 他 金融機關의 節稅商品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隱匿을 위한 資金移動이 아닌 경우 CP에 잔류할 可能性도 있다<sup>14)</sup>.

1995년 11월 말 현재 팩토링어음매출이 심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投金·綜金社로부터의 급격한 資金移動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상당부분의 移動可能資金이 연말에 만기를 맞춘 1개월물 CP에 투자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연말을 전후하여 資金移動이 시작될 可能性이 높다<sup>15)</sup>.

13) 10월 12일 현재 투금·종금사의 어음매출잔고 45조 7천억원 중 개인 소유분은 약 15%인 6조 8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韓國金融研究院 (1995. 10) 참조.

14) 韓國金融研究院(1995. 10) 참조.

라) 投資信託

投資信託의 경우 綜合課稅 실시에 의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銀行의 CD, 短資社의 CP로부터 資金이 移動하여 長期 公社債型 受益證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株式市場이 활기를 띠게 되는 경우에는 株式型 受益證券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예외없는 綜合課稅 方針 이전에는 公社債型 受益證券의 賣買差益이 綜合課稅 除外對象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은행권의 特定金錢信託에 비해 상대적으로 受信競爭力에 있어서 불리했었으나 경쟁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公社債型 受益證券의 경우 2조원 내외의 資金이 綜合課稅 對象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 중 상당부분이 分離課稅型 長期 公社債型 受益證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 表 III-10 > 投資金融會社의 受信<sup>1)</sup>

(단위: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예수금	12,730.9	12,549.3	12,975.1	12,242.0	-93,809.1	10,500.7	10,995.5	10,982.0	10,820.8	-1,198.6
CMA	5,511.6	5,214.8	5,198.3	4,865.7	41.7	4,547.6	4,935.1	5,544.5	5,506.3	1,776.0
발행어음	562.8	356.0	443.5	325.8	-66.2	513.8	581.5	703.6	592.8	343.7
포지어음	6,656.6	6,977.7	7,333.3	7,050.6	1,615.5	5,439.2	5,478.9	4,734	29,797.8	21,757.9
매출어음 <sup>2)</sup>	24,478.6	23,644.7	25,574.6	26,476.9	5,643.9	27,721	27,596.5	28,224.8	4,722.7	-17,311.6

註: 1) 1994년 7월 이후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된 지방 투자금융회사 제외.

2) 단순증개어음 제외.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15) 全國投資金融協會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5년 12월 중순 현재 투자금융회사의 개인예금 중 44%가 1995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表 III - 11 > 綜合金融會社의 受信<sup>1)</sup>

(단위: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예수금	722.2	1,476.3	1,493.7	1,631.2	1,114.1	3,540.9	3,794	3,954.0	3,951.8	967.9
CMA	75.1	832.9	853.0	939.0	625.3	2,137.3	2,311.6	2,508.8	2,579.0	649.3
발행어음	15.8	25.1	34.2	34.9	15.1	94.0	63.2	68.1	85.1	15.8
표지어음	231.4	618.4	606.5	657.3	473.7	1,309.7	1,419.2	1,377.5	1,287.7	302.8
매출어음 <sup>2)</sup>	117.8	1,163.0	1,236.7	1,676.5	1,597.4	7,497.7	8,170.5	8,586.4	9,267.2	3,972.8
수익증권	1,971.1	2,058.1	2,040.6	2,024.2	288.2	1,521.0	1,539.4	1,565.5	1,663.0	-296.2
장기공사채형	1,675.0	1,773.5	1,764.9	1,773.3	231.3	1,401.6	1,424.9	1,442.2	1,529.9	-230.7
단기공사채형	296.1	284.5	275.7	250.9	57.0	119.4	114.5	123.3	133.1	-65.5

註: 1) 1994년7월 이후 투자금융회사에서 전환된 종합금융회사 포함.

2) 단순증개어음 제외.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 表 III - 12 > 投資信託會社의 受信

(단위: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신탁형 증권저축	255.4	267.4	198.8	256.3	11.8	282.6	200.2	188.9	222.6	-152.8
수익증권 <sup>1)</sup>	53,758	54,201.8	53,092.0	53,762.1	7,216.3	56,493.8	56,850.6	57,296.2	58,586.9	3,157.6
공사채형 수익증권	42,990.1	43,093.9	41,387.5	41,350.7	3,171.9	41,812.6	42,398.2	43,097.5	44,323.2	4,340.6
(단기)	4,080.0	4,130.4	4,021.6	3,849.6	79.0	4,212.3	4,339.4	4,276.9	4,578.7	511.6
(장기)	38,910.1	38,963.6	37,365.9	37,501.1	3,092.9	37,600.2	38,058.8	38,820.6	39,744.5	3,829.1
주식형 수익증권	8,235.9	8,594.0	8,805.5	9,308.4	3,205.6	11,400.9	11,145.3	11,099.9	10,945.6	-1,328.9
BMF <sup>2)</sup>	726.8	711.0	692.5	655.6	-148.7	452.5	607.9	383.8	489.5	-163.4
혼합형 수익증권	95.7	89.6	251.8	345.0	170.8	397.0	342.6	120.0	116.7	-238.6

註: 1) 순매각잔고 기준.

2) 설정잔고 기준.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 마) 銀行信託

당초 銀行信託으로부터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回避하기 위한 資金移動이 일어날 可能性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특히 銀行이 還買를 前提로 판매했던 만기 5년 미만의 개인대상 特定金錢信託에 流入되었던 資金은 대부분이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回避할 目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實物市場이나 餘他 金融資產으로 다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방침에 따라 무기명 개발신탁(개발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와 특정금전신탁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됨에 따라<sup>16)</sup> 현재는 5년 이상 무기명 개발신탁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5년 이상 장기상품이 발행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별 은행들이 資金의 離脫을 방지하기 위하여 長期債·株式編入型 特定金錢信託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競爭力 있는 分離課稅型 長期貯蓄商品을 開發하는 경우 자금이 殘留할 가능성이 많아 資金移動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금전신탁의 경우 1995년 6월 말 현재 계좌당 1억원 이상의 거액계좌는 금전신탁 총수신고 약 125조원 중 약 22만 계좌에 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중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 預金은 약 2조원(특정금전신탁 약 1조원, 불특정금전신탁 약 1조원) 정도로 추산되며<sup>17)</sup> 이 중 5천억원 내지 1조원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전신탁은 1995년 8, 9월에 각각 약 3조원, 3조 7천억원씩의 증가를 보였으며 10월중에도 증가세가 둔화되긴 하였으나 2조 7천억원의 증가

16) 원칙적으로 은행신탁계정 상품은 분리과세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무기명 개발신탁(개발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무기명으로 양도가 가능하므로 실제로 채권의 성격울 갖고 있으므로 5년 이상 장기상품이 발행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자가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운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7) 韓國金融研究院(1995. 10) 참조.

< 表 III-13 > 1억원 이상 巨額預金の 推移 (1995年 6月 末 現在)

(단위: 천계좌, 10억원)

		1994년 3월말	1994년 12월말	1995년 3월말	1995년 6월말
금전신탁	계좌수	104	192	180	219
	금 액	42,815	50,735	54,074	57,561

資料: 韓國金融研究院 (1995. 10)

를 나타냈다. 특히 1995년 7~8월중 특정금전신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아 약 2조원의 수탁고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9월 초 예외 없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원칙이 발표됨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이 우려되었으나 9월중 수탁고는 오히려 1조 2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11월 현재에도 은행신탁으로부터의 자금이동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는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相互信用金庫

相互信用金庫의 경우 새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節稅商品의 競爭力에 따라 資金流出入의 興否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稅金優待貯蓄의 縮小에 따라 相互信用金庫의 稅金優待商品도 減少할 가능성이 있으나 少額預金者의 경우 연금저축 외에는 뚜렷한 대체상품이 없기 때문에 既存의 상호신용금고 고객은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높은 상호신용금고에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巨額預金主의 경우 당초 綜合課稅를 피하기 위해 相互信用金庫를 이탈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장기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방침으로 향후 개발될 相互信用金庫의 節稅商品으로 전환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많다.

〈表 III-14〉 銀行信託의 主要計定

(단위: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액 (1~9)
금전신탁	95,482.9	97,935	100,387.8	103,488.4	26,304.2	125,008.1	127,174.8	130,089.1	133,822.6	26,523.1
특정 금전신탁	11,599.1	12,630.8	14,163.7	16,584.8	10,327.5	20,215.8	21,286.2	22,148.1	23,384.2	7,210.0
일반 금전신탁	13,436.0	13,593.9	13,796.8	14,084.9	2,142.3	23,729.9	25,071.7	26,592.0	28,272.9	12,705.8
개발 금전신탁	25,633.1	26,272.2	26,503.9	27,025.5	5,951.4	36,359.8	36,194.4	36,428.9	36,625.8	7,540.9
가계 금전신탁	21,073.9	21,559.3	21,686.7	21,648.7	4,364.6	23,470.5	23,604.0	23,708.8	24,239.6	1,840.5
기업 금전신탁	12,056.5	11,867.8	12,009.6	11,567.9	562.3	7,467.8	7,324.2	7,633.6	7,766.8	-2,414.8
개인연금	203.6	407.5	579.7	671.9	468.3 <sup>1)</sup>	1,519.9	1,594.2	1,659.7	1,739.0	642.3
기타 <sup>2)</sup>	11,480.7	11,603.5	11,647.4	11,904.7	2,284.2	12,244.4	12,100.1	11,918.0	11,794.3	-1,001.4
금전신탁 <sup>3)</sup> 이외신탁	2,074.7	2,178.5	2,102.1	2,053.5	165.0	5,500.5	5,165.4	4,658.1	4,241.7	555.3

註: 1) 6--9월의 증가액

2) 금전신탁에서 특정, 불특정금전신탁 제외.

3) 금외신탁 및 재산신탁.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表 III-15〉 相互信用金庫의 計定

(단위: 10억원)

	1994					1995				
	6	7	8	9	증감액 (1~9)	6	7	8	9	증감액 (1~9)
예수금	20,920.0	21,075.1	21,303.9	21,722.9	3,300.4	24,278.5	23,921.5	24,215.4	24,641.8	1,949.9

資料: 韓國銀行, 『通貨金融』, 各號.

사) 信用協同機構(信用協同組合, 相互金融, 새마을金庫)

信協, 相互金融, 새마을金庫의 出資金, 預託金 등은 稅制優待惠澤이 지속되어 受信의 增加가 예상되나 그 규모는 微微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종합과세의 실시와는 상관없는 소액 금융소득자가 고객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더러 장기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허용방침도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자금의 이동이 최소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稅金優待惠澤이 없어질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 전산망의 미비 등 상대적인 서비스 시설의 취약 등으로 수신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 3) 保險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非課稅惠澤이 주어지는 5년 이상 長期貯蓄性保險으로의 資金移動 可能性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長期貯蓄性保險은 利子所得이 非課稅되므로 稅後收益率이 은행이나 투신사의 절세형 상품에 비해 뒤지지 않으면서 사망 및 재해에 대한 보장기능을 겸비하고 있어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시행으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債券 및 株式의 경우 收益率變動에 따른 危險이 있으나 長期貯蓄性保險은 약관대출금리나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으며 또한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가입 후 5년이 지나면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산규모의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高額金融所得者에게 특히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長期債券이 5년 이내에 還賣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收益率이 보장되는 반면 長期貯蓄性保險商品의 경우 中途解約하는 경우 원금도 회복할 수 없어 유동성에 있어 극히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보험으로의 자금유입은 여타 金融機關들이 앞으로 개발할 절세형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기한 요인들을 볼 때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長期貯蓄性保險의 경우 일인당 보험금 기준으로 5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가족 및 친척 등 타인 명의로도 가입이 용이하며 동일인이 여러 보험사에 가입할 수도 있어 거액자금의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 저축성보험으로의 자금유입이 상당한 규모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정책당국이 급격한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러한 대책이 1996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5년 연말까지는 장기 저축성보험으로의 자금유입이 오히려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sup>18)</sup>.

참고로 1995년 9월까지의 長期貯蓄性保險收入保險料推移가 <表 III-16>에 나타나 있으며 9월까지 전년에 비해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9월 이후에는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表 III-16> 長期貯蓄性保險收入保險料推移<sup>1)</sup>

(단위: 10억원)

	1994		1995				
	9월	합계 (1~9)	6월	7월	8월	9월	합계 (1~9)
생명보험	2,773.0	11,468.5	2,128.6	2,481.0	2,116.6	2,264.2	13,131.2
손해보험	197.7	1,066.6	251.3	278.0	277.1	276.4	1,557.2

註: 1) 5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과 개인연금

資料: 保險監督院

#### 4) 債券

分離課稅가 허용된 滿期 5년 이상 長期債券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우선 長期債券의 利子에 대해서는 25%(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 혹은 30%(만기 10년 이상)로 源泉徵收 後 分離課稅 選擇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세부담면에서 유리하며, 投資收益

18) 1995년 11월 28일 財政經濟院은 金融所得 綜合課稅에서 5년 이상 보험상품의 보험차익이 비과세됨에 따라 은행권 등으로부터 자금이 이탈되는 일을 막기 위해 「長期貯蓄性保險 管理改善對策」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996년부터 보험계약자 한 사람이 5년간 내는 보험료의 합계가 5억원으로 제한되며, 저축성보험에 보험계약자 한사람이 한번에 내는 일시납 보험료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여러 보험회사에 분산해서 가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不安定한 株式에 비해 債券은 安全한 收益率이 보장되므로 상당 규모의 자금이 綜合課稅을 회피할 수 있는 滿期 5년 이상의 長期債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5년 이상 長期債券은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고(1994년 發行額이 4조 6,529억원으로 債券發行總額 85조 8,287억원의 5.3%), 流通市場 역시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인플레이션 심리 등으로 長期債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이 제약조건이 될 전망이다<sup>19)</sup>.

금년 하반기중 分離課稅가 가능한 만기 5년 이상 長期債의 발행규모는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공채 등 표면금리가 낮은 장기채 1조원, 국채관리기금채권, 장기금융채, 장기회사채 등 시장금리 장기채 2조원 등 약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나 이 중 절반가량은 만기도래분 등으로 순증가액은 약 1조 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長期債券으로의 자금 유입은 金融市場의 安定, 長期資金調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長期國公債 發行의 擴大를 검토하여야 할 뿐 아니라 長期會社債 및 長期金融債 發行을 伸縮的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장기채권의 공급물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자금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高額 金融所得者들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자금이 制度金融圈 밖으로 이탈하여 私債市場이나 不動產 등의 實物市場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장기채 발행을 신축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5) 株式

株式의 경우 현재 讓渡差益이 非課稅對象이며 配當/株式市價 比率이 현저히 낮아 課稅負擔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주식으로의 資金流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19) 羅大鎬(1995. 10) 참조.

&lt; 表 Ⅲ-17 &gt; 主要 長期債券 現況

(단위: %, 년)

	이 율 (%)	발행방법	만기 및 상환방법	매출방법
국채				
국채관리기금채권	시장실세금리	액면발행	3~10년	경쟁입찰· 인수·매출
국민주택채권(1종)	5.0	액면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	첨가소화
국민주택채권(2종)	3.0	액면발행	20년만기 일시상환	일반소화
공공용지보상채권	시장실세금리	액면발행	5년내만기 일시 상환	교부
양곡증권	시장실세금리	액면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	경쟁입찰· 인수·매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시장실세금리	액면발행	5년내만기 일시 상환	경쟁입찰· 인수·매출
지방채				
서울시철도채권	6	액면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	첨가소화
14개시도 지역개발채	6	액면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	첨가소화
특수채				
토지개발채권(비업무용)	비업무용 : 8	액면발행	비업무용 : 5년만기	토지피수용자 에 교부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금리연동부사채금리	액면발행	3~5년 만기 일시 상환	인수·매출
수자원공사채(사모사채)	5년만기채 : 재경원 공공관리 기금 예탁금 에 준한 분기별 조정 금리	액면발행	5년만기	공모·사모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사채) <sup>1)</sup> (사모사채) <sup>2)</sup>	12 5년만기채 : 재경원 공공관리기금 예탁금에 준한 변동 금리 적용		5년만기	공모·사모
고속도로공사채권(공모사채)	시장실세금리	액면· 할인발행	3년, 5년	공모·사모
(사모사채)	5년만기채 : 재경원이 정하는 변동금리	액면발행	5년	
공향건설채권	10.5	액면발행	5년만기	매출
컨테이너 부두개발채	6	액면발행	9년만기	사모

< 表 Ⅲ-17 > 의 계속

	이 율 (%)	발행방법	만기 및 상환방법	매출방법
금융채				
중소금융채권(5년만기채)	5년만기채 : 10.7	할인, 복리 이표	5년만기	인수·매출
산업금융채권	시장실세금리	할인발행	5년만기 액면상환	인수·매출
주택채권(1종)	5	액면발행	5년만기	매출
(2종)	3	액면발행	20년만기	
장기신용채권(5년만기채)	정기예금금리외 1,350배	액면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	인수·매출
외국환금융채권	11.7	액면발행	5년만기 일시상환	매출

註: 각종 채권 중 만기 5년 이상 장기채만 정리하였음.

- 1) 1995년 11월 발행시작
- 2) 1994년 초 발행시작

資料: 재정경제원, 『재정금융통계』, 1995. 7-8.

내무부, 통상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 表 Ⅲ-18 > 5년 이상 長期債 發行 現況

(단위: 억원)

	1993년	1994년	1995년 1~9월
국 채	22,405	35,600	36,611
회사채	7,919	9,090	6,350
산 금 채	2,848	11,453	6,270
장 신 채	664	1,718	3,278
주 택 채	1,320	200	775
리 스 채	300	150	130
종 금 채	-	180	-
중 금 채	7,640	2,478	4,192
계	43,096	60,869	57,606

資料: 財政經濟院

주식의 讓渡差益은 현재 非課稅對象이며 1998년 이후에나 綜合課稅對象으로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되어 있어 여타 金融商品에 비해 株式投資의 比較優位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綜合課稅對象이 되는 配當의 경우에도 株式配當率이 여타 金融資産에 대한 收益率보다 현저히 낮고 配當率 또한 額面價에 대해 적용되므로 課稅負擔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sup>20)</sup>.

다만 주식투자의 위험이 높고 匿名性이 유지될 수 없어 신분노출을 꺼리는 거액저축 보유자는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주식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이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株式市場으로의 新規資金 流入은 株式市場의 變化에 따라 流動的이며, 1995년 11월 현재 비자금파문의 여파 및 경기위축 예상으로 株式市場이 위축되어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고 金利가 持續적으로 下落하는 경우 株式市場으로의 資金移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6) 其他

### 가) 現金保有

資金의 隱匿을 위해서는 現金保有가 가장 확실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에 따른 金融資産 收益率의 全般的 下落은 現金保有에 대한 機會費用을 減少시키게 되어 민간의 現金保有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실의 우려가 常存하며 보관이 곤란할 뿐 아니라 수익률에 있어서 여타 자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등한 것이 분명하다는 점 등의 제약을 감안하면 실제 자금의 이동은 많지 않을 것이며 전체에 대한 비율로는 微微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金融實名制 실시 직후 현금통화가 1993년 8월에는 전년동기대비 35.5%, 10월에는 55.4%나 급증하고, 총통화대비 현금통화의 비율도

20) 1994년 상장사 평균 배당률은 6.4%, 평균시가대비 배당률은 1.27%로 나타났다.

< 表 III-19 > 綜合株價指數 推移

(단위: 지수, 평균)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 <sup>1)</sup>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 <sup>1)</sup> (1~9)
종합주가지수	926.7	944.7	938.9	1002.4	199.8	884.2	945.6	916.9	971.2	-38.8

註: 1) 증감은 각각 전년 12월 지수평균대비임.  
 資料: 韓國證券去來所, 『株式』, 各號

< 表 III-20 > 株式去來實績 推移

(단위: 천주,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6월	7월	8월	9월
거래량 <sup>1)</sup>	896,683	865,699	608,447	936,166	459,771	1,145,232	808,683	865,692
거래대금 <sup>2)</sup>	16,555.1	16,942.2	13,377.3	18,766.2	8,053.3	19,489.2	12,689.3	16,177.6

註: 1) 관리종목거래와 보통거래의 합계임.  
 2) 관리종목거래와 보통거래의 합계임.  
 資料: 韓國證券去來所, 『株式』, 各號

< 表 III-21 > 證券會社의 顧客預託金

(단위: 10억원)

	1994					1995				
	6월	7월	8월	9월	증감 (1~9)	6월	7월	8월	9월	증감 (1~9)
예수금	3,334.2	2,633.8	2,656.7	3,345.7	-4,535.8	2,121.2	2,428.7	2,824.3	3,085.2	-16,673.5

註: 증감액은 전년말 대비로서 잔액 기준임.  
 資料: 證券監督院, 『證券調査月報』, 各號

1993년 9월과 10월중 각각 10.0%와 10.3%로 상승하였으나, 金融市場이 安定되면서 1993년 10월 이후부터는 현금통화 보유성향이 점차 하락하여 1994년 6월에는 현금통화 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5.3%로 하락하였고

< 表 III - 22 > 實名制 實施 이후 現金通貨 動向

(단위: 억원, %)

구분	1993. 7	1993. 8	1993. 9	1993. 10	1994. 6
현금통화 잔액	85,999	92,832	107,659	111,633	106,177
(증가율)	(28.2)	(35.5)	(39.5)	(55.4)	(25.3)
총통화 잔액	1,021,642	1,038,499	1,076,093	1,087,759	1,160,725
(증가율)	(18.9)	(20.6)	(21.5)	(20.8)	(15.8)
현금 / 총통화	8.4	8.9	10.0	10.3	9.1

資料 : 財政經濟院, 『金融實名制 2年の 評價와 課題』, 1995. 8.

총통화에 대한 현금통화비율도 9.1%로 원상을 회복한 바 있다.

#### 나) 私債

일부 자금이 制度金融圈을 이탈하여 私債市場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私債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뿐 아니라 私債市場에서 債券을 買入하여 재매각하는 방식은 綜合課稅에 대해 상당히 유효한 회피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私債가 非合法的이며 위험도 역시 무시할 수 없지만, 특히 비자금과문의 영향으로 출처가 정당하지 못한 자금은 결사적으로 노출을 회피하고 可用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소위 '세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金融研究院(1995. 7)의 추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私債市場의 規模는 1994년 기준으로 경상GNP의 11.2%인 33조 9천억원에 이르고 평균 기준으로도 총통화의 6.3% 수준인 8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制度金融圈에서 이탈한 자금 중 일부는 私債市場으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實物資產

① 不動産

부동산으로의 자금이동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不動産 實名制 및 그에 따른 不動産 名義信託 禁止, 不動産 綜合電算網 構築 등이 꾸준히 추진되어 왔고 향후에도 부동산 과표가 지속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綜合土地稅 負擔이 크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있어 정부의 강력한 投機抑制政策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sup>21)</sup>.

< 表 III-23 > 住宅價格 및 傳賞價格 上昇率<sup>1)</sup>

(단위: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9
주택가격	13.2	14.6	21.0	-0.5	-5.0	-2.9	-0.1	-0.2
전세가격	13.2	17.6	16.7	2.0	7.5	2.4	4.5	3.9

註: 前年同期對比

資料: 韓國住宅銀行, 『住宅金融』, 1995.10.

< 表 III-24 > 地價變動率 推移

(단위: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3/4)
地價變動率	24.5	32.0	20.6	12.8	-1.3	-7.4	0.6	0.2

資料: 建設交通部, 『地價動向』, 1995.10.

② 貴金屬, 書畫, 骨董品 등 實物資産

貴金屬, 書畫, 骨董品 등의 實物資産도 資金 隱匿과 脫稅를 위한 中

21) 정부는 1995년 9월 19일 각종 규제완화 및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목적으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表 Ⅲ-25〉土地去來量 變動 推移

(단위: 천건, km<sup>2</sup>)

	1991	1992	1993	1994	1994 (1~7월) (A)	1995 (1~7월) (B)	증가율 (%) ((B-A)/A)
건 수	1,088	892	858	966	546	630	15.4
면 적	1,486	1,207	905	983	542	714	31.4

資料: 政府, 『不動産市場 動向調査』, 1995.9.

은 代替資産이 된다. 최근 들어 貴金屬, 書畫, 骨董品 등에 대한 輸入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최근 은행의 골드뱅크(Gold Banking)이 활발해지고 있는 등 貴金屬이 換金性和 匿名性을 겸비하고 있으며 199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美術品에 대한 讓渡所得稅 實施가 보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物量이 制限的이고 眞僞識別의 問題 등 위험요소도 많아 이상적인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實物資産으로의 이동은 한계가 있고 전체에 대한 비율로서는 微微할 것으로 예상된다.

〈表 Ⅲ-26〉金값 動向(도매 기준)

(단위: 원/돈)

	1993년 8월 12일	1993년 8월 31일	1993년 12월 31일	1994년 6월 30일	1994년 12월 31일	1995년 6월 30일	1995년 10월 31일
금값	41,000	41,500	41,200	41,000	40,700	39,750	39,500

資料: 財政經濟院, 『金融實名制 2年の 評價와 課題』, 1995. 8.

라) 海外

海外不動産 및 海外金融資産 取得 등을 통하여 海外로 資金이 移動할 可能性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外國의 利率이 아직까지는 國內利率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수익률상 매력이 적고,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해당국 혹은 국내에서 綜合課稅對象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節稅目的의 海外 資金移動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말 현재 자산의 해외 도피가 증가하는 이렇다 할 징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외환자유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신분 노출회피 및 자산의 은닉을 위한 자금의 해외유출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 表 III-27 > 外貨資金의 對外支給 現況

(단위: 백만달러)

	1993	1994	1995				증감액 (1~9)
			6월	7월	8월 <sup>1)</sup>	9월 <sup>1)</sup>	
무역외 지급	20,220.0	24,540.4	2,936.4	2,777.3	2,882.1	2,845.3	24,627.1
해외여행경비	3,533.3	4,512.5	534.4	654.4	636.2	512.9	4,715.5
증여성 지급	1,566	1,699	198	211	-	-	1,356 <sup>1)</sup>

註: 1) 1995년 1월 ~ 7월.

資料: 韓國銀行, 『國際收支』, 1995. 10.

## 2.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波及效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資金의 規模가 그리 크지 않고 더구나 이러한 이동이 段階的·順次的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金融市場 및 國民經濟에 큰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1993년 金融實名制 實施 이후 큰 부작용 없

이 단기간에 경제가 정상을 회복하였으며, 1994년 말 한국통신 주식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2조원 상당의 자금이 단시일 내에 유입된 적이 있고 각종 公募株 請約 등을 위하여 움직이던 浮動資金의 規模가 수조원 규모로 추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金融市場이나 國民經濟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 역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으로 一時的·部分的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가. 金融市場에 대한 影響

#### 1) 金融市場의 不安定性 擴大

1995년 말과 1996년 초에 걸쳐 綜合課稅에 따른 金融市場의 자금이 代替資産으로의 이동을 피하면서 資金의 短期浮動化 現象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資金移動이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일부 金融機關의 資金過不足規模가 擴大되고 그에 따라 콜市場, 債券市場 등 金融市場에서 일시적인 混亂이 초래될 可能性도 있다.

이후에도 이러한 資金의 短期浮動化 現象은 金利自由化·金融自律化·開放化의 진전으로 인한 全般的인 金融環境의 變化와 複合적으로 작용하여 金融市場의 不安定性이 擴大될 우려가 있다.

#### 2) 市中 資金不足

民間의 現金保有가 增加하고, 市中資金이 實物市場으로 이탈하거나 기업어음, 표지어음, 표지팩토링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短期商品으로부터 長期債券 및 長期貯蓄性保險 등 長期商品으로 이동함에 따라 시중에는 通貨性이 저하되고 資金不足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中小企業의 短期運營資金 調達을 어렵게 하고 資金調達費用을 上昇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시중의 자금난으로 기업의 은행대

출수요가 증가하여 通貨增發 壓力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3) 個別 金融機關의 受信基盤 弱化

巨額資金의 預置比重이 높고 綜合課稅 回避가 곤란한 金融商品의 比重이 높아 상대적으로 資金流出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銀行, 投金 등 金融機關의 受信基盤이 약화되어 이들 金融機關의 金融仲介機能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 나. 巨視經濟的 影響

우리 경제는 1995년 하반기 이후 景氣下降局面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景氣後退에 따라 投資와 生産活動이 위축되고 物價上昇壓力이 가중되어 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해 家計의 消費는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效果는 微微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經濟가 下降局面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성격의 消費의 增加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 및 金融自律化·開放化關聯 制度改編의 進展에 따라 金融市場의 不安定性이 커질 경우 投資가 위축되고, 市中資金難이 초래되는 경우 中小企業의 生産活動이 침체하게 되어 景氣下降勢를 加速化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資金이 不動產市場으로 이동하여 不動產 景氣가 活性化되면 建設投資는 활기를 보일 수도 있다.

輸出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는 받지 않을 것이나 全般的 投資 減少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할 것이며 반면 輸入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의 증가로 증가할 수 있다.

金利의 경우 1995년 11월 현재 시중 자금사정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시중에 자금부족이 생기는 경우 시중 金利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滿期 5년 未滿 短期債券에 대한 利子가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데 따른 債券需要 減少에 따라 短期金利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반면 長期債 需要增加에 따른 長期債 金利의 下落으로 金利의 短高長低 二分化現象이 나타날 전망이다.

資金移動으로 인한 全般的인 通貨性의 低下 및 市場流動性의 減少는 金利上昇을 招來하여 通貨當局의 膨脹的 通貨供給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通貨增加 壓力은 추가적인 物價上昇要因으로 작용하여 通貨管理에 애로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 IV.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設問調查 結果\*

### 1. 設問調查 概要

#### 가. 設問調查의 目的

본 조사는 1996년 도입되는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가 金融部門에 미칠 影響에 대하여 金融機關 勤務者 및 金融部門 專門 研究者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制度改善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나. 設問調查 設計

##### 1) 資料蒐集 方法 및 期間

설문대상자의 심도 있는 답변을 유도하여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專門調查者의 訪問面接調查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이었다.

##### 2) 母集團의 定義

본 조사의 母集團은 韓國銀行에서 발행한 『우리나라의 金融制度』에 나타난 금융기관 체계에 포함되는 모든 金融機關의 從事者와 1995년 9월 말 현재 大學 및 각종 經濟研究機關에 근무하는 專門研究者로 하였다.

\* 研究者들은 設問調查 結果의 分析과 整理에 힘써 주신 韓國租稅研究院의 金成龍 研究員과 廉世羅 研究助員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 3) 標本의 抽出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먼저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을 각종 2차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判斷標本抽出法을 통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또한 대학 및 각급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 중 금융부문의 전문가를 任意 抽出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表 IV-1>과 같다.

&lt;表 IV-1&gt; 母集團 및 標本의 크기

	모집단의 수	표본의 수
예금은행	82	58
시중은행	15	35
지방은행	10	10
외은지점	52	1
특수은행	5	12
개발기관	3	5
투자기관	38	48
투자금융	15	20
종합금융	15	15
투자신탁	8	13
저축기관	3,408	8
상호신용금고	237	1
신용협동조합	1,461	1
상호금융	1,710	1
새마을금고	-	5
보험기관	38	20
생명보험	33	15
손해보험	17	5
증권기관	32	37
증권회사	32	37
대학 및 연구소	-	25
총계	-	201

4) 調査內容

설문지는 (1) 응답자의 人的事項에 대한 부분, (2) 金融所得 綜合課稅 制度의 必要性에 대한 부분, (3) 동 제도의 도입이 金融機關 및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부분, (4) 동 제도의 問題點 및 改善方向에 대한 부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 設問調查 結果分析<sup>22)</sup>

가.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에 대한 認知度 및 必要性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認知程度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3%,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8.2%로, 전체의 98.5%가 동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동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綜合課稅制度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201명중 3명)의 답변은 이하 資料處理過程에서 除去하였다.

연구소(84.0%), 새마을 금고외(50%), 투신사(46.2%), 증권사(45.9%) 등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勤務年數가 길수록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比重이 높아지고 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必要性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4.8%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하여, 金融機關 從事者나 研究機關 研究者의 대부분이 동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는 租稅衡平 등의 실시목적 달성이 어렵다(52.6%)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金融機關 및 金融貯蓄者의 不便을 가중시키기 때문에(26.3%)

22) 이하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 질문항목에 대한 세부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부록을 참조하라.

와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이 적합하지 않으므로(21.1%)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勤務機關別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단자 및 종금사 종사자(50.0%) 및 새마을 금고의 종사자(33.3%)는 다른 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金融機關 및 金融貯蓄者의 불편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으며, 은행(40.5%) 및 증권사(50.0%) 종사자는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 나.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8.6%가 그 정도가 微微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연구소 및 대학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80.0%가 그 영향이 微微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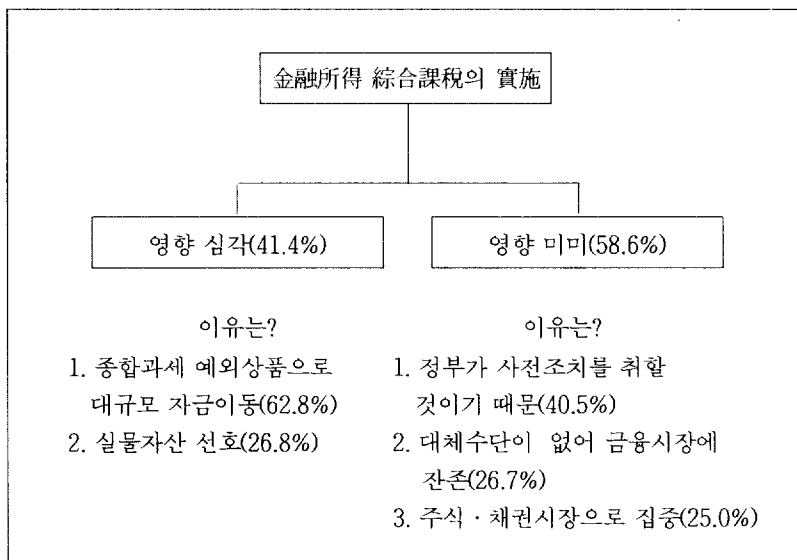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深刻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金融商品間의 資金移動(62.8%)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實物資產 選好(26.8%)를 들었다.

동 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微微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정부가 事前措置를 취할 것(40.5%)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수단이 없어 金融市場에 殘存할 것(26.7%), 실물보다는 株式 및 債券市場에 資金이 集中될 것(25.0%) 순으로 응답하였다.

#### 다. 金融商品에 流入되었던 資金 중 節稅가 必要한 高額 金融所得者의 比重

정부가 유가증권의 증도 환매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綜合課稅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던 채권, CD 등 유가증권이나 특정금전신탁 등 節稅型 金融商品에 상당한 資金이 流入되었다.

[圖 IV-1]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의 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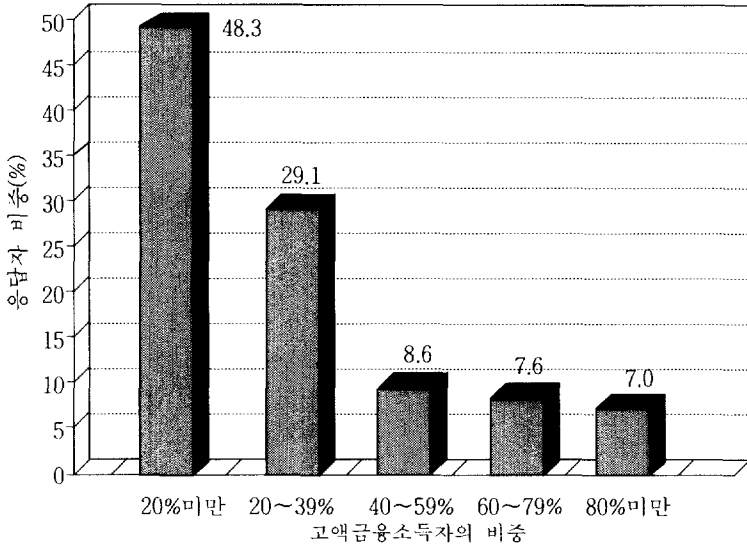
이러한 節稅型 商品에 유입된 資金 중 실제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여 節稅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資金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금융기관 근무자의 48.3%가 2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금융기관 근무자의 29.1%가 20% 이상 4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金融機關 從事者의 77.4%가 節稅型 商品에 流入된 資金 중 40% 미만이 실제로 절세가 필요한 자금이라고 응답하였다.

라.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로 인한 주요 金融商品의 離脫 比重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로 CD는 그 잔액의 41.8%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심각하게 자금이탈이 일어날 상품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CP(40.9%), 어음매출(33.6%), CMA(33.4%) 등의 순서로 각 상품잔액 중 자금 이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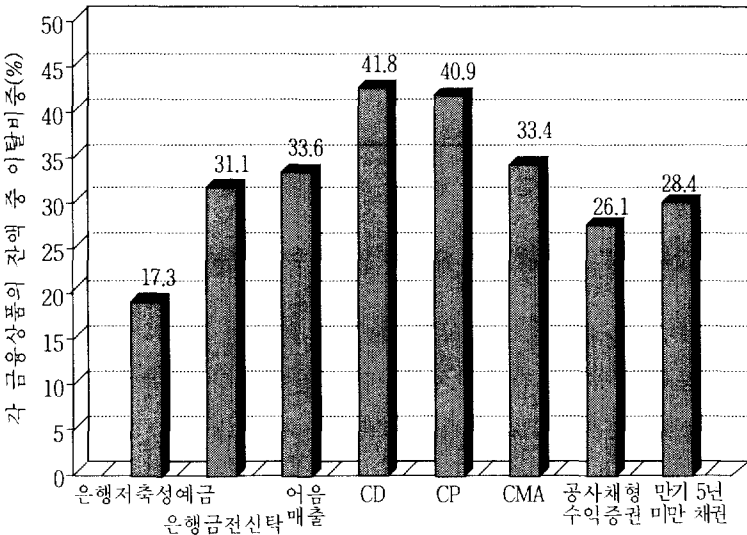
[圖 IV-2] 節稅가 필요한 高額 金融所得者의 流入 比重

(단위: %)



[圖 IV-3] 主要 金融商品의 離脫 比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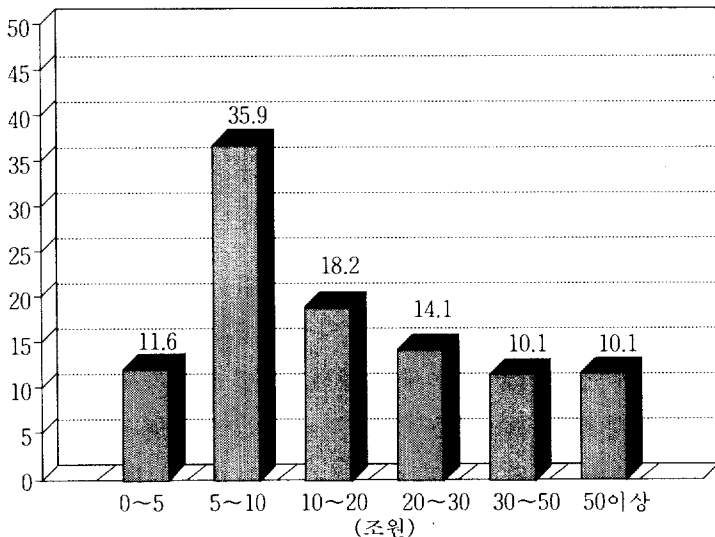
마. 資金移動 規模

1995년 9월 말 현재 개인보유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440조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實施로 이 자금 중 5조원 내지 10조원이 金融圈 안에서 또는 金融圈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자의 비중(35.9%)이 가장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47.5%가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10조원 이하의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機關別로 보면, 投信社 從事者의 경우 5조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자금의 이동규모를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보고 있으며, 保險社의 경우에는 20조원 이상 30조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資金移動 規模를 크게 보고 있다.

[圖 IV-4] 豫想 移動資金 規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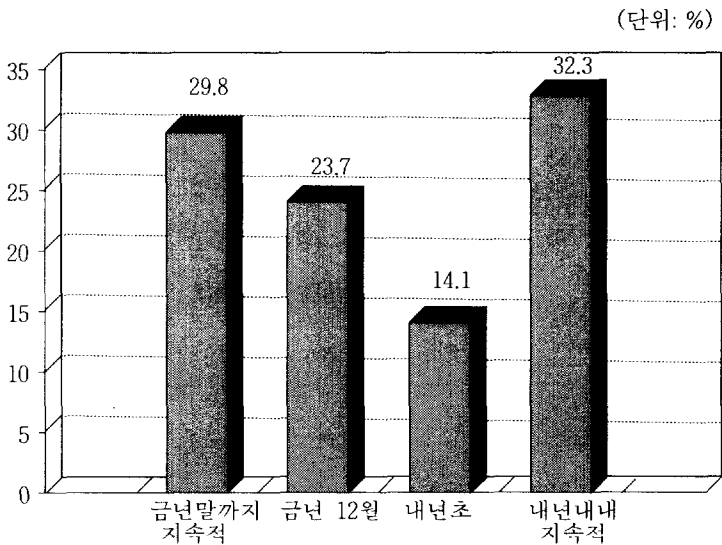
(단위: %)



## 바. 資金移動 時期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 時期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29.8%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23.7%가 금년 12월에 자금이 이동할 것을 예상하여, 전체 응답자의 53.5%가 금년 내 자금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응답하였다.

[圖 IV-5] 資金移動 時期



## 사. 資金 移動處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資金流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資金移動處에 대하여 총예상 이동 자금 중 각 資金移動處가 차지하는 豫想流入比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總移動資金의 56.6%가 證券市場에 流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長期 貯蓄性保險에는 10.9%, 實物 部門에도 15.6%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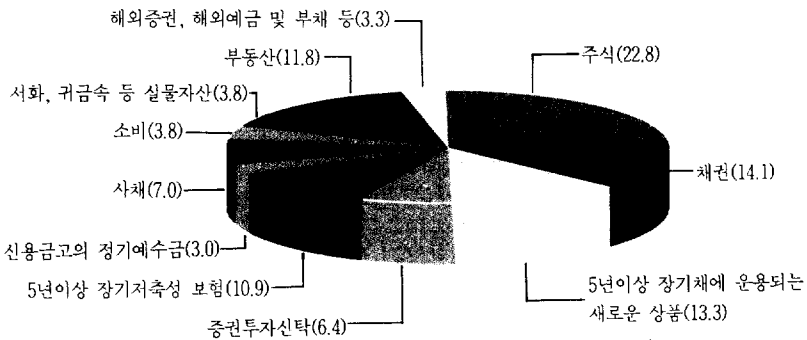
< 表 IV-2 > 資金의 豫想 移動處

(단위: %)

저축	국내	금융	제도권	은행	단자·종금	0
				증권	주식	22.8
					채권	14.1
					5년이상 장기채권에 운용되는 새로운 상품	13.3
					증권투자신탁	6.4
				보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	10.9
				기타	신용금고의 정기예수금	3.0
			비제도권	-사채		7.0
			실물	부동산		11.8
				서화·귀금속 등 실물자산		3.8
			해외	해외증권, 해외예금 및 부채 등		3.3
소비						3.8
						100.0

[ 圖 IV-6 ] 資金의 豫想 移動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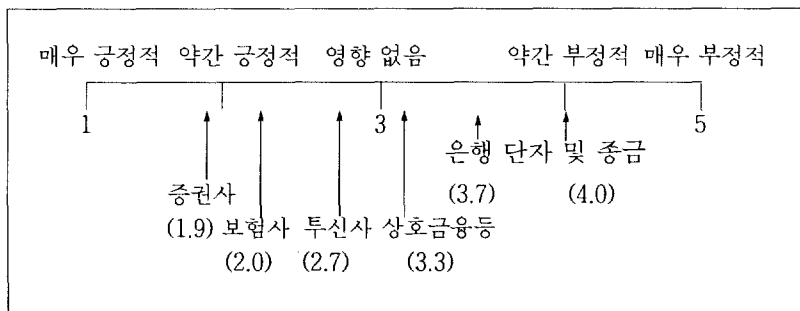
(단위: %)



### 아. 各 金融機關에 미치는 波及效果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金融機關의 受信高 및 收益性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응답자들은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肯定的 影響을 받을 금융기관으로 證券會社, 保險社, 投信社를 열거하였으며 그 중 證券會社 및 保險社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否定的 影響을 받을 금융기관으로 單子·宗금, 銀行, 상호신용금고 등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에서 短資·綜金 및 銀行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다.

[圖 IV-7] 各 金融機關에 미치는 影響



### 자. 金利·貯蓄에 미치는 影響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금리 하향 안정화에 약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3.9%,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24.7%로 전체 응답자의 68.6%가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해 金利가 安定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에 동 제도 실시가 金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22.7%였으며 오히려 金利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7.1%에 불과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家計의 金融貯蓄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설문

대하여 응답자의 58.1%가 금융저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金融貯蓄이 약간 낮아진다는 응답은 31.3%인 반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하여, 응답자들은 동 제도의 실시가 家計의 金融貯蓄에는 별 영향이 없거나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 表 IV-3 > 金利 및 貯蓄에의 影響

(단위: %)

금리하향 안정화	상당히 기여	24.7
	약간 기여	43.9
	별로 기여 못함	22.7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킬 것임	7.1
금 융 저 축	현저히 감소	5.1
	약간 감소	31.3
	별 영향 없음	58.1
	오히려 상승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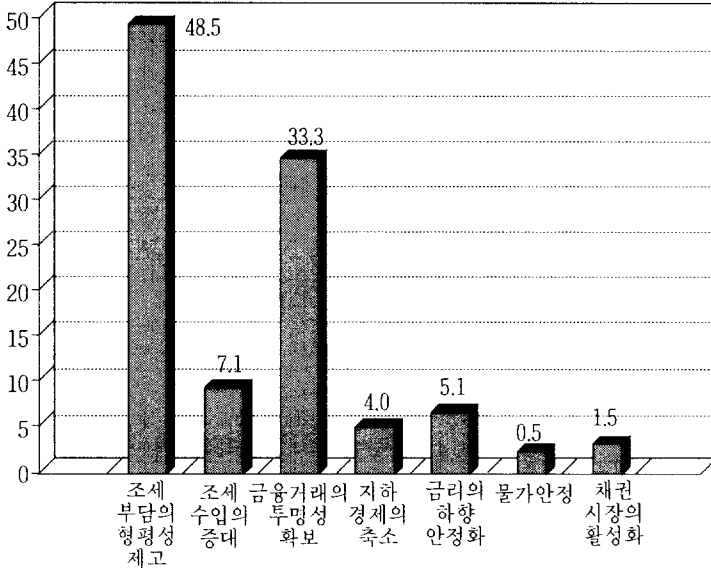
차. 期待效果, 改善方向 等

金融所得 綜合課稅 실시로 기대되는 效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8.5%가 租稅負擔의 衡平性 提高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金融去來의 透明性 確保(33.3%)라고 지적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하여 資金이 移動할 경우 나타나는 問題點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中小企業의 資金調達上의 隘路(34.3%), 企業 短期資金 調達 市場의 萎縮(31.3%), 一部 金融機關의 受信基盤 弱화(29.8%)를 들었다. 機關別로는 銀行 從事者의 경우 수신기반 약화(41.3%)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證券社 및 投信社 從事者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 외의 다른

[圖 IV-8]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期待效果

(단위: %)



금융기관들은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위축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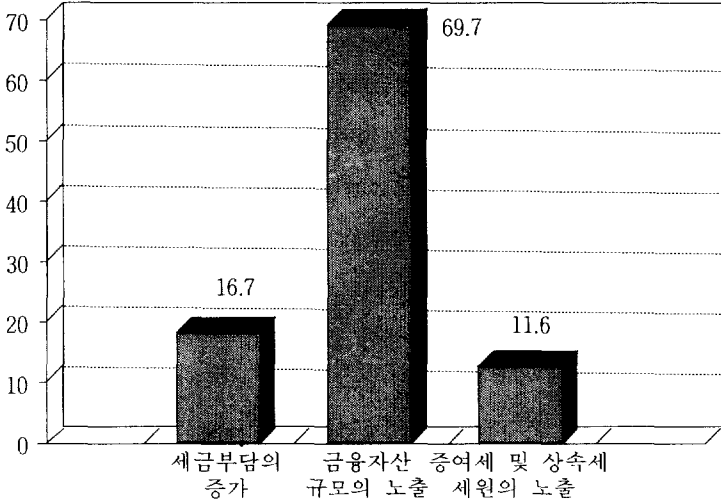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고객들은 金融資産 規模가 露出되는 것(69.7%)을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稅金負擔의 增加(16.7%), 贈與稅 및 相續稅 稅源의 露出(11.6%) 등을 들었다.

현재 상태로의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問題點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1.0%는 合意借名에 의한 金融所得 綜合課稅 회피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상품으로 인한 稅制上 不公平의 問題(41.9%), 長期 貯蓄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32.3%)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향후 借名이나 盜名去來의 增加 可能性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6%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상당히 증가할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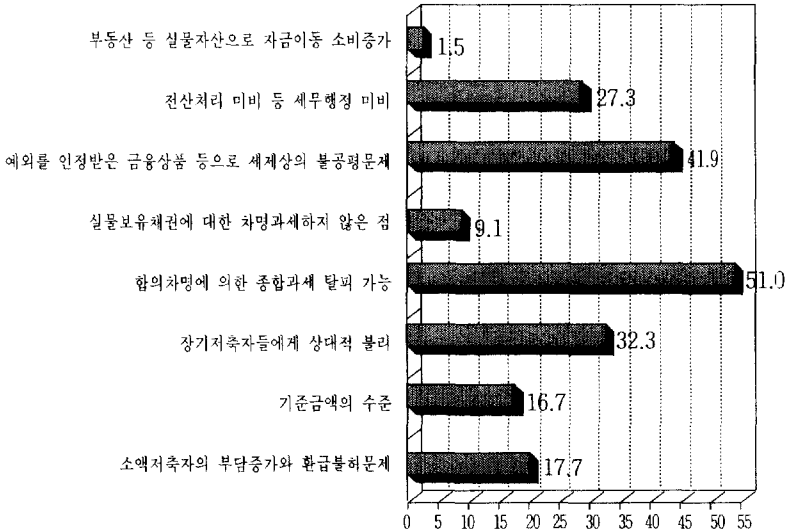
[圖 IV-9]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顧客이 불편해 하는 점

(단위: %)



[圖 IV-10]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的 問題點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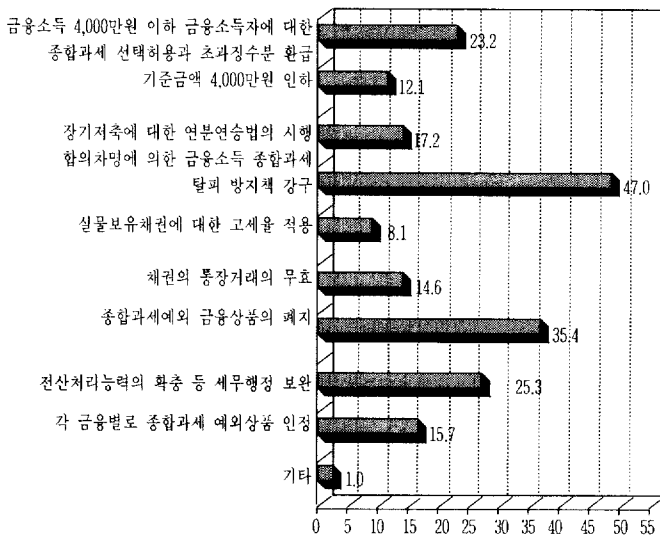
註: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로서 총 합계는 200%임.

라는 응답도 26.3%나 되어 전체 응답자의 82.9%가 차명이나 도명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계획중인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를 평가할 때 가장 필요한 補完措置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의 47.0%가 合意 借名에 의한 金融所得 綜合課稅 脫皮 防止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綜合課稅 例外 金融商品의 廢止(35.4%), 전산처리 능력의 확충 등 세무행정 보완(25.4%),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에 대한 선택허용과 초과징수분 환급(23.2%), 장기저축자에 대한 연분연승법의 시행(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마련 등의 응답이 있었다.

[圖 IV-11] 필요한 補完 措置

(단위: %)



註: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한 결과로서 총 합계는 200%임.

5년 이상 長期 貯蓄性保險의 非課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가 衡平性을 고려하여 課稅 對象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면세 혜택을 주더라도 가입한도의 하향조정 등 補完措置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6.8%나 되어 私的 社會保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免稅惠澤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20.7%)에 비해 長期 貯蓄性 保險에 대한 非課稅가 不合理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끝으로, 현재 시행중인 金融實名制의 推進成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그다지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도 30.8%나 되었는데, 기관별로 투신사, 새마을 금고 외 종사자들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그다지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오히려 높았다.

## V.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政策課題

### 1.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補完課題

지금까지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波及效果에 대한 分析結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은 우려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金融機關 從事者를 對象으로 한 設問調查 結果는 각 金融機關別로 資金移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設問調查에서 나타난 결과의 미시적 분석은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는 1996년이 가까워지면서 綜合課稅에 관한 관심과 함께 해당 金融機關에 미치는 衝擊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우려로 한때 金融所得 綜合課稅方案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원래 취지인 公平課稅에 충실해야 한다는 租稅論理와 金融市場에 주는 衝擊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金融論理가 상충하였던 것이다. 이는 주요 경제이슈가 衡平과 效率의 相衡關係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특이한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相衡關係로 인식하는 데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입각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과 波及效果를 상세히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經濟에 주는 否定的 波及效果를 최소화하면서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다.

### 가. 基準金額 引下

基準金額은 당초 金融市場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基準金額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對象者는 全體 金融所得者의 極少數에 불과하게 되었고 課稅衡平性의 提高라는 綜合課稅의 목적 달성에도 미흡하게 되었다. 따라서 基準金額은 향후 점차적으로 인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金融所得分布를 적절히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基準金額 4천만원이 源泉徵收稅率 15%를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源泉徵收稅率이 10%로 인하될 경우 基準金額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低所得層 稅負擔 緩和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기준금액인 연간 4천만원 미만의 金融所得을 가진 경우 15% 源泉徵收稅率로 分離課稅하고 既存 所得에 合算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源泉分離課稅 稅率보다 所得稅 限界稅率이 낮은 대부분의 低所得層의 경우 金融所得에 대해서 과중한 所得稅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基準金額 미만의 金融所得에 대해 綜合課稅하여 既存 所得의 限界稅率에 따라 課稅하지 않고 分離課稅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이다. 즉, 源泉分離課稅 稅率보다 所得稅 限界稅率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還給해 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이 基準金額 미만의 경우 還給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동안 年末精算으로 종결되던 근로자들이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대부분 환급신고를 할 경우 행정상 부담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源泉徵收稅率이 10%로 인하여 사실상 稅金優待貯蓄은 廢止되므로 그 동안 稅金優待貯蓄에 의존하던 低所得層의 경우 세부담이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해 증대하게 될 것이다.

1995년 정부의 稅法改正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계생

할자금지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가계생활자금지축도 10%의 分離課稅稅率이 적용되는데, 일반저축에 적용되는 源泉徵收稅率이 1997년부터는 10%로 인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율상 혜택은 1996년 1년에 한정되므로 低所得層의 稅負擔 緩和效果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低所得層의 稅負擔 增大問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一定限度の 貯蓄으로부터 발생하는 利子所得에 대해 源泉徵收를 免除하여 궁극적으로는 非課稅하는 非課稅特別計座制度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方案은 非課稅 惠澤이 高所得 階層에게도 주어진다는데서 衡平性은 다소 문제가 되지만 稅金 優待貯蓄 廢止와 還給不許에 따른 低所得層의 稅負擔 增大와 貯蓄 減少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制度는 英國의 非課稅貯蓄 特別口座制度(TESSA)와 유사한 제도이다. 영국의 이 제도는 1인당 1구좌밖에 개설할 수 없고 총잔고 9천파운드까지의 예입액에서 수취한 이자만을 비과세하고 있다.

이 方案은 非課稅計座로부터 발생하는 利子相當額에 대해 金融所得 控除를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金融實名制가 실시되어 金融所得의 투명성이 제고된 상황에서 金融所得의 경우 여타 소득에 비해 거의 100% 과표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일정한도의 金融所得控除가 필요하고 특히 이자소득 발생의 필요경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도 이 방안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비과세 特別計座制度를 신설할 경우 기존의 稅金優待貯蓄은 모두 廢止하여 이 제도에 흡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일 既存의 稅金優待貯蓄 중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制度를 신설하면 制度의 實效性이 크게 弱화되기 때문이다.

#### 다. 實物債券 差等課稅

債券의 경우, 長期債券을 稅制上 우대하기 위하여 債券의 상환기간에 따라 源泉稅率을 二元化하였다. 즉, 5년 이상 長期債券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分離課稅를 선택할 경우 10년 이상은 25%, 5년에서 10

년 미만의 경우는 30%로 源泉分離課稅하도록 함으로써 高額金融所得者의 資金을 長期債券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1995년 稅法改正案에서는 만기 전 매각하는 각종 債券에 대하여도 源泉徵收하고 매출자의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CD, CP 등의 實物保有와 中途賣却을 통해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綜合課稅의 實效性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中途賣却하는 債券에 대한 源泉徵收義務는 金融機關뿐 아니라 모든 법인에 부여하여 개인이 법인에 매각할 경우에도 중도매입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金融所得 本人通報制의 통보내용에 이미 지급한 이자 이외에 債券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도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債券實物保有를 통한 綜合課稅 回避에 대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만기 전 金融機關에 판매하여 그 개인의 인적사항이 통보되더라도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거래자는 여전히 실물 보유를 통해서 綜合課稅을 회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流通過程에서 두번 이상 金融機關이나 법인에게 매도할 경우 源泉徵收 證憑書類가 과도하게 첨부됨으로 인한 불편을 감당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 金融市場에 주는 衝擊을 완화하면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效性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實物保有債券에 대해서 實物保有期間을 파악하여 35% 정도의 源泉徵收 稅率로 分離課稅하는 方案을 검토할 수 있다. 5~10年 長期債券에 적용되는 30%의 源泉徵收稅率보다는 높지만 短期債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綜合課稅 對象이 되기를 꺼려하는 高額金融所得者로부터의 需要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實物保有期間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金融機關의 計座로부터 債券이 實物로 빠져 나가는 시점을 債券에 명시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즉, 만기시 源泉徵收할 때 실물보유기간에서 발생한 이자부분은 35%로 계좌거래부분은 15%의 源泉徵收稅率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이다.

### 라. 有價證券 讓渡差益 課稅方案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는 1993년 8월 12일 金融實名制 실시에 따른 대통령담화에 의해 1997년까지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課稅方案을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19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綜合課稅될 경우 상대적으로 株式 등의 金融資産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므로 金融市場과 資本市場에서 不均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자부분과 양도차익부분을 함께 포함하는 金融所得을 발생시키는 金融商品의 경우 양도차익부분이 비과세됨으로써 상품구성상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1998년 이후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有價證券 讓渡差益 課稅方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有價證券 讓渡差益課稅를 도입할 때 여타 소득 즉, 勤勞所得, 事業所得 및 資産所得間 稅負擔의 衡平성이 유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여타 자본이득 특히 不動産 資本利得과 有價證券 資本利得間에는 最小限의 課稅衡平이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상의 衡平追求를 위해 分配問題 解決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본시장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有價證券 讓渡差益 課稅導入時 衡平을 강조하여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하는 것보다 단순화시키는 것이 이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有價證券 讓渡差益課稅는 資本市場에 주는 衝擊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段階的으로 實施할 필요가 있다.

### 마. 長期金融所得 課稅方案

1994년 稅制改編案은 수익계산기간이 1년 이상 장기인 金融資産所得의 구체적인 綜合課稅方式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長期債券의 이자에 대하여 分離課稅와 綜合課稅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分離課稅 선택시 源泉徵收稅率을 保有期間에 따라 差等適用하는 方案을 마련했을 뿐이다. 따라서 長期 金融商品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된 年分年乘法(income averaging)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해 대상 金融商品의 선정과 구체적인 연분연승방법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年分年乘法을 적용하는 것은 基準金額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年分年乘法 적용 상품이 둘 이상일 경우, 이자 발생기간과 이자소득 금액에 따라 어느 金融商品 利子에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稅額 計算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年分年乘法을 적용하면 금융상품간 세후수익률상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年分年乘法을 적용하는 대신, 보유기간별 공제금액을 달리하는 '長期保有控除'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長期金融商品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1년마다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1년 단위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有價證券 讓渡差益課稅가 장차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는 長期債券의 收益을 利子所得과 讓渡差益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利子和 讓渡差益을 구분하는 공식을 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빈번히 생겨나는 각종 派生金融商品(derivatives)에 대한 공식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과세당국도 派生金融商品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연구하여 시의적절한 課稅方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2. 金融實名制의 補完

최근 비자금과문에서 나타났듯이 金融實名制가 실시된 후에도 여전히 借名去來가 가능하다. 명의를 빌려준 당사자가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목전에 두고 綜合課稅時 지불해야 할 巨額의 稅負擔을 우려하여 비자금의 존재를 밝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借名去來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1996년부터 金融所得 綜

합課稅가 실시되면 巨額金融所得者의 경우 綜合課稅에 따른 稅負擔의 增大와 金融所得資料의 國稅청 通報를 우려하여 오히려 借名去來가 증대할 수도 있다. 즉, 합의에 의한 차명이나 중개인의 차명알선 혹은 도명을 통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回避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借名去來의 防止를 위한 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金融慣行의 正常化와 公平課稅라는 金融實名制의 目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金融實名制 補完對策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가. 借名防止對策: 非實名去來의 實名誘導

1995년 3월 31일 현재 實名預金 確認率은 96.5%로 휴면계좌를 제외한 대부분이 실명인 것으로 파악되나 非實名計座의 實名轉換 規模는 無記名·假名計座와 借名計座에서 轉換된 金額을 모두 합해도 全體 金融資産의 2%에 불과한 6조 3천억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저조한 實名轉換 實績은 아직까지도 實名形態의 合意借名預金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향후 金融實名去來가 관행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借名預金의 非本名 實名確認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를 통하여 盜名이나 合意借名形式의 預金計座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諸般 措置를 취하여 점진적으로 借名去來를 本名去來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초기 충격을 분산하고 金融實名制를 보다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借名去來의 本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장 대신 서명에 의한 金融去來를 확대하여 印章이 없이도 서명에 의하여 金融去來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1994년 2월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 擴大方案'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법률상 날인이 필요한 경우인 當座預金 및 擔保貸出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金融去來時 서명

사용이 가능하도록 基本制度를 정비하고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印章制度에 익숙한 金融慣行과 金融機關, 國民들의 理解不足 등으로 실제 서명거래되는 비율은 1994년 12월 말 기준으로 銀行受信의 경우 0.9%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義務化하는 方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이미 서명에 의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의 폭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預金引出이나 貸出去來時 도장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金融機關 내부규정을 우선 개정하도록 유도하고 어음 수표법을 개정하여 수표나 어음발행의 기명날인 요건을 개정하고 서명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擴大하기 위해서는 署名對照 緩和方案 마련하고 政策的 支援과 弘報를 지속하는 등 상당기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科學的 署名對照方法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署名對照를 완화하여 金融機關이 身分證 및 秘密番號 등으로 본인임이 확인되면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서명이 크게 틀리지 않는 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金融去來를 配偶者 혹은 秘書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빈번하게 금융거래를 대행하는 자의 서명을 금융계좌 개설시 등록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 나.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強化

金融實名制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金融機關 종사자들의 의식전환이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金融實名制 시행 후에도 제2의 장영자사건과 비자금과문 등 실명제 위반사례가 나타나 金融界가 아직도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外形實績 爲主의 經營戰略을 추구하는 등 非正常的의 金融活動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현행 金融實名制는 實名去來慣行의 定着을 위해서 秘密保障의 철저

한 이행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일반 행정기관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감독 사찰을 위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경제원 장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동일 金融機關의 內部 또는 金融機關 相互間에 업무상 필요한 情報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情報提供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현행 金融實名制下에서 實名制 履行與否의 점검은 制度的으로 金融機關의 自體監査機能을 擴大하거나 3개 金融監督機關의 監督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監督·監査機能을 십분 활용하여 제대로 實名制가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金融實名制 定着을 위한 金融去來의 秘密保障이 자칫 金融機關 자체 내의 實名制 違反事例를 조장하지 않도록 監督·監査機能의 公正性 強化가 요망된다. 모든 預金計座에 대한 監督·監査가 어려우면 정기적으로 예금계좌를 임의로 추출하여 공정하고 정밀한 實名確認監査를 벌여나 가도 대단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 다. 金融所得 通報制度 實施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는 所得資料의 성실한 제출과 資料處理의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資料提出을 簡素化하여 1995년 이후 金融所得資料를 연 2회 국세청에 제출(8월 말, 익년 2월말) 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앞서서 도명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도록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顧客에게 金融所得 通報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정시점에서 고객 별로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내역 및 잔고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도명거래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아울러 대고객 금융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金融機關이 예금주에게 金融所得과 源泉徵收 內譯을 매년 다음해 3월까지 고객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金融所得 통보시 他人名義를 借名하여 綜合所得稅나 贈與稅를 逋脫한 경우, 租稅의 追徵 및 兩當事者 모두 租稅犯(명의대여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내용을 소득통보시에 병기토록 하는 것은 차명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세 부과내역 통보에 앞서서 計座別 對顧客 通報體制를 가동시킬 수 있고 그 문제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고객 금융거래통보는 일반인이 자신의 명의도용 여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므로 반송될 경우 반드시 성명과 주소를 재확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 라. 陰性的 資金去來 調節對策

최근 발생한 비자금파문으로 金融實名制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의 중요한 수단인 陰性的 資金去來 차단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서 최근에는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돈세탁 방지는 이제 전세계적인 현안이다. 이미 유엔은 지난 1988년 세계마약 및 범죄방지회의에서 각국이 돈세탁방지법을 가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고 OECD와 유럽연합(EU)은 돈세탁방지법 입법 지침을 마련, 회원국에게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돈세탁 방지는 금융기관에게 의혹이 가는 자금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金融監督機關의 權限을 強化하는 것을 주요수단으로 한다. 이와 같은 돈세탁방지법을 별도로 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고 다만 현 시점에서는 金融機關에게 一定金額以上の 現金去來를 모두 보고토록 義務化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의 현금입출금은 모두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음성적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동 과정에서 적어도 한번은 금융기관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음성적 자금거래를 차단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 金融市場 安定과 貯蓄增大를 위한 政策課題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의하여 金融市場이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해도 여러가지 부작용이 부분적이거나 나타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政策當局은 일차적으로 金融市場의 安定을 회복하고 나아가 巨視的 國民經濟의 安定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안정을 위한 정책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正常的인 消費의 增加나 健全한 最適化 經濟行爲로서의 資金移動까지 막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合理的 經濟活動을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國民經濟에 長短期的으로 否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마련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全般적인 規制緩和의 흐름에 逆行하는 政策은 삼가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金融實名制 및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근본 취지가 去來의 透明性 확보와 租稅衡平의 提高를 통한 經濟正義의 實現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國民厚生의 增進 및 國民經濟의 長期的 發展을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金融市場으로부터의 資金離脫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綜合課稅原則을 완화하거나 綜合課稅對象을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 가. 金融市場 安定對策

資金移動 및 流出을 최소화함으로써 金融市場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급적 金融商品間 동일한 經濟的 收益率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金融商品間 資金移動을 방지하며, 制度金融圈內 金融資産에 대하여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불건전한 부문으로의 자금이동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을 制度金融圈에 잔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라 각종 長期債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長期債의 需給狀況을 예의주시 하며 장기채 발행규모를 적절히 확대해 나감으로써 制度金融圈 자금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長期債市場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 수요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한 長期債 需要의 增加를 적극 활용하여 長期國公債의 공급을 확대하고 會社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國公債市場을 중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金融機關으로부터 이탈한 자금이 단기간 내에 株式市場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證券市場이 과열되는 경우 일반 少額貯蓄 資金도 證市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의 재테크 및 과소비 등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으므로 證市安定을 위한 對策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金融機關 受信金利 自由化를 가능한 한 早期에 完了하여 金融機關의 受信競爭力을 제고하고, 더불어 시장금리연동형 金融商品을 폭넓게 인정하여 수신기반을 확충해 주는 방침을 고려하며 각종 금융저축상품 개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 金融機關의 자금 조달의 불안정성 증대에 따른 金利變動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金融機關에 대해 可用資金 範圍內 資金運用을 유도하고 일시적인 資金 過不足의 원활한 조절을 위한 短期金融市場의 活性化 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득수준의 전반적 상승에 따른 건전한 소비의 증가가 아닌 과소비·사치성 소비는 지속적으로 억제하여야 할 것이며, 자금의 도피 및 은닉을 위한 海外不動產 및 金融資産의 取得을 監視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金融圈 내에서 投資對象을 찾지 못한 資金이 不動產이나 기타 實物資産으로 이동하여 投機資金化할 우려가 있으므로 不動產實名制, 財産稅 課標現實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貴金屬, 骨董品, 書畫 등에 대한 징세 강화에 주력하는 不動產 및 實物資産에 대한 投機團束을 강화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마찬

가지로 비제도권으로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地下經濟에 대한 團束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나. 巨視政策方向

우리 경제는 景氣循環의 頂點을 지나 1995년 하반기 이후 下降局面에 進入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景氣後退에 따라 投資와 輸出이 위축되고 物價上昇壓力이 가중되어 경제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政策當局은 급격한 긴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실시를 삼가고 金融市場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경제의 연속성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金融商品間 資金移動에 따라 通貨指標의 構成要素 중 通貨性이 낮은 金融商品의 比重이 커질 것이며 이런 경우 동일한 통화증가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市中 流動性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伸縮的 通貨管理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通貨增加率 目標에 執着하지 말고 金融市場의 狀況에 따라 신축적인 通貨管理基調를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통화지표의 경우에도 총통화의 집중 관리에서 탈피하여 M3, M2+CD 등의 通貨總量指標는 물론 다양한 金利指標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流動性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金融市場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기업, 특히 中小企業들의 資金調達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다. 貯蓄增進方案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에 대비하여 金融貯蓄의 위축을 방지하고 私金融資金을 制度金融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補完對策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金融機關의 책임이 크며 정부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金融自律化的 推進과 함께 金融實名制의 實施로 金融去來가 투명화

됨에 따라 金融資金의 移動要因으로서 金利가 차지하는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金利自由化로 資金의 金利彈力性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金融自律化라는 새로운 상황은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한 金融商品의 開發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었다. 新金融商品開發은 동시에 實名制 實施와 綜合課稅에 따른 金融貯蓄의 減少를 防止하고 私金融資金의 制度圈流入을 促進할 것이다. 예컨대 시장금리연동형 금융상품을 폭넓게 개발하는 것은 金利自由化時代에 부응하면서 受信基盤을 확충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金融機關 이용을 效率化하고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도 金融機關의 수신고 증대뿐 아니라 實名制의 定着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며 나아가 저축증진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金融市場 開放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노-하우가 상당히 축적된 선진국의 金融機關이 다수 국내에 점포를 개설할 경우 기존 국내 金融機關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國內 金融機關은 經營合理化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사교가 요구된다.

그 동안의 金融去來慣行은 필요에 따라 다수의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거래당사자의 불편뿐 아니라 다수의 休眠計座를 만들어 금융거래 내역을 金融機關이 국세청에 통보할 때 소요되는 行政費用을 증대시킨다. 즉,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를 위한 行政費用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行政費用을 줄이고 금융거래자의 便宜를 增進시키기 위해서는 「綜合通帳」을 모계좌로 한 자금결제의 관행을 확대하여 制度金融圈의 역할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休眠計座 整理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實名確認되지 않은 휴면계좌는 별도관리하여 비실명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金融機關이 顧客에게 金融所得情報를 通報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결국 수신고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人別 혹

은 計座別로 金融所得을 顧客에게 通報하여 金融所得 綜合課稅 申告의 사전 안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金融機關에게는 우 송료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다. 따라서 휴면계좌가 정비되고 고객의 주소관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단기적으로 金融機關에서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金融所得 情報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안내방법을 개발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세 신고 사전안내에 대해 효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金融機關이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人別 年間 金融所得金額 및 基本的인 申告節次 등을 안내하여 金融所得者의 신고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VI. 要約 및 結論

본 연구에서는 金融所得 綜合課稅 시행을 앞두고 예상되는 經濟的 波及效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政策方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과 그 의의를 살펴본 후,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과 金融市場, 우리의 國民經濟에 미치는 다양한 波及效果를 分析하였고 金融機關 從事者와 經濟 專門家들을 對象으로 設問調査을 實施하여 그 結果를 分析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金融所得 綜合課稅 및 金融實名制에 대한 補完課題, 金融市場의 安定과 貯蓄 增大를 위한 政策課題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施行을 앞두고 1995년 연말을 전후하여 資金 移動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나 全體的인 資金 移動의 規模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全般的 稅率引下 및 控除 擴大 등으로 少額所得者는 金融所得 綜合課稅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실시되더라도 分離課稅 對象에 해당되는 大多數 少額 金融貯蓄 保有者의 貯蓄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稅金優待貯蓄의 縮小에 따른 中低所得層의 預金 중 일부가 이동할 유인이 있으나 그 규모는 微微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자금의 이동도 制度金融圈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편 金融所得 綜合課稅 適用對象이 되는 年 金融所得 4천만원 이상 高額 金融所得者들 보유 금융저축의 경우 일단 代替資産을 찾아 이동할 유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반 요인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資金 移動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

면 高額 金融所得者라도 상당한 高額 金融資産家가 아닌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므로 이들에게는 자금을 이동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확정된 金融所得 綜合課稅案에 따르면 만기 5년 이상 長期貯蓄, 長期債券과 長期 貯蓄性保險 및 株式을 제외한 거의 모든 金融資産으로부터의 金融所得이 예외 없이 綜合課稅 對象이 되어 이들 외에 마땅한 代替資産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울러 상당수의 巨額 資産家들이 이미 각종 非課稅 및 分離課稅 對象 金融商品을 매입하고 그 밖의 다양한 방식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回避手段을 講究해 놓았을 可能性이 많기 때문에 資金 移動이 상당히 적을 것이다.

결국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實物市場 등 金融圈 밖으로의 資金 離脫은 많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資金 移動이 金融商品間的 代替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諸般 要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綜合課稅에 대응하여 1995년 10월 이후 실제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資金의 規模는 5조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 그 이유는 高額 金融所得者라도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여 자금을 이동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회피수단을 강구해 놓았을 가능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資金의 移動은 1995년 11월 현재 소규모로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은 비자금과문의 여파로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의 觀望期를 거치면 결국 節稅 혹은 資金의 隱匿을 위해 資金이 移動할 것으로 豫想되며 그 시기는 1995년 말과 1996년 초가 될 것으로 豫想된다.

실제 이루어질 資金 移動의 방향과 규모는 개별 시장별 非課稅 혹은 分離課稅商品의 有無, 金融商品別 稅後收益率 水準 등에 따라 資金의 流入 혹은 流出規模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金融資産間 資金 移動은 주로 은행의 CD, 투금·종금사의 CP 등 거

액예금의 비중이 높은 金融商品으로부터 銀行圈의 長期貯蓄, 長期貯蓄性保險, 長期債券, 株式 등으로 資金이 移動할 것으로 展望되나 향후 各 金融機關이 개발할 節稅型 金融商品의 特性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이러한 이동이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金融市場 및 國民經濟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의 移動으로 短期的으로 다음과 같은 問題가 유발될 수도 있다.

첫째, 자금이 代替資産으로의 이동을 피하면서 資金의 短期浮動化 現象이 나타날 것이며 이러한 資金 移動이 급속히 진행될 경우 일부 金融機關의 資金過不足 規模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콜시장 및 債券市場 등 金融市場에서 一時的인 混亂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은 金利自由化·金融自律化·開放化의 進展으로 인한 전반적인 金融環境의 變化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金融市場의 不安定性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시중 자금이 민간의 현금보유로 유출되거나 기업어음, 포지어음, 포지팩토링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의 短期商品으로부터 長期債券 및 長期貯蓄性保險 등 長期商品 혹은 實物市場으로 이동함에 따라 通貨性이 저하되고 시중에 자금부족현상이 나타나 기업, 특히 中小企業의 短期運營資金 調達이 어려워지고 資金調達費用이 上昇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시중의 자금난으로 기업의 은행대출수요가 증가하여 통화증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셋째, 거액자금의 예치비중이 높고 綜合課稅 회피가 곤란한 金融商品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자금유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자사 등 金融機關의 수신기반이 약화되어 이들 金融機關의 金融仲介機能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專門家들에 대한 設問調査의 內容 및 結果를 要

約하면 다음과 같다.

設問調査는 1995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간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部門에 미칠 影響에 대하여 金融機關 勤務者 및 金融部門 專門 研究者들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認識 程度를 調査함으로써 향후 制度 改選을 위한 基礎資料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의 정도에 대하여 應答者의 58.6%가 그 정도가 微微할 것으로 답변하였다. 특히 연구소 및 대학에 근무하는 應答者는 80.0%가 그 影響이 微微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 동안 節稅型 商品에 유입된 자금 중 실제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여 節稅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資金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金融機關 從事者의 77.4%가 節稅型 商品에 流入된 資金 중 40% 미만이 실제로 절세가 필요한 자금이라고 응답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시로 CD는 그 잔액의 41.8%가 이탈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장 심각하게 資金 離脫이 일어날 상품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CP(40.9%), 어음매출(33.6%), CMA(33.4%) 등의 순서로 각 상품잔액 중 자금 이탈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이 자금 중 5조원 내지 10조원이 金融圈 안에서 또는 金融圈 밖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應答者의 比重(35.9%)이 가장 높았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資金移動 時期에 대하여, 全體 應答者의 29.8%가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23.7%가 금년 12월에 자금이 이동할 것을 예상하여, 全體 應答者의 53.5%가 금년 내 資金 移動이 일어날 것으로 응답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資金 流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資金移動處에 대하여 예상 이동 자금 총액 중 각 자금 이동처가 차지하는 예상 유입 비중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들은 평균적으로 總移動資金의

56.6%가 證券市場에 流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長期貯蓄生 保險에는 10.9%, 實物 部分에도 15.6%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취급하는 金融商品에 따라 金融機關의 受信高 및 收益性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應答者들은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肯定的 影響을 받을 金融機關으로 證券會社, 保險社, 投信社를 열거하였으며 그 중 證券會社 및 保險社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否定的 影響을 받을 金融機關으로 單子·宗金, 은행, 상호신용금고 등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에서 短資·綜金 및 銀行에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全體 應答者의 68.6%가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해 金利가 安定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家計의 金融貯蓄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應答者의 58.1%가 금융저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하여 金融機關의 고객들은 金融資産 規模가 露出되는 것(69.7%)을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稅金負擔의 增加(16.7%), 贈與稅 및 相續稅 稅源의 露出(11.6%) 등을 들었다.

金融市場의 혼란, 저축감소 등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否定的 波及效果를 최소화하면서 所得稅制의 衡平性 提高, 金融實名制의 完結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和 金融實名制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

먼저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는 다음과 같은 5가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97년 源泉徵收稅率의 인하여 부합하도록 綜合課稅 對象 基準金額 4천만원을 인하하여야 한다.

둘째, 低所得層의 稅負擔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一定限度の 貯蓄으로부터 발생하는 利子所

得에 대해 源泉徵收을 免除하여 궁극적으로는 비과세하는 非課稅特別計座制度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實物保有債券에 대한 차등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實物保有債券을 金融機關에 매각할 경우 국세청에 개인의 인적사항이 통보되더라도 중간 유통단계의 거래자는 여전히 實物保有를 통해 綜合課稅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實物保有債券에 대하여는 實物保有 期間을 파악하여 35% 정도의 源泉徵收 稅率로 分離課稅하는 方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1996년부터 이자·배당소득이 綜合課稅될 경우 상대적으로 株式 등의 金融資産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므로 金融市場과 資本市場에서 不均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자부분과 양도차익부분을 함께 포함하는 金融所得을 발생시키는 金融商品의 경우 讓渡差益部分이 非課稅됨으로써 상품구성상 왜곡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金融資産 讓渡差益에 대한 課稅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長期 金融商品에 대해서는 별도로 具體的인 課稅方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인 근거조항이 마련된 年分年乘法(income averaging)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해 對象 金融商品의 選定과 함께 年分年乘方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金融實名制는 다음 3가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借名去來의 防止는 金融實名制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다. 借名去來의 本名去來를 촉진하기 위해 인장 대신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擴大하여야 한다. 長期的으로는 署名에 의한 金融去來를 義務化하는 方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金融機關에 대한 監督을 強化해야 한다. 현행 金融實名制下에서 實名制 履行 與否의 點檢은 制度的으로 金融機關의 自體監查機能을 擴大하거나 3개 金融監督機關의 監督을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으로 보장된 監督·檢査機能을 충분히 활용하여 제대로 實名制가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에 앞서 盜名去來의 防止를 위해 金融機關이 고객에게 金融所得을 通報하도록 해야 한다.

金融市場 安定과 貯蓄 增大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政策運用이 필요하다.

첫째, 資金移動 및 流出을 최소화함으로써 金融市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加급적 金融商品間 동일한 經濟的 收益率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制度金融圈 內 金融資産에 대하여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금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불건전한 부문으로의 資金 移動을 차단함으로써 자금을 制度金融圈에 잔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巨視經濟的으로 정책당국은 급격한 긴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의 실시를 삼가고 金融市場의 교란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經濟의 軟着陸을 유도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金融貯蓄의 萎縮을 방지하고 私金融 資金을 制度金融圈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新金融商品의 開發에 전력을 다하고 金融機關의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 參 考 文 獻

- 姜錫勳, 「金融所得 綜合課稅 對象家口數 및 金額推定」, 『月刊經濟』, 大宇經濟研究所, 1994. 10.
- \_\_\_\_\_, 「金融實名制,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資金移動」, 『保證月報』, 信用保證基金, 1995. 9.
- 國稅廳 納稅指導課, 「95 改正稅法의 主要 內容」, 1995.
- 김 군, 『金融實名制 實施와 金融資産所得 綜合課稅 導入 등 貯蓄環境 變化에 따른 貯蓄增大方案 研究』, 貯蓄推進中央委員會, 1994. 1.
- 김장희 · 장광열, 「動向의 焦點: '金融所得 綜合課稅' 來年부터 實施 確定」, 『銀行市場動向』, 國銀經濟研究所, 1995. 4.
- 김정국 · 이만규,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內容과 證券市場에 미치는 影響 分析」, 『證券』, 韓國證券業協會, 1995. 6.
- 노형권 외, 『金融所得 綜合課稅解說』, 三一會計法人, 1995.
- 大宇證券,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에 따른 金融圈 資金 移動規模 推定」, 테마자료, 1995. 7.
- 羅大鎬, 「국내 長期債市場 現況 및 向後 發展展望」, 『KDB 產業經濟』, 韓國產業銀行, 1995. 10.
- 박희일 · 김영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와 銀行의 對應方案」, 『KDB 產業經濟』, 韓國產業銀行, 1995. 8.
- 백흥기, 「稅制 改編에 따른 證市 影響」, 『企業經濟』, 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10.
- 손영기,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와 金融市場」, 『企業經濟』, 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5. 10.
- 안동규 · 윤성욱,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 改編에 따른 波及效果」, 『본

- 드브리프』, 第一經濟研究所, 1995. 9. 20.
- 安鍾範,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經濟的 效果와 檢討課題」, 韓國租稅研究院 內部資料, 1994. 10. 11.
- 안종범 · 정영현 · 박원암 · 심상달, 『金融實名制 實施 1年の 評價와 政策課題』, 研究報告書 94-11, 韓國租稅研究院, 1994. 12.
- 안효원,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 研究調查 95-15, 雙龍經濟研究所, 1995. 8.
- 柳時權 外, 『國稅行政 改革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 12.
- 윤원배 · 김태동,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 이후 金融貯蓄 安定化 및 增大方案』, 貯蓄推進中央委員會, 1995. 5.
- 임영록, 「金融實名制 完決을 위한 金融所得 綜合課稅 實施」, 『나라경제』, 1995. 9.
- 장응수,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分析」, 『三星經濟』, 1995. 10.
- 財務部, 『金融實名制實施 1周年 白書』, 1994. 8.
- 財政經濟院, 「分離課稅되는 債券의 範圍 등」, 報道資料, 1995. 7. 6.
- \_\_\_\_\_, 「金融實名制 2年の 評價와 課題」, 1995. 8.
- \_\_\_\_\_, 「'95年 稅法改正(案)」, 1995. 9. 2.
- \_\_\_\_\_, 「'95年 稅法改正(案)에 대한 問答資料」, 1995. 9. 2.
- \_\_\_\_\_, 「債券 등에 대한 綜合課稅關聯 業務處理要領」, 1995. 9. 30.
- \_\_\_\_\_, 『財政金融統計』, 各號.
- 全國銀行聯合會, 『金融所得 綜合課稅 方案 研究』, 1994. 7.
- 崔 洸, 「金融實名制와 金融所得 綜合課稅: 評價와 政策課題」, 『企業經濟』, 1995. 8.
- 韓國金融研究院, 「私金融實態와 貸金業 制度化 方案」, 公聽會 資料, 1995. 7. 26.
- \_\_\_\_\_, 『최근의 金融市場 動向 및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 金融調查資料 95-09, 1995. 10.
- 韓國銀行,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金融市場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韓國銀行 資金部, 1995. 6.

\_\_\_\_\_, 『資金循環』, 各號.

\_\_\_\_\_, 『通貨金融』, 各號.

\_\_\_\_\_, 『調査統計月報』, 各號.

황석준 · 김종권, 「1995년 産業, 金融, 財政 部門에 시행될 主要政策」,

『月刊經濟』, 1995. 1.

## 附錄 I.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設問調查 結果

### 1.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에 대한 設問紙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영향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1996년부터 도입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설문조사의 주된 목적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귀하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정책 당국의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대응 방안 모색에 대단히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귀하와 귀 금융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5. 10.

한국조세연구원장 최 광

A. 귀하의 신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단지 분류를 위하여 이용되오니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께서는 현재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십니까?

- ① 은행                      ② 단자 및 종금사              ③ 증권사  
 ④ 투신사                      ⑤ 보험사  
 ⑥ 신탁,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저축기관  
 ⑦ 기타 (              )

2. 귀하께서는 해당 기관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3. 귀하의 직급 및 부서는?

- ① 직급 (                      )                      ② 부서 (                      )

B.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관한 설문

1. 귀하께서는 1996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3. 문2)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필요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 ① 이자 소득세 인하로 저축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저축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
- ②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더라도 소액자금의 특성상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워 금융시장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
- ③ 고금융소득자의 경우에 부동산 등 실물부문보다는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
- ④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전 告知效果(announcement effect)로 정작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될 때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
- ⑤ 기타 ( )

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저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기존의 각종 세금우대저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
- ②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만으로 실물자산 선호를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
- ③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소비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
-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급격히 이동할 것이기 때문
- ⑤ 기타 ( )

4.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3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유가증권의 중도 환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



- 1) 주 식 ( )%
  - 2) 채 권 ( )%
  - 3) 신용금고의 정기예수금 ( )%
  - 4)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 )%
  - 5) 5년 이상 장기채권에 운용되는 새로운 금융상품 ( )%
  - 6) 증권투자신탁 ( )%
  - 7) 私債시장 ( )%
  - 8) 부동산 ( )%
  - 9) 귀금속, 서화, 골동품 등 실물자산 ( )%
  - 10) 해외증권, 해외예금 및 해외부동산투자 등을 통한 해외 유출 ( )%
  - 11) 사치성 소비 ( )%
- 
- 합계 100 %

7.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다음 각 금융기관의 수신고 및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 |                         |        | 매우<br>긍정적인<br>영향 | 약간<br>긍정적인<br>영향 | 영향이<br>없다 | 약간<br>부정적인<br>영향 | 매우<br>부정적인<br>영향 |
|-------------------------|--------|------------------|------------------|-----------|------------------|------------------|
| 1) 은행                   | (1) …… | (2) ……           | (3) ……           | (4) ……    | (5)              |                  |
| 2) 단자 및 총금사             | (1) …… | (2) ……           | (3) ……           | (4) ……    | (5)              |                  |
| 3) 증권사                  | (1) …… | (2) ……           | (3) ……           | (4) ……    | (5)              |                  |
| 4) 보험사                  | (1) …… | (2) ……           | (3) ……           | (4) ……    | (5)              |                  |
| 5) 투신사                  | (1) …… | (2) ……           | (3) ……           | (4) ……    | (5)              |                  |
| 6) 신탁, 상호금융,<br>새마을금고 등 | (1) …… | (2) ……           | (3) ……           | (4) ……    | (5)              |                  |
| 7) 기타 금융기관( )           | (1) …… | (2) ……           | (3) ……           | (4) ……    | (5)              |                  |

8.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권 안에서 또는 금융권 밖으로 자금이동이 있다면 언제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①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② 금년 12월
- ③ 내년 초                              ④ 내년 내내 지속적으로

9.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1995년 6월말 현재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규모는 약 425조원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권 안에서 또는 금융권 밖으로 이동하게 될 자금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조원 미만                              ② 5조원 이상 ~ 10조원 미만
- ③ 10조원 이상 ~ 20조원 미만      ④ 20조원 이상 ~ 30조원 미만
- ⑤ 30조원 이상 ~ 50조원 미만      ⑥ 50조원 이상

1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자금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점에는 어떠한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① 일부 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약화
- ②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의 위축
- ③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
- ④ 은행 대출 등의 축소
- ⑤ 기타(                                      )

11. 다음은 현재까지 확정되었거나 계획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의 문제점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점부터 차례로 두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①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인 소액 저축자들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만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그리고 환급불허 문제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 수준(4,000만원)이 부적합하게





- ③ 금융저축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 ④ 금융저축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 ⑤ 모르겠다.

17. 귀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 ① 상당히 받고 있다.                      ② 약간 받고 있다.
- ③ 거의 받고 있지 않다.

18.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고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세금 부담의 증가
- ② 금융자산 규모의 노출
- ③ 증여 및 상속세의 과세 회피의 어려움
- ④ 기타 (                      )

19.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
- ③ 그다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⑤ 모르겠다.

20. 현재 계획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합의를 이 용하거나 채권거래에 중개인이 개입하는 방법 등을 통하면 충분히 종합과세를 회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비실명인 차명이나 도명의 거래가 증

가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①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 ② 약간 증가할 것이다.
- ③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 ④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 ⑤ 모르겠다.

## 2. 設問調査 結果

## 가. 應答者의 身上에 관한 設問

&lt; 附表 I - 1 &gt; 應答者의 勤務機關 및 勤務年數

	응답수	은행	단자 및 종금사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새마을 금고외	연구소
전 체	(201)	31.3	17.4	18.4	6.5	10.0	4.0	12.4
근무기관								
은행	(63)	100.0	0.0	0.0	0.0	0.0	0.0	0.0
단자 및 종금사	(35)	0.0	100.0	0.0	0.0	0.0	0.0	0.0
증권사	(37)	0.0	0.0	100.0	0.0	0.0	0.0	0.0
투신사	(13)	0.0	0.0	0.0	100.0	0.0	0.0	0.0
보험사	(20)	0.0	0.0	0.0	0.0	100.0	0.0	0.0
새마을금고외	(8)	0.0	0.0	0.0	0.0	0.0	100.0	0.0
연구소	(25)	0.0	0.0	0.0	0.0	0.0	0.0	100.0
계	(201)	31.3	17.4	18.4	6.5	10.0	4.0	12.4
근무연수								
5년 미만	(43)	20.9	7.0	25.6	4.7	11.6	0.0	30.2
10년 미만	(94)	25.5	18.1	22.3	9.6	10.6	4.3	9.6
15년 미만	(40)	37.5	30.0	7.5	2.5	12.5	2.5	7.5
15년 이상	(24)	62.5	12.5	8.3	4.2	0.0	12.5	0.0
계	(201)	31.3	17.4	18.4	6.5	10.0	4.0	12.4

나.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에 관한 設問

1. 귀하께서는 1996년부터 실시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 附表 1-2 >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한 認知 精度

	응답 수	정확히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체	(201)	40.3	58.2	1.5
근무기관				
은행	(63)	30.2	69.8	0.0
단자 및 종금사	(35)	28.6	65.7	5.7
증권사	(37)	45.9	54.1	0.0
투신사	(13)	46.2	53.8	0.0
보험사	(20)	20.0	75.0	5.0
새마을금고 외	(8)	50.0	50.0	0.0
연구소	(25)	84.0	16.0	0.0
계	(201)	40.3	58.2	1.5
근무연수				
5년 미만	(43)	34.9	62.8	2.3
10년 미만	(94)	40.4	59.6	0.0
15년 미만	(40)	40.0	55.0	5.0
15년 이상	(24)	50.0	50.0	0.0
계	(201)	40.3	58.2	1.5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인지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0.3%,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8.2%로, 전체의 98.5%가 동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1.5%만이 동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하였다. 종합과세제도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답변은 이하 자료처리과정에서 제거하였다.

연구소(84.0%), 새마을 금고외(50%), 투신사(46.2%), 증권사(45.9%) 등에 근무하는 응답자가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연수가 길수록 정확히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가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 附表 I -3 >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의 必要性에 대한 意見

	응답 수	필요한 조치이다	필요한 조치가 아니다	모르겠다
전체	(198)	84.8	9.6	5.6
근무기관				
은행	(63)	87.3	7.9	4.8
단자 및 종금사	(33)	81.8	18.2	0.0
증권사	(37)	81.1	5.4	13.5
투신사	(13)	76.9	15.4	7.7
보험사	(19)	94.7	5.3	0.0
새마을금고 외	(8)	50.0	37.5	12.5
연구소	(25)	96.0	0.0	4.0
계	(198)	84.8	9.6	5.6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83.2	11.0	5.8
연구직	(25)	96.0	0.0	4.0
계	(198)	84.8	9.6	5.6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84.8%가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하여, 금융기관 종사자나 연구기관 연구자의 대부분이 동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신사(76.9%)나 새마을금고외(50.0%) 종사자의 경우 다른 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동 제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서는 조세형평 등의 실시목적 달성이 어렵다(52.6%)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고, 다음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저축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기 때문에(26.3%)와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이 적합하지 않으므로(21.1%)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근무기관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단자 및 종금사 종사자(50.0%) 및 새마을 금고외 종사자(33.3%)는 다른 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금융기관 및 금융저축자의 불편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으며, 은행(40.5%) 및 증권사(50.0%) 종사자는 현재까지 마련된 방안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다.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影響에 관한 設問

1. 金融소득 綜合과세제도의 실시가 金融시장에 어느 정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判斷하십니까?

- ① 金融시장에 미치는 影響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② 金融시장에 심각한 影響을 미칠 것이다.

< 附表 I -5 > 金融所得 綜合課稅制度 實施의 影響

	응답 수	影響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影響을 미칠 것이다
전 체	(198)	58.6	41.4
근무기관			
은행	(63)	50.8	49.2
단자 및 宗금사	(33)	78.8	21.2
증권사	(37)	59.5	40.5
투신사	(13)	46.2	53.8
보험사	(19)	31.6	68.4
새마을금고 외	(8)	50.0	50.0
연구소	(25)	80.0	20.0
계	(198)	58.6	41.4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55.5	44.5
연구직	(25)	80.0	20.0
계	(198)	58.6	41.4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실시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전체의 58.6%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 반면, 41.4%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기관별로 보면 은행종사자의 50.8%, 단자 및 종금사 종사자의 78.8% 그리고 연구소 종사자의 80.0%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 보험사 종사자의 68.4%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 ① 이자 소득세 인하로 저축 유인이 강화되어 금융저축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
- ② 세금우대저축이 없어지더라도 소액자금의 특성상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워 금융시장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
- ③ 고금융소득자의 경우에 부동산 등 실물부문보다는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
- ④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한 사전 告知效果(announcement effect)로 정작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실시될 때에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
- ⑤ 기타 ( )

< 附表 I - 6 > 金融市場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고 判斷한 理由

	응답수	금융저축이 늘어날 수 도있기때 문에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워 금융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물부문보 다는주식 및채권시장 에 집중되 기때문에	고지효과로 경제에미 치는영향 이미미하 기때문에	기 타
전 체	(116)	6.0	26.7	25.0	40.5	1.8
근무기관						
은행	(32)	6.3	31.3	25.0	37.5	0.0
단자 및 종금사	(26)	3.8	26.9	23.1	42.3	3.8
증권사	(22)	4.5	18.2	31.8	40.9	4.5
투신사	(6)	0.0	16.7	50.0	33.3	0.0
보험사	(6)	16.7	16.7	0.0	0.0	0.0
새마을금고 외	(4)	0.0	100.0	0.0	0.0	0.0
연구소	(20)	10.0	20.0	25.0	40.5	1.8
계	(116)	6.0	26.7	25.0	40.5	1.8

< 附表 I - 6 >의 繼續

	응답수	금융저축이 늘어날 수 도있기 때 문에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워 금융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실물부문보 다는주식 및채권시장 에 집중되 기 때문에	고지효과로 경제에미 치는영향 이 미미하 기 때문에	기 타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96)	5.2	28.1	25.0	39.6	2.0
연구직	(20)	10.0	20.0	25.0	45.0	0.0
계	(116)	6.0	26.7	25.0	40.5	1.8

동 제도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고지효과(40.5%)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대체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26.7%), 실물보다는 주식 및 채권시장에 자금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25.0%)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차명예금을 통한 거래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므로 및 거액예금주의 경우 안정성을 위주로 한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이라 판단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저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기존의 각종 세금우대저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
- ②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만으로 실물자산 선호를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
- ③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소비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
- ④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급격히 이동할 것이기 때문
- ⑤ 기타 ( )

< 附表 1-7 > 金融市場에 深刻한 影響을 미치리라고 判斷한 理由

	응답 수	저축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	실물자산 선호를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렵기 때문	소비를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	금융상품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급격히 이동하기 때문	기타
전체	(82)	3.7	26.8	3.7	62.2	3.6
근무기관						
은행	(31)	3.2	32.3	3.2	61.3	0.0
단자 및 종금사	(7)	0.0	57.1	14.3	28.6	0.0
증권사	(15)	6.7	6.7	0.0	80.0	6.7
투신사	(7)	0.0	42.9	0.0	42.9	14.3
보험사	(13)	0.0	30.8	0.0	69.2	0.0
새마을금고 외	(4)	25.0	0.0	25.0	50.0	0.0
연구소	(5)	0.0	0.0	0.0	80.0	20.0
계	(82)	3.7	26.8	3.7	62.2	3.6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77)	3.9	28.6	3.9	61.0	2.6
연구직	(5)	0.0	0.0	0.0	80.0	20.0
계	(82)	3.7	26.8	3.7	62.2	3.6

동 제도가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금융상품간의 자금이동(62.2%)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실물자산 선호(26.8%)를 들었다.

4. 정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3만 1,000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유가증권의 중도 환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 결정되기 이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던 채권, CD 등 유가증권이나 특정 금전신탁 등 절세형 금융상품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귀하의 판단에 이들 자금 중 실제로 절세가 필요한 고액 금융소득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었습니까?

- ① 20% 미만
- ② 20% 이상 ~ 40% 미만
- ③ 40% 이상 ~ 60% 미만
- ④ 60% 이상 ~ 80% 미만
- ⑤ 80% 이상

<附表 I - 8> 金融商品에 流入되는 資金中 節稅가 必要한 高額金融所得者의 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체	(197)	47.2	28.4	8.6	7.6	7.6	0.5
근무기관							
은행	(62)	51.6	21.0	8.1	12.9	4.8	1.6
단자 및 증금사	(33)	39.4	39.4	9.1	3.0	9.1	0.0
증권사	(37)	54.1	24.3	8.1	8.1	5.4	0.0
투신사	(13)	30.8	38.5	7.7	0.0	23.1	0.0
보험사	(19)	36.8	47.4	5.3	5.3	5.3	0.0
새마을금고 외	(8)	87.5	12.5	0.0	0.0	0.0	0.0
연구소	(25)	40.0	24.0	16.0	8.0	12.0	0.0
계	(197)	47.2	28.4	8.6	7.6	7.6	0.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2)	48.3	29.1	7.6	7.6	7.0	0.6
연구직	(25)	40.0	24.0	16.0	8.0	12.0	0.0
계	(197)	47.2	28.4	8.6	7.6	7.6	0.5

절세형 상품에 유입된 자금 중 실제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하여 절세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20% 미만(47.2%)이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0% 이상 40% 미만(28.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즉 전체 응답자의 75.6%가 절세형 상품에 유입된 자금 중 40% 미만이 실제로 절세가 필요한 자금이라고 보았다.

투신사의 경우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23.1%로서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으며, 은행, 증권, 새마을 금고외 등은 20%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제일 높은 반면, 투신사와 보험사의 경우 20% 이상 40% 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5. 다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자금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금융상품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금융상품의 현재 잔액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이 이탈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1) 은행의 저축성 예금	(1) ····	(2) ····	(3) ····	(4) ····	(5)
2) 은행의 금전신탁	(1) ····	(2) ····	(3) ····	(4) ····	(5)
3) 어음매출	(1) ····	(2) ····	(3) ····	(4) ····	(5)
4) CD	(1) ····	(2) ····	(3) ····	(4) ····	(5)
5) CP	(1) ····	(2) ····	(3) ····	(4) ····	(5)
6) CMA	(1) ····	(2) ····	(3) ····	(4) ····	(5)
7) 공사채형 수익증권	(1) ····	(2) ····	(3) ····	(4) ····	(5)
8) 만기 5년 미만 채권	(1) ····	(2) ····	(3) ····	(4) ····	(5)
9) 기타(            )	(1) ····	(2) ····	(3) ····	(4) ····	(5)

< 附表 I-9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銀行 貯蓄性 預金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모르겠다.
전 체	(198)	69.7	22.2	4.5	2.0	1.5
근무기관						
은행	(63)	74.6	19.0	3.2	3.2	0.0
단자 및 종금사	(33)	72.7	24.2	0.0	0.0	3.0
증권사	(37)	67.6	27.0	2.7	2.7	0.0
투신사	(13)	61.5	15.4	7.7	0.0	15.4
보험사	(19)	52.6	31.6	15.8	0.0	0.0
새마을금고 외	(8)	75.0	25.0	0.0	0.0	0.0
연구소	(25)	72.0	16.0	8.0	4.0	0.0
계	(198)	69.7	22.2	4.5	2.0	1.5

< 附表 I -9 >의 繼續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모르겠다.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69.4	23.1	4.0	1.7	1.7
연구직	(25)	72.0	16.0	8.0	4.0	0.0
계	(198)	69.7	22.2	4.5	2.0	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인한 은행저축성예금이 이탈비중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는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고, 20% 이상 40% 미만이라는 응답이 22.2%로 두번째로 많았다.

은행 종사자의 응답만을 보면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74.6%, 20% 이상 40% 미만이라는 응답이 19.0%로 나타나, 은행권 종사자들이 다른 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은행저축성예금의 자금이탈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 附表 I - 10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銀行 金錢信託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 체	(198)	34.8	37.9	15.7	8.1	3.0	0.5
근무기관							
은행	(63)	25.4	46.0	15.9	7.9	4.8	0.0
단자 및 종금사	(33)	45.5	36.4	6.1	6.1	3.0	3.0
증권사	(37)	29.7	32.4	21.6	16.2	0.0	0.0
투신사	(13)	23.1	38.5	15.4	7.7	15.4	0.0
보험사	(19)	26.3	36.8	31.6	5.3	0.0	0.0
새마을금고 외	(8)	37.5	50.0	12.5	0.0	0.0	0.0
연구소	(25)	64.0	24.0	8.0	4.0	0.0	0.0
계	(198)	34.8	37.9	15.7	8.1	3.0	0.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30.6	39.9	16.8	8.7	3.5	0.6
연구직	(25)	64.0	24.0	8.0	4.0	0.0	0.0
계	(197)	34.8	37.9	15.7	8.1	3.0	0.5

은행 금전신탁의 이탈비중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의 37.9%가 금전신탁의 20% 이상 40% 미만인 이탈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다음은 2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34.8%를 차지하였다. 은행권 종사자의 설문결과를 보면 2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25.4%, 20% 이상 4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하여, 은행 저축성예금과는 달리 타 금융기관에 비해 은행권 종사자들이 더욱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 附表 I - 11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어음賣出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 체	(198)	24.7	41.4	20.7	8.1	3.0	2.0
근무기관							
은행	(63)	17.5	44.4	25.4	7.9	1.6	3.2
단자 및 종금사	(33)	36.4	42.4	6.1	9.1	6.1	0.0
증권사	(37)	21.6	29.7	32.4	13.5	2.7	0.0
투신사	(13)	7.7	38.5	46.2	0.0	7.7	0.0
보험사	(19)	15.8	52.6	26.3	0.0	0.0	5.3
새마을금고 외	(8)	12.5	75.0	0.0	0.0	0.0	12.5
연구소	(25)	52.0	32.0	0.0	12.0	4.0	0.0
계	(198)	24.7	41.4	20.7	8.1	3.0	2.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0.8	42.8	23.7	7.5	2.9	2.3
연구직	(25)	52.0	32.0	0.0	12.0	4.0	0.0
계	(198)	24.7	41.4	20.7	8.1	3.0	2.0

어음매출의 이탈비중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41.4%가 20% 이상 40% 미만인 이탈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24.7%를 차지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증권사와 투신사 종사자의 경우 40% 이상 6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2.4%와 46.2%를 나타내어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내었고, 연구소 종사자의 경우 2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52%를 차지하여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만을 볼 때에는 40% 이상 6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23.7%를 차지하여 두번째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 附表 I - 12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CD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체	(198)	15.2	34.8	28.3	14.6	6.1	1.0
근무기관							
은행	(63)	11.1	36.5	33.3	11.1	7.9	0.0
단자 및 종금사	(33)	24.2	42.4	18.2	6.1	6.1	3.0
증권사	(37)	16.2	21.6	35.1	21.6	5.4	0.0
투신사	(13)	0.0	30.8	46.2	15.4	7.7	0.0
보험사	(19)	10.5	26.3	26.3	26.3	10.5	0.0
새마을금고 외	(8)	12.5	50.0	0.0	25.0	0.0	12.5
연구소	(25)	24.0	44.0	20.0	12.0	0.0	0.0
계	(198)	15.2	34.8	28.3	14.6	6.1	1.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13.9	33.5	29.5	15.0	6.9	1.2
연구직	(25)	24.0	44.0	20.0	12.0	0.0	0.0
계	(198)	15.2	34.8	28.3	14.6	6.1	1.0

CD의 자금이탈규모에 대하여는 20% 이상 4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34.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40% 이상 60% 미만의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28.3%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증권사와 보험사의 경우 20% 이상 4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과 60% 이상 8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드러나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 附表 I - 13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CP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 체	(198)	16.7	34.3	27.3	14.6	5.6	1.5
근무기관							
은행	(63)	7.9	36.5	41.3	7.9	4.8	1.6
단자 및 종금사	(33)	24.2	48.5	15.2	6.1	6.1	0.0
증권사	(37)	21.6	18.9	27.0	24.3	8.1	0.0
투신사	(13)	7.7	7.7	53.8	15.4	15.4	0.0
보험사	(19)	10.5	36.8	15.8	26.3	5.3	5.3
새마을금고 외	(8)	25.0	37.5	0.0	25.0	0.0	12.5
연구소	(25)	28.0	44.0	12.0	16.0	0.0	0.0
계	(198)	16.7	34.3	27.3	14.6	5.6	1.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15.0	32.9	29.5	14.5	6.4	1.7
연구직	(25)	28.0	44.0	12.0	16.0	0.0	0.0
계	(198)	16.7	34.3	27.3	14.6	5.6	1.5

CP의 이탈비중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20% 이상 40% 미만(34.3%), 40% 이상 60% 미만(27.3%), 20% 미만(16.7%)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 증권, 투신사 종사자들은 40% 이상 60% 미만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증권사와 투신사의 경우에는 60% 이상 80% 미만이라는 응답이 2위를 차지하여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비해 단자 및 종금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외 및 연구소 종사자들은 20% 이상 4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2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두번째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 附表 I - 14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CMA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체	(197)	31.0	30.5	24.4	9.6	2.5	2.0
근무기관							
은행	(63)	19.0	36.5	31.7	4.8	4.8	3.2
단자 및 종금사	(33)	60.6	27.3	9.1	3.0	0.0	0.0
증권사	(37)	16.2	29.7	37.8	13.5	2.7	0.0
투신사	(13)	30.8	30.8	38.5	0.0	0.0	0.0
보험사	(19)	10.5	36.8	21.1	21.1	5.3	5.3
새마을금고 외	(8)	50.0	12.5	0.0	25.0	0.0	12.5
연구소	(24)	54.2	20.8	8.3	16.7	0.0	0.0
계	(197)	31.0	30.5	24.4	9.6	2.5	2.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7.7	31.8	26.6	8.7	2.9	2.3
연구직	(24)	54.2	20.8	8.3	16.7	0.0	0.0
계	(197)	31.0	30.5	24.4	9.6	2.5	2.0

CMA에 대하여는 2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1.3%로 1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 이상 4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30.5%를 차지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각 기관마다 CMA의 이탈비중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증권, 투신, 보험사 종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 단자 및 종금, 새마을금고 외, 연구소 종사자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특히 CMA를 직접 취급하고 있는 단자 및 종금사 종사자만을 살펴보게 되면, 20% 미만이라는 응답이 60.6%, 20% 이상 40% 미만이라는 응답이 27.3%를 차지하는 등 전 금융기관 중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 附表 1 - 15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公社債型 受益證券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 체	(196)	46.4	28.1	17.9	4.6	1.0	2.0
근무기관							
은행	(62)	35.5	35.5	19.4	4.8	1.6	3.2
단자 및 증금사	(33)	54.5	30.3	9.1	0.0	3.0	3.0
증권사	(37)	48.6	21.6	27.0	2.7	0.0	0.0
투신사	(13)	61.5	15.4	23.1	0.0	0.0	0.0
보험사	(19)	21.1	31.6	31.6	15.8	0.0	0.0
새마을금고 외	(8)	37.5	25.0	12.5	12.5	0.0	12.5
연구소	(24)	75.0	20.8	0.0	4.2	0.0	0.0
계	(196)	46.4	28.1	17.9	4.6	1.0	2.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2)	42.4	29.1	20.3	4.7	1.2	2.3
연구직	(24)	75.0	20.8	0.0	4.2	0.0	0.0
계	(197)	46.4	28.1	17.9	4.6	1.0	2.0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이탈비중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46.4%가 2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8.1%의 응답자가 20% 이상 4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단자 및 증금사, 증권사, 투신사, 새마을금고 외 및 연구소 종사자의 응답 중에서는 2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하여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나, 보험사는 20% 이상 4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과 40% 이상 6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높게 나타나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증권사나 투신사 종사자들의 응답에서는 40% 이상 6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2위로 나타나 이들 기관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附表 I - 16 > 綜合課稅의 實施로 豫想되는 滿期5年 미만 債券의 離脫比重

	응답 수	20% 미만	20%~39%	40%~59%	60%~79%	80% 이상	모르겠다
전 체	(198)	38.9	35.4	18.2	5.6	1.0	1.0
근무기관							
은행	(63)	30.2	46.0	20.6	0.0	1.6	1.6
단자 및 종금사	(33)	45.5	33.3	15.2	3.0	0.0	3.0
증권사	(37)	43.2	27.0	21.6	8.1	0.0	0.0
투신사	(13)	38.5	46.2	15.4	0.0	0.0	0.0
보험사	(19)	0.0	47.4	15.8	31.6	5.3	0.0
새마을금고 외	(8)	50.0	12.5	25.0	12.5	0.0	0.0
연구소	(25)	72.0	16.0	12.0	0.0	0.0	0.0
계	(198)	38.9	35.4	18.2	5.6	1.0	1.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34.1	38.2	19.1	6.4	1.2	1.2
연구직	(25)	72.0	16.0	12.0	0.0	0.0	0.0
계	(198)	38.9	35.4	18.2	5.6	1.0	1.0

만기 5년 미만의 채권에 대하여는 전체응답자의 38.9%가 20% 미만 이 이탈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 이상 4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35.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기관 별로 보면, 단자 및 종금사, 증권사, 새마을금고 외 및 연구소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2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은행, 투신사, 보험사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20% 이상 40% 미만일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이한 것은 새마을금고 외 종사자들은 25%가 40% 이상 6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보험사 종사자의 경우 31.6%가 60% 이상 8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고 보아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내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경우 20% 이상 40% 미만인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38.2%로 1위를 차지한 반면, 연구소 종사자들은 20% 미만이 이탈할 것이라는 응답이 72.0%로 1위를 차지하여, 연구소 종사자들에 비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이탈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다음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자금 이동이 있다면 자금 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금 이동처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문5)의 금융상품에서 이탈한 총금액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음의 각 자금이동 대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   |       |
|---|-------|
| 1) 주식                                   | ( )%  |
| 2) 채권                                   | ( )%  |
| 3) 신용금고의 정기예수금                          | ( )%  |
| 4)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 ( )%  |
| 5) 5년 이상 장기채권에 운용되는 새로운 금융상품            | ( )%  |
| 6) 증권투자신탁                               | ( )%  |
| 7) 私債시장                                 | ( )%  |
| 8) 부동산                                  | ( )%  |
| 9) 귀금속, 서화, 골동품등 실물자산                   | ( )%  |
| 10) 해외증권, 해외예금 및 해외부동산투자 등을 통한<br>해외 유출 | ( )%  |
| 11) 사치성 소비                              | ( )%  |
| 합계                                      | 100 % |

< 附表 I - 17 > 離脫 資金 總額 中 株式 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60%	61% 이상	평균 비율
전 체	(198)	26.3	35.4	22.7	9.6	5.1	0.5	0.5	22.8
근무기관									
은행	(63)	15.9	41.3	27.0	7.9	6.3	0.0	1.6	24.9
단자 및 종금사	(33)	27.3	33.3	21.2	15.2	0.0	3.0	0.0	23.0
증권사	(37)	37.8	27.0	24.3	10.8	0.0	0.0	0.0	19.5
투신사	(13)	38.5	30.8	15.4	7.7	7.7	0.0	0.0	21.2
보험사	(19)	21.1	42.1	15.8	5.3	15.8	0.0	0.0	24.2
새마을금고 외	(8)	25.0	50.0	12.5	0.0	12.5	0.0	0.0	21.9
연구소	(25)	32.0	28.0	24.0	12.0	4.0	0.0	0.0	22.0
계	(198)	26.3	35.4	22.7	9.6	5.1	0.5	0.5	22.8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5.4	36.4	22.5	9.2	5.2	0.6	0.6	22.9
연구직	(25)	32.0	24.0	12.0	12.0	4.0	0.0	0.0	22.0
계	(198)	26.3	35.4	22.7	9.6	5.1	0.5	0.5	22.8

이탈 자금 총액 중 주식으로의 이동비율에 대한 질문에 평균적으로 전체 자금 중 22.8%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하였다. 특이한 것을 타 금융기관에 비해 주식을 취급하는 증권사는 평균적으로 19.5%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낮은 예상을 보여주었다.

< 附表 I - 18 > 離脫 資金 總額 中 債券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평균 비율
전 체	(198)	53.0	30.8	12.1	3.0	1.0	14.1
근무기관							
은행	(63)	54.0	25.4	17.5	1.6	1.6	14.4
단자 및 종금사	(33)	39.4	48.5	9.1	3.0	0.0	15.2
증권사	(37)	51.4	24.3	18.9	5.4	0.0	15.9
투신사	(13)	61.5	15.4	7.7	15.4	0.0	14.6
보험사	(19)	73.7	26.3	0.0	0.0	0.0	6.8
새마을금고 외	(8)	50.0	50.0	0.0	0.0	0.0	11.1
연구소	(25)	52.0	36.0	8.0	0.0	4.0	15.2
계	(198)	53.0	30.8	12.1	3.0	1.0	14.1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53.2	30.1	12.7	3.5	0.6	13.9
연구직	(25)	52.0	36.0	8.0	0.0	4.0	15.2
계	(198)	53.0	30.8	12.1	3.0	1.0	14.1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이탈 자금 총액 중 14.1%가 채권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보았다. 특이한 것은 보험사의 경우 6.8%만이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채권에 유입되는 자금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附表 I - 19 > 離脫 資金 總額 中 信用金庫의 定期豫受金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수	10% 이하	11~20%	21~30%	평균비율
전 체	(198)	97.5	2.0	0.5	3.0
근무기관					
은행	(63)	98.4	1.6	0.0	2.5
단자 및 종금사	(33)	93.9	6.1	0.0	3.0
증권사	(37)	100.0	0.0	0.0	3.1
투신사	(13)	100.0	0.0	0.0	2.0
보험사	(19)	100.0	0.0	0.0	2.2
새마을금고 외	(8)	75.0	12.5	12.5	9.5
연구소	(25)	100.0	0.0	0.0	3.2
계	(198)	97.5	2.0	0.5	3.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97.1	2.3	0.6	3.0
연구직	(25)	100.0	0.0	0.0	3.2
계	(198)	97.5	2.0	0.5	3.0

이탈 자금 총액 중 3.0%가 정기예수금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다만 새마을금고 외 종사자들은 9.5%가 이동할 것이라고 보아 다른 금융기관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예상하였다.

< 附表 I -20 > 離脫 資金 總額 中 長期 貯蓄性 保險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평균 비율
전 체	(198)	70.7	21.2	6.6	1.0	0.5	10.9
근무기관							
은행	(63)	76.2	19.0	4.8	0.0	0.0	8.8
단자 및 종금사	(33)	78.8	15.2	3.0	3.0	0.0	10.4
증권사	(37)	64.9	27.0	8.1	0.0	0.0	11.7
투신사	(13)	61.5	23.1	7.7	7.7	0.0	13.3
보험사	(19)	52.6	21.1	21.1	0.0	5.3	15.3
새마을금고 외	(8)	75.0	25.0	0.0	0.0	0.0	9.6
연구소	(25)	72.0	24.0	4.0	0.0	0.0	11.1
계	(198)	70.7	21.2	6.6	1.0	0.5	10.9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70.5	20.8	6.9	1.2	0.6	10.8
연구직	(25)	72.0	24.0	4.0	0.0	0.0	11.1
계	(198)	70.7	21.2	6.6	1.0	0.5	10.9

장기저축성보험으로의 유입정도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평균 이탈자 금 중 10.9%가 장기저축성보험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험사 종사자(15.3%)와 투신사 종사자(13.3%)는 유입폭이 클 것으로 본 반면, 은행 종사자(8.8%)는 작을 것으로 보았다.

< 附表 I -21 > 離脫 資金 總額 中 長期債券 運用 商品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평균 비율
전체	(198)	59.6	22.7	14.6	2.5	-0.5	13.3
근무기관							
은행	(63)	65.1	22.2	7.9	3.2	1.6	12.6
단자 및 종금사	(33)	57.6	24.2	15.2	3.0	0.0	12.5
증권사	(37)	48.6	21.6	24.3	5.4	0.0	16.3
투신사	(13)	69.2	0.0	30.8	0.0	0.0	13.5
보험사	(19)	78.9	10.5	10.5	0.0	0.0	8.7
새마을금고 외	(8)	37.5	62.5	0.0	0.0	0.0	12.5
연구소	(25)	52.0	32.0	16.0	0.0	0.0	15.1
계	(198)	59.6	22.7	14.6	2.5	0.5	13.3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60.7	21.4	14.5	2.9	0.6	13.0
연구직	(25)	52.0	32.0	16.0	0.0	0.0	15.1
계	(198)	59.6	22.7	14.6	2.5	0.5	13.3

장기채권 운용상품으로의 이동비율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평균 이탈자금의 13.3%가 장기채권 운용상품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응답한 상품 중 주식(23%), 채권(14%)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비율로서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방침에 따라 이 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예상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관별로 보면 증권사 종사자(16.3%)와 연구소 종사자(15.1%)들은 상대적으로 유입폭이 클 것으로 본 반면, 보험사 종사자(8.7%)들은 타 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유입폭을 현저하게 낮게 예상하였다.

< 附表 I -22 > 離脫 資金 總額 中 證券投資信託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평균 비율
전 체	(198)	88.9	9.1	1.0	0.5	0.5	6.4
근무기관							
은행	(63)	85.7	11.1	1.6	0.0	1.6	6.0
단자 및 종금사	(33)	87.9	9.1	3.0	0.0	0.0	6.3
증권사	(37)	94.6	2.7	0.0	2.7	0.0	7.0
투신사	(13)	92.3	7.7	0.0	0.0	0.0	7.4
보험사	(19)	100.0	0.0	0.0	0.0	0.0	3.9
새마을금고 외	(8)	75.0	25.0	0.0	0.0	0.0	7.8
연구소	(25)	84.0	16.0	0.0	0.0	0.0	7.2
계	(198)	88.9	9.1	1.0	0.5	0.5	6.4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89.6	8.1	1.2	0.6	0.6	6.2
연구직	(25)	84.0	16.0	0.0	0.0	0.0	7.2
계	(198)	88.9	9.1	1.0	0.5	0.5	6.4

응답자들은 평균 이탈자금 총액의 6.4%가 증권투자신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보험사 종사자들은 3.9%만이 이동할 것이라고 보아 타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이동비중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보험사 이외의 기관들은 대체로 6.0%에서 7.8%의 이동을 예상하였다.

< 附表 I - 23 > 離脫資金 總額 중 私債 市場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평균 비율
전 체	(198)	86.9	9.1	3.0	0.5	0.5	7.0
근무기관							
은행	(63)	87.3	7.9	1.6	1.6	1.6	7.1
단자 및 종금사	(33)	93.9	6.1	0.0	0.0	0.0	5.5
증권사	(37)	91.9	5.4	2.7	0.0	0.0	5.7
투신사	(13)	92.3	0.0	7.7	0.0	0.0	6.5
보험사	(19)	52.6	36.8	10.5	0.0	0.0	12.3
새마을금고 외	(8)	100.0	0.0	0.0	0.0	0.0	4.6
연구소	(25)	88.0	8.0	4.0	0.0	0.0	8.0
계	(198)	86.9	9.1	3.0	0.5	0.5	7.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86.7	9.2	2.9	0.6	0.6	6.9
연구직	(25)	88.0	8.0	4.0	0.0	0.0	8.0
계	(198)	86.9	9.1	3.0	0.5	0.5	7.0

응답자들은 전체 이탈자금 중 7.0%가 사채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기관별로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5.5%에서 8.0%가 이동할 것이라 응답하였는데, 보험사 종사자는 12.3%가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 이동할 것이라 예상한 반면, 새마을금고 외 종사자들은 4.6%가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타기관에 비해 이동폭을 낮게 보았다.

< 附表 I -24 > 離脫 資金 總額 中 不動産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31%~40%	41%~50%	평균 비율
전 체	(198)	69.7	21.2	7.6	0.5	1.0	11.8
근무기관							
은행	(63)	66.7	17.5	12.7	1.6	1.6	13.3
단자 및 증금사	(33)	66.7	24.2	9.1	0.0	0.0	12.5
증권사	(37)	75.7	21.6	2.7	0.0	0.0	10.5
투신사	(13)	53.8	38.5	7.7	0.0	0.0	11.8
보험사	(19)	47.4	42.1	5.3	0.0	5.3	15.3
새마을금고 외	(8)	75.0	12.5	12.5	0.0	0.0	9.1
연구소	(25)	96.0	4.0	0.0	0.0	0.0	6.8
계	(198)	69.7	21.2	7.6	0.5	1.0	11.8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65.9	23.7	8.7	0.6	1.2	12.5
연구직	(25)	96.0	4.0	0.0	0.0	0.0	6.8
계	(198)	69.7	21.2	7.6	0.5	1.0	11.8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이탈 자금 총액 중 11.8%가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비율은 주식(23%), 채권(14%), 5년이상 장기채에 운용되는 새로운 상품(13%)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비율로서, 응답자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금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 중 실물자산 선호를 두번째로 중요한 이유로 들었던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이 10.5%에서 13.3%가 이동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는데, 새마을금고 외 종사자들은 9.1%, 연구소 종사자들은 6.8%만이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폭의 이동을 예상하였다. 연구소 종사자들의 응답(6.8%)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응답(12.5%)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 附表 I - 25 > 離脫 資金 總額 中 골동품 등의 實物資產으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평균 비율
전 체	(198)	95.5	4.5	3.8
근무기관				
은행	(63)	92.1	7.9	3.8
단자 및 종금사	(33)	97.0	3.0	4.2
증권사	(37)	97.3	2.7	3.1
투신사	(13)	100.0	0.0	2.8
보험사	(19)	94.7	5.3	5.3
새마을금고 외	(8)	87.5	12.5	5.3
연구소	(25)	100.0	0.0	3.4
계	(198)	95.5	4.5	3.8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94.8	5.2	3.9
연구직	(25)	100.0	0.0	3.4
계	(198)	95.5	4.5	3.8

골동품 등의 실물자산으로의 이동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총이탈자금 중 3.8%가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탈이 예상되는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비해 실물자산으로의 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附表 I -26 > 離脫 資金 總額 中 海外 流出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평균 비율
전 체	(198)	97.5	2.5	3.3
근무기관				
은행	(63)	98.4	1.6	2.8
단자 및 종금사	(33)	97.0	3.0	3.6
증권사	(37)	100.0	0.0	3.4
투신사	(13)	100.0	0.0	3.9
보험사	(19)	94.7	5.3	2.9
새마을금고 외	(8)	75.0	25.0	5.8
연구소	(25)	100.0	0.0	3.4
계	(198)	97.5	2.5	3.3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97.1	2.9	3.3
연구직	(25)	100.0	0.0	3.4
계	(198)	97.5	2.5	3.3

해외 유출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총이탈자금 중 3.3%가 유출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탈이 예상되는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비해 해외유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 附表 I -27 > 離脫 資金 總額 中 奢侈性 消費로의 移動 比率

	응답 수	10% 이하	11~20%	21~30%	평균비율
전 체	(198)	95.5	4.0	0.5	3.8
근무기관					
은행	(63)	93.7	6.3	0.0	3.8
단자 및 증금사	(33)	93.9	6.1	0.0	3.8
증권사	(37)	94.6	5.4	0.0	3.9
투신사	(13)	100.0	0.0	0.0	3.0
보험사	(19)	94.7	0.0	5.3	2.9
새마을금고 외	(8)	100.0	0.0	0.0	2.9
연구소	(25)	100.0	0.0	0.0	4.7
계	(198)	95.5	4.0	0.5	3.8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94.8	4.6	0.6	3.6
연구직	(25)	100.0	0.0	0.0	4.7
계	(198)	95.5	4.0	0.5	3.8

사치성 소비로의 이동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총이탈자금 중 3.8%가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이탈이 예상되는 다른 금융상품 및 부동산에 비해 사치성 소비로의 이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7.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다음 각 금융기관의 수신고 및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1) 은행	(1) ·····	(2) ·····	(3) ·····	(4) ·····	(5)
2) 단자 및 증금사	(1) ·····	(2) ·····	(3) ·····	(4) ·····	(5)
3) 증권사	(1) ·····	(2) ·····	(3) ·····	(4) ·····	(5)
4) 보험사	(1) ·····	(2) ·····	(3) ·····	(4) ·····	(5)
5) 투신사	(1) ·····	(2) ·····	(3) ·····	(4) ·····	(5)
6) 신탁,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1) ·····	(2) ·····	(3) ·····	(4) ·····	(5)
7) 기타 금융기관 ( )	(1) ·····	(2) ·····	(3) ·····	(4) ·····	(5)

< 附表 I - 28 >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銀行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전 체	(198)	2.0	6.6	16.1	67.7	7.6	3.7
근무기관							
은행	(63)	1.6	1.6	9.5	74.6	12.7	4.0
단자 및 증금사	(33)	6.1	18.2	21.2	51.5	3.0	3.3
증권사	(37)	0.0	8.1	18.9	70.3	2.7	3.7
투신사	(13)	0.0	7.7	0.0	92.3	0.0	3.8
보험사	(19)	5.3	5.3	15.8	68.4	5.3	3.6
새마을금고 외	(8)	0.0	12.5	37.5	50.0	0.0	3.4
연구소	(25)	0.0	0.0	24.0	60.0	16.0	3.9
계	(198)	2.0	6.6	16.2	67.7	7.6	3.7

&lt; 附表 I -28 &gt;의 繼續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평균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3	7.5	15.0	68.8	6.4	3.7
연구직	(25)	0.0	0.0	24.0	60.0	16.0	3.9
계	(198)	2.0	6.6	16.2	67.7	7.6	3.7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의 67.7%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16.2%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로는 3.7이 나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에 가까웠다. 은행 종사자의 응답을 보면 평균점수가 4.0이 나와 타 금융기관보다 은행 종사자가 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저축성 예금, 금전신탁, CD 등에 예치된 거액자금의 일부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은행권의 수신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附表 I -29>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短資社 및 綜金社의 收益에 미치는 影響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평균
전 체	(198)	2.0	6.6	9.1	53.5	28.8	4.0
근무기관							
은행	(63)	1.6	6.3	11.1	55.6	25.4	4.0
단자 및 종금사	(33)	0.0	3.0	9.1	63.6	24.2	4.1
증권사	(37)	5.4	2.7	8.1	51.4	32.4	4.0
투신사	(13)	0.0	7.7	7.7	38.5	46.2	4.2
보험사	(19)	5.3	15.8	10.5	52.6	15.8	3.6
새마을금고 외	(8)	0.0	25.0	12.5	62.5	0.0	3.4
연구소	(25)	0.0	4.0	4.0	44.0	48.0	4.4
계	(198)	2.0	6.6	9.1	53.5	28.8	4.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3	6.9	9.8	54.9	26.0	4.0
연구직	(25)	0.0	4.0	4.0	44.0	48.0	4.4
계	(198)	2.0	6.6	9.1	53.5	28.8	4.0

단자 및 종금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3.5%가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28.8%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는 4.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든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동 제도의 실시로 단자 및 종금이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는 매출어음, CMA, 표지 팩토링 어음 등으로부터 자금 인출이 일어나 자금증개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附表 I -30>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證券社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모르 겠다	평균
전 체	(198)	29.3	59.1	4.5	6.1	0.5	0.5	1.0
근무기관								
은행	(63)	28.6	58.7	4.8	6.3	1.6	0.0	1.9
단자 및 종금사	(33)	27.3	54.5	9.1	6.1	0.0	3.0	1.9
증권사	(37)	21.6	70.3	0.0	8.1	0.0	0.0	1.9
투신사	(13)	38.5	53.8	7.7	0.0	0.0	0.0	1.7
보험사	(19)	26.3	63.2	5.3	5.3	0.0	0.0	1.9
새마을금고 외	(8)	12.5	50.0	12.5	25.0	0.0	0.0	2.5
연구소	(25)	48.0	52.0	0.0	0.0	0.0	0.0	1.5
계	(198)	29.3	59.1	4.5	6.1	0.5	0.5	1.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6.6	60.1	5.2	6.9	0.6	0.6	1.9
연구직	(25)	48.0	52.0	0.0	0.0	0.0	0.0	1.5
계	(198)	29.3	59.1	4.5	6.1	0.5	0.5	1.0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59.1%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29.3%를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는 1.9로서 전금융기관 중 가장 낮은 값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체투자 수단을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附表 I -31>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保險社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모르 겠다	평균
전 체	(198)	24.2	57.1	15.7	2.5	0.5	2.0
근무기관							
은행	(63)	12.7	55.6	23.8	6.3	1.6	2.2
단자 및 종금사	(33)	36.4	48.5	12.1	3.0	0.0	1.8
증권사	(37)	18.9	67.6	13.5	0.0	0.0	1.9
투신사	(13)	46.2	46.2	7.7	0.0	0.0	1.6
보험사	(19)	31.6	63.2	5.3	0.0	0.0	1.7
새마을금고 외	(8)	0.0	62.5	37.5	0.0	0.0	2.4
연구소	(25)	36.0	56.0	8.0	0.0	0.0	1.7
계	(198)	24.2	57.1	15.7	2.5	0.5	2.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2.5	57.2	16.8	2.9	0.6	2.0
연구직	(25)	36.0	56.0	8.0	0.0	0.0	1.7
계	(198)	24.2	57.1	15.7	2.5	0.5	2.0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57.1%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4.2%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다음을 차지하였다. 평균점수는 2.0으로 이는 증권사 다음으로 낮은 값으로, 응답자들은 동 제도의 실시가 보험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금액의 제한이 없고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과세당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품에 상당한 자금유입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보험사의 수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附表 I -32〉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投信社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모르 겠다	평균
전 체	(198)	6.1	45.5	24.7	21.7	1.5	0.5	2.7
근무기관								
은행	(63)	6.3	36.5	19.0	34.9	3.2	0.0	2.9
단자 및 종금사	(33)	0.0	57.6	27.3	15.2	0.0	0.0	2.6
증권사	(37)	5.4	64.9	27.0	2.7	0.0	0.0	2.3
투신사	(13)	0.0	38.5	38.5	15.4	7.7	0.0	2.9
보험사	(19)	10.5	10.5	31.6	42.1	0.0	5.3	3.1
새마을금고 외	(8)	0.0	50.0	25.0	25.0	0.0	0.0	2.8
연구소	(25)	16.0	52.0	20.0	12.0	0.0	0.0	2.3
계	(198)	6.1	45.5	24.7	21.7	1.5	0.5	2.7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4.6	44.5	25.4	23.1	1.7	0.6	2.7
연구직	(25)	16.0	52.0	20.0	12.0	0.0	0.0	2.3
계	(198)	6.1	45.5	24.7	21.7	1.5	0.5	2.7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투신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45.5%가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24.7%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21.7%나 되어, 평균점수는 2.7로 나타났다. 투신사의 경우 주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서는 이에 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附表 I - 33 > 金融所得 綜合課稅가 信協 등의 受信庫 및 收益에 미치는 影響

	응답수	매우 긍정적인 영향	약간 긍정적인 영향	영향이 없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	매우 부정적인 영향	모르 겠다	평균
전 체	(198)	2.0	15.7	39.4	38.9	3.5	0.5	3.3
근무기관								
은행	(63)	1.6	20.6	36.5	39.7	1.6	0.0	3.2
단자 및 종금사	(33)	6.1	18.2	33.3	36.4	6.1	0.0	3.2
증권사	(37)	0.0	8.1	45.9	40.5	5.4	0.0	3.4
투신사	(13)	0.0	23.1	53.8	15.4	7.7	0.0	3.1
보험사	(19)	5.3	5.3	47.4	42.1	0.0	0.0	3.3
새마을금고 외	(8)	0.0	12.5	37.5	25.0	12.5	12.5	3.4
연구소	(25)	0.0	16.0	32.0	52.0	0.0	0.0	3.4
계	(198)	2.0	15.7	39.4	38.9	3.5	0.5	3.3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3	15.6	40.5	37.0	4.0	0.6	3.3
연구직	(25)	0.0	16.0	32.0	52.0	0.0	0.0	3.4
계	(198)	2.0	15.7	39.4	38.9	3.5	0.5	3.3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신탁·새마을 금고 등 기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39.4%가 영향이 없다고 답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38.9%를 차지하여 비슷한 비중을 보여주었다. 평균점수는 3.3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경우 출자금·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우대혜택이 지속되어 수신증가가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지는 경우 이용대상의 제한, 전산망 미비 등 상대적인 서비스 시설의 취약 등으로 수신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8.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금융권 안에서 또는 금융권 밖으로 자금이  
동이 있다면 언제 일어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 ①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② 금년 12월  
③ 내년 초                              ④ 내년 내내 지속적으로

< 附表 1-34 >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資金移動이 豫想되는 時期

	응답수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	금년 12월	내년 초	내년내내 지속적으로
전 체	(198)	29.8	23.7	14.1	32.3
근무기관					
은행	(63)	31.7	14.3	19.0	34.9
단자 및 종금사	(33)	30.3	30.3	18.2	21.2
증권사	(37)	24.3	32.4	0.0	43.2
투신사	(13)	46.2	15.4	7.7	30.8
보험사	(19)	25.0	37.5	0.0	37.5
새마을금고 외	(8)	25.0	37.5	0.0	37.5
연구소	(25)	16.0	28.0	20.0	36.0
계	(198)	29.8	23.7	14.1	32.3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31.8	23.1	13.3	31.8
연구직	(25)	16.0	28.0	20.0	36.0
계	(198)	29.8	23.7	14.1	32.3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자금이동 시기에 대하여는 내년 내내 지속적으로(32.3%), 금년말까지 지속적으로(29.8%), 금년 12월(23.7%), 내년 초(14.1%) 순으로 응답하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로 인한 자금의 이동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조원 이상 20조원 미만(18.2%), 20조원 이상 30조원 미만(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투신사 종사자의 경우 5조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0.8%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자금의 이동규모를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보고 있으며, 보험사의 경우에는 20조원 이상 30조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2.1%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타 금융기관에 비해 자금이동규모를 크게 보고 있다.

10.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자금이동이 일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① 일부 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약화
- ②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의 위축
- ③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
- ④ 은행 대출 등의 축소
- ⑤ 기타 (                      )

< 附表 I - 36 >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인한 資金移動의 問題點

	응답수	일부 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약화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시장 의 위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 의 애로	은행대출 등의 축소	경제의 단기적인 불균형	금융상품 간의 수평적 자금이동	없다
전 체	(198)	29.8	31.3	34.3	3.0	0.5	0.5	0.5
근무기관								
은행	(63)	41.3	27.0	28.6	3.2	0.0	0.0	0.0
단자 및 종금사	(33)	27.3	39.4	33.3	0.0	0.0	0.0	0.0
증권사	(37)	21.6	24.3	51.4	0.0	2.7	0.0	0.0
투신사	(13)	30.8	15.4	53.8	0.0	0.0	0.0	0.0
보험사	(19)	26.3	42.1	21.1	10.5	0.0	0.0	0.0
새마을금고 외	(8)	25.0	37.5	12.5	25.0	0.0	0.0	0.0
연구소	(25)	20.0	40.0	32.0	0.0	0.0	4.0	4.0
계	(198)	29.8	31.3	34.3	3.0	0.5	0.5	0.5
근무기관	(173)	31.2	30.1	34.7	3.5	0.6	0.0	0.0
금융기관 종사자	(25)	20.0	40.0	32.0	0.0	0.0	4.0	4.0
연구직								
계	(198)	29.8	31.3	34.3	3.0	0.5	0.5	0.5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자금이 이동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34.3%), 기업 단기자금 조달 시장의 위축(31.3%), 일부 금융기관의 수신기반 약화(29.8%)를 들었다. 기관별로는 은행 종사자의 경우 수신기반 약화(41.3%)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으며, 증권사 및 투신사 종사자들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외의 다른 금융기관들은 기업 단기자금 조달시장의 위축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다.

11. 다음은 현재까지 확정되었거나 계획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의 문제점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점부터 차례로 두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 ) ( )

- ①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인 소액 저축자들에 대하여 원천분리 과세만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 그리고 환급불허 문제
-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기준금액 수준(4,000만원)이 부적합하게 설정된 문제
- ③ 장기 저축시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는 이자 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를 함으로써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저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
- ④ 합의 차명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탈피 가능성
- ⑤ 실물 보유 채권에 대하여 차별과세를 하지 않는 점
- ⑥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예외를 인정받은 금융상품 등으로 금융상품 및 금융기관간의 세제상 불공평의 문제
- ⑦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적합한 전산 처리 미비 등 세무 행정상의 미비
- ⑧ 기타 ( )

< 附表 I - 37 > 計劃中인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問題

	응답수	소득저축 자의 부담 증가와 환급불허	기준금액 의 수준	장기저축 자들에게 상대적으 로 불리	합의차명 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탈퇴가능	실용보유 채권에 대하여 차별과세 하지 않 는 점	예외물 인정받은 금융상품 등으로 세계상 불공평의 문제	종합과세 실시에 적합한 전산처리 미비 등 세무행정 미비	부동산등 실물자산 으로 자금 이동 소비 증가	모르겠다
전 체	(198)	17.7	16.7	32.3	51.0	9.1	41.9	27.3	1.5	0.5
근무기관										
은행	(63)	20.6	20.6	36.5	49.2	4.8	44.4	22.2	0.0	0.0
단자 및 종금사	(33)	12.1	9.1	18.2	54.5	9.1	63.6	30.3	3.0	0.0
증권사	(37)	21.6	16.2	27.0	51.4	10.8	29.7	32.4	2.7	2.7
투신사	(13)	0.0	7.7	46.2	30.8	0.0	69.2	30.8	7.7	0.0
보험사	(19)	31.6	26.3	47.4	47.4	10.5	5.3	31.6	0.0	0.0
새마을금고 외	(8)	12.5	37.5	50.0	37.5	12.5	37.5	12.5	0.0	0.0
연구소	(25)	12.0	8.0	24.0	68.0	20.0	40.0	28.0	0.0	0.0
계	(198)	17.7	16.7	32.3	51.0	9.1	41.9	27.3	1.5	0.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18.5	17.9	33.5	48.6	7.5	42.2	27.2	1.7	0.6
연구직	(25)	12.0	8.0	24.0	68.0	20.0	40.0	28.0	0.0	0.0
계	(198)	17.7	16.7	32.3	51.0	9.1	41.9	27.3	1.5	0.5

註: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두가지의 문제점을 선택하게 한 결과로서 총 합계는 200%임.

현재 계획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1.0%는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탈퇴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으며, 다음으로 예외물 인정받은 상품으로 인한 세제상 불공평의 문제(41.9%), 장기저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32.3%)의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1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의 실시예 있어서 가장 필요한 보완 조  
치를 순서대로 두가지 적어 주십시오. ( ) ( )

- ①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금융 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선택  
허용과 초과 징수분 환급
- ② 기준 금액 4,000만원의 인하
- ③ 장기저축에 대한 연분연승법의 시행
- ④ 합의차명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탈피 방지책의 강구
- ⑤ 실물 보유 채권에 대한 고세율 적용
- ⑥ 채권의 통장 거래 의무화
- ⑦ 명실상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를 위하여 종합과세 예외  
금융상품의 폐지
- ⑧ 전산 처리 능력의 확충 등 세무 행정 보완
- ⑨ 자금이동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각 금융권별로 종합과세  
예외 금융상품을 인정
- ⑩ 기타 ( )

< 附表 I - 38 > 綜合課稅制度의 重要한 補完措置

	응답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98)	23.2	12.1	17.2	47.0	8.1	14.6	35.4	25.3	15.7	1.0
근무기관											
은행	(63)	27.0	11.1	17.5	46.0	6.3	12.7	36.5	20.6	20.6	1.6
단자 및 종금사	(33)	30.3	9.1	3.0	51.5	9.1	12.1	42.4	21.2	21.2	0.0
증권사	(37)	24.3	18.9	5.4	45.9	8.1	10.8	37.8	32.4	10.8	2.7
투신사	(13)	15.4	23.1	23.1	38.5	0.0	15.4	53.8	23.1	7.7	0.0
보험사	(19)	31.6	10.5	26.3	36.8	15.8	21.1	15.8	36.8	5.3	0.0
새마을금고 외	(8)	12.5	12.5	50.0	37.5	12.5	25.0	25.0	0.0	25.0	0.0
연구소	(25)	4.0	4.0	32.0	60.0	8.0	20.0	28.0	32.0	12.0	0.0
계	(198)	23.2	12.1	17.2	47.0	8.1	14.6	35.4	25.3	15.7	1.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6.0	13.3	15.0	45.1	8.1	13.9	36.4	24.3	16.2	1.2
연구직	(25)	4.0	4.0	32.0	60.0	8.0	20.0	28.0	32.0	12.0	0.0
계	(198)	23.2	12.1	17.2	47.0	8.1	14.6	35.4	25.3	15.7	1.0

註: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두가지의 보완조치를 선택하게 한 결과로서 총 합계는 200%임.

계획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평가할 때 가장 필요한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의 47.0%가 합의 차명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탈피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종합과세 예외 금융상품의 폐지(35.4%), 전산처리 능력의 확충 등 세무행정 보완(25.3%),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에 대한 선택허용과 초과징수분 환급(23.2%), 장기저축자에 대한 연분연승법의 시행(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원천징수세율의 인하와 부동산 투기 억제책 마련 등의 응답이 있었다.

13.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순서대로 두가지 적어 주십시오. ( ) ( )

- ①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② 조세 수입의 증대
- ③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④ 지하경제의 축소
- ⑤ 장기적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화          ⑥ 물가안정
- ⑦ 채권시장의 활성화

< 附表 I - 39 > 綜合課稅로 期待되는 效果

	응답수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조세 수입의 증대	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	지하 경제의 축소	장기적 으로 금 리의 하향 안정화	물가 안정	채권 시장의 활성화
전 체	(198)	66.7	15.7	64.1	16.2	24.7	2.0	9.1
근무기관								
은행	(63)	68.3	15.9	68.3	12.7	25.4	1.6	6.3
단자 및 증금사	(33)	66.7	24.2	63.6	18.2	12.1	0.0	12.1
증권사	(37)	54.1	16.2	70.3	13.5	32.4	2.7	8.1
투신사	(13)	69.2	0.0	69.2	15.4	38.5	7.7	0.0
보험사	(19)	63.2	15.8	42.1	26.3	42.1	5.3	5.3
새마을금고 외	(8)	87.5	37.5	37.5	12.5	25.0	0.0	0.0
연구소	(25)	76.0	4.0	68.0	20.0	8.0	0.0	24.0
계	(198)	66.7	15.7	64.1	16.2	24.7	2.0	9.1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65.3	17.3	63.6	15.6	27.2	2.3	6.9
연구직	(25)	76.0	4.0	68.0	20.0	8.0	0.0	24.0
계	(198)	66.7	15.7	64.1	16.2	24.7	2.0	9.1

註: 설문조사시 응답자에게 두가지 기대효과를 선택하게 한 결과로서 총 합계는 200%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실시로 기대되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6.7%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들었으며, 다음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64.1%)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14.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의 비과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사적 사회 보장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은 당연하다.
- ② 면세 혜택을 주더라도 가입한도의 하향조정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 ③ 타 금융상품 및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 ④ 모르겠다.

< 附表 I - 40 > 5년 이상의 長期 貯蓄性 保險 差益 非課稅에 대한 意見

	응답 수	사적 사회보장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면세혜택 당연	면세혜택을 주더라도 가입한도의 하향 조정 등 보완조치 필요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르겠다
전 체	(198)	20.7	26.8	50.5	2.0
근무기관					
은행	(63)	25.4	27.0	46.0	1.6
단자 및 종금사	(33)	3.0	9.1	84.8	3.0
증권사	(37)	10.8	27.0	59.5	2.7
투신사	(13)	0.0	46.2	53.8	0.0
보험사	(19)	84.2	10.5	5.3	0.0
새마을금고 외	(8)	12.5	37.5	37.5	12.5
연구소	(25)	12.0	48.0	40.0	0.0
계	(198)	20.7	26.8	50.5	2.0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2.0	23.7	52.0	2.3
연구직	(25)	12.0	48.0	40.0	0.0
계	(198)	20.7	26.8	50.5	2.0

5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50.5%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면세혜택을 주더라도 가입한도의 하향조정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26.8%나 되어 사적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면세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20.7%)에 비해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5.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장기적으로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①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② 약간 기여할 것이다.
- ③ 별로 기여를 못 할 것이다.    ④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
- ⑤ 모르겠다.

< 附表 1 - 41 > 綜合課稅가 金利의 下向安定化에 미치는 影響

	응답 수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약간 기여할 것이다	별로 기여를 못할 것이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 시킬 것이다	모르겠다
전 체	(198)	24.7	43.9	22.7	7.1	1.5
근무기관						
은행	(63)	23.8	49.2	17.5	9.5	0.0
단자 및 종금사	(33)	18.2	33.3	33.3	12.1	3.0
증권사	(37)	27.0	37.8	29.7	2.7	2.7
투신사	(13)	46.2	46.2	7.7	0.0	0.0
보험사	(19)	36.8	47.4	5.3	5.3	5.3
새마을금고 외	(8)	25.0	37.5	37.5	0.0	0.0
연구소	(25)	12.0	52.0	28.0	8.0	0.0
계	(198)	24.7	43.9	22.7	7.1	1.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6.6	42.8	22.0	6.9	1.7
연구직	(25)	12.0	52.0	28.0	8.0	0.0
계	(198)	24.7	43.9	22.7	7.1	1.5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금리의 하향 안정화에 약간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43.9%,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24.7%로 전체 응답자의 68.6%가 동 제도의 실시로 인해 금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반면에 동 제도 실시가 금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22.7%였으며 오히려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라는 의견은 7.1%에 불과했다.

16.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가계의 금융저축은 어떠한 변화를 보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금융저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 ② 금융저축이 약간 낮아질 것이다.
- ③ 금융저축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 ④ 금융저축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 ⑤ 모르겠다.

< 附表 I - 42 >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家計의 金融貯蓄에 미치는 影響

	응답 수	금융저축에 는 별 영향 이 없을 것이다	금융저축이 약간 낮아질 것이다	금융저축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금융저축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모르겠다
전 체	(198)	58.1	31.3	5.1	5.1	0.5
근무기관						
은행	(63)	60.3	34.9	4.8	0.0	0.0
단자 및 증금사	(33)	66.7	15.2	0.0	15.2	3.0
증권사	(37)	51.4	37.8	2.7	8.1	0.0
투신사	(13)	46.2	38.5	7.7	7.7	0.0
보험사	(19)	57.9	36.8	5.3	0.0	0.0
새마을금고 외	(8)	37.5	37.5	25.0	0.0	0.0
연구소	(25)	64.0	24.0	8.0	4.0	0.0
계	(198)	58.1	31.3	5.1	5.1	0.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57.2	32.4	4.6	5.2	0.6
연구직	(25)	64.0	24.0	8.0	4.0	0.0
계	(198)	58.1	31.3	5.1	5.1	0.5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가계의 금융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58.1%가 금융저축에는 별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금융저축이 약간 낮아진다는 응답은 31.3%인 반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5.1%에 불과하여, 응답자들은 동 제도의 실시가 가계의 금융저축에는 별 영향이 없거나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17. 귀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 ① 상당히 받고 있다.                      ② 약간 받고 있다.
- ③ 거의 받고 있지 않다.

<附表 I -43> 業務와 관련하여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대하여 問議를 받는 頻度

	응답 수	상당히 받고 있다	약간 받고 있다	거의 받고 있지 않다
전 체	(198)	20.7	52.5	26.8
근무기관				
은행	(63)	6.3	60.3	33.3
단자 및 종금사	(33)	30.3	54.5	15.2
증권사	(37)	32.4	37.8	29.7
투신사	(13)	30.8	61.5	7.7
보험사	(19)	10.5	57.9	31.6
새마을금고 외	(8)	12.5	75.0	12.5
연구소	(25)	32.0	36.0	32.0
계	(198)	20.7	52.5	26.8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19.1	54.9	26.0
연구직	(25)	32.0	36.0	32.0
계	(198)	20.7	52.5	26.8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대한 문의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 대하여, 약간 받고 있다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거의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26.8%)과 상당히 받고 있다(20.7%)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 증권사 및 보험사는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의가 적은 반면, 투신사, 단자 및 종금사 등에는 상대적으로 문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고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세금 부담의 증가                      ② 금융자산 규모의 노출  
③ 증여 및 상속세의 과세 회피의 어려움    ④ 기타 (                      )

<附表 1 - 44> 金融所得 綜合課稅로 顧客들이 가장 不便하게 생각하는 點

	응답수	세금 부담의 증가	금융자산 규모의 노출	증여 및 상속세의 과세 회피의 어려움	(2)+(3)	모르겠다
전 체	(198)	16.7	69.7	11.6	1.5	0.5
근무기관						
은행	(63)	15.9	76.2	7.9	0.0	0.0
단자 및 종금사	(33)	27.3	66.7	6.1	0.0	0.0
증권사	(37)	16.2	64.9	16.2	0.0	2.7
투신사	(13)	30.8	53.8	7.7	7.7	0.0
보험사	(19)	10.5	68.4	21.1	0.0	0.0
새마을금고 외	(8)	12.5	62.5	25.0	0.0	0.0
연구소	(25)	4.0	76.0	12.0	8.0	0.0
계	(198)	16.7	69.7	11.6	1.5	0.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18.5	68.8	11.6	0.6	0.6
연구직	(25)	4.0	76.0	12.0	8.0	0.0
계	(198)	16.7	69.7	11.6	1.5	0.5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고객들은 금융자산 규모가 노출되는 것(69.7%)을 가장 불편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금부담의 증가(16.7%), 증여 및 상속세 세원의 노출(11.6%) 등을 들었다.

19.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
- ③ 그다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④ 전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⑤ 모르겠다.

< 附表 I - 45 > 現在 實施中인 金融實名制에 대한 評價

	응답 수	매우 잘 추진되고 있다	어느정도 잘추진되고 있다	그다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전 체	(198)	8.1	57.6	30.8	2.0	1.5
근무기관						
은행	(63)	11.1	57.1	28.6	1.6	1.6
단자 및 종금사	(33)	12.1	66.7	15.2	3.0	3.0
증권사	(37)	2.7	59.5	35.1	2.7	0.0
투신사	(13)	0.0	38.5	46.2	7.7	7.7
보험사	(19)	15.8	57.9	26.3	0.0	0.0
새마을금고 외	(8)	12.5	37.5	50.0	0.0	0.0
연구소	(25)	0.0	60.0	40.0	0.0	0.0
계	(198)	8.1	57.6	30.8	2.0	1.5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9.2	57.2	29.5	2.3	1.7
연구직	(25)	0.0	60.0	40.0	0.0	0.0
계	(198)	8.1	57.6	30.8	2.0	1.5

현재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의 추진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정도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그다지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도 30.8%나 되었는데, 기관별로 투신사, 새마을금고 외 종사자들은 잘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보다는 그다지 잘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오히려 높았다.

20. 현재 계획중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합의차명을 이용하거나 채권거래에 중개인이 개입하는 방법 등을 통하면 충분히 종합과세를 회피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판단하 시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비실명인 차명이나 도명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 ①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② 약간 증가할 것이다.
- ③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④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 ⑤ 모르겠다.

< 附表 I - 46 > 金融所得 綜合課稅의 實施로 借名 및 盜名 去來의 增減 豫測

	응답 수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약간 증가할 것이다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전 체	(198)	26.3	56.6	11.6	5.6
근무기관					
은행	(63)	30.2	50.8	15.9	3.2
단자 및 종금사	(33)	27.3	57.6	15.2	0.0
증권사	(37)	35.1	51.4	2.7	10.8
투신사	(13)	23.1	46.2	23.1	7.7
보험사	(19)	21.1	78.9	0.0	0.0
새마을금고 외	(8)	0.0	50.0	25.0	25.0
연구소	(25)	16.0	68.0	8.0	8.0
계	(198)	26.3	56.6	11.6	5.6
근무기관					
금융기관 종사자	(173)	27.7	54.9	12.1	5.2
연구직	(25)	16.0	68.0	8.0	8.0
계	(198)	26.3	56.6	11.6	5.6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차명이나 도명 거래의 증가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6.6%가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26.3%나 되어 전체응답자의 82.9%가 차명이나 도명거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 附錄 II. 金融所得 綜合課稅 關聯 主要 法令\*

1. 1994年 改正稅法 (1994년 12월 22일), 施行令  
(1994년 12월 31일) 및 施行規則 (1995년 5월 3일)

### ■ 金融所得 綜合課稅

- 1996년부터 연간 4千萬원을 초과하는 金融所得은 事業所得·勤勞所得 등 다른 소득과 合算하여 累進稅率로 綜合課稅.
  - 源泉分離課稅되고 있는 利子·配當 등의 金融所得이 1996년부터 綜合課稅로 전환됨. 즉, 1996년부터는 夫婦合算하여 金融所得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超過金額은 勤勞所得이나 事業所得의 경우와 같이 累進稅率로 綜合課稅를 받게 됨.
  - 金融所得 綜合課稅는 1993년 8월 實施된 金融實名制의 完結措置로서의 意味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所得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稅金을 負擔하게 되어 應能負擔의 原則에 보다 忠實할 수 있게 되었음.

### 가. 綜合課稅 基準金額

- 1) 改正內容

---

\* 本章의 內容은 各種 法(案), 施行令, 施行規則, 業務處理要領 중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關聯된 부분만 발췌·정리한 것임.

現 行	改 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利子·配當所得은 대부분 源泉分離課稅하고 다음의 소득만 綜合課稅</li> <li>- 非營業貸金の 利益</li> <li>- 上場法人·場外登錄法人 大株主의 수취배당</li> <li>- 非上場法人의 株主가 수취하는 配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부터 연간 4천만원(夫婦合算)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누진세율로 종합과세</li> <li>- 4천만원까지는 源泉徵收로 종결</li> <li>○ 다음의 소득은 基準金額에 관계없이 종합과세</li> <li>- 非營業貸金の 利益</li> <li>- 上場法人·場外登錄法人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li> <li>- 非上場法人의 株主가 받는 配當</li> <li>- 國外에서 받는 利子·配當</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資産所得은 世帶別 合算課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夫婦合算課稅로 전환</li> <li>○ 여러 종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li> <li>- 利子所得</li> <li>- 配當稅額控除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li> <li>- 配當稅額控除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순서로 累積計算하여 4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종합과세</li> </ul>

## 2) 改正理由

- 1996년부터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金融所得은 事業所得 등 다른 소득의 경우와 같이 累進稅率로 綜合課稅하게 되는데 基準

金額 4천만원은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가 金融貯蓄에 미치는 영향, 分離課稅時와 綜合課稅時의 稅負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앞으로 그 施行成果를 보아가면서 段階的으로 낮추어 나갈 것임.

- 金融所得 중 配當所得은 이를 綜合課稅하면 配當稅額控除가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配當은 가급적 綜合課稅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立法例임을 감안하여 利子所得과 配當所得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利子所得·配當所得의 順次로 累積計算하여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綜合所得 課稅標準에 합산하되, 配當所得에 있어서는 配當稅額控除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토록 하였고
- 지금까지 利子·配當·不動產賃貸所得 등 資產所得에 대하여는 이를 世帶別로 合算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과세하는 世帶別 合算課稅制度를 운영하여 왔으나, 金融所得이 綜合課稅되는 1996년부터는 夫婦만의 資產所得을 합산하는 것으로 合算課稅의 範圍를 조정하여
  - 大統領이 정하는 長期債券利子로서 分離課稅 申請分(法 § 129 ① 1호 가목)
  - 非實名 利子·配當所得(法 § 129②)
  - 租稅減免規制法(법률 제4806호, 1994. 12. 22) 附則 § 13가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1994. 9. 30 이전 가입분)
  - 配當稅額控除 계산시 배당소득에 加算되는 22/100에 상당하는 금액(令 § 21)
  - 非課稅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년 1월 1일 이후 發生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參考>

財政經濟院 所得 46011-35 (1995. 3. 9)

“법률 제4803호 개정소득세법(1994. 12. 22 공포)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利子計算期間이 1995년과 1996년 양 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 계산기간 중 1996년 1월 이후 해당분에 대해서만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나. 綜合課稅되는 金融所得의 範圍

1) 改正內容

	現 行	改 正
非課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個人年金貯蓄</li> <li>○ 長期住宅마련貯蓄</li> </ul>	(좌 동) ○ 長期住宅마련貯蓄의 경우에는 貯蓄期間을 5년에서 10년으로 延長. * 金融所得 綜合課稅와 함께 저축에 대한 稅金優待를 縮小하되 長期(10년 이상) 社會保障性 貯蓄은 계속 非課稅.
貯蓄性 保險差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미만 유지된 저축성 보험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分離課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미만 유지된 貯蓄性 保險差益은 綜合課稅.</li> <li>* 5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li> </ul>
長期債券 利子에 대한 分離課稅 選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源泉分離課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長期債券(발행일부터 최종 償還期間이 5년 이상인 채권)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로 源泉分離課稅 選擇 허용.</li> <li>- 10년 이상 ..... 25%</li> <li>- 5~10년 미만 ..... 30%</li> </ul>

	現 行	改 正
株式讓渡 差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上場法人 株式讓渡差益에 대해서는 讓渡稅 課稅.</li> <li>○ 上場法人 株式讓渡差益은 課稅치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는 長期債券의 범위에는 信託財産 全額을 장기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證券投資信託의 受益證券도 포함.</li> <li>- 長期債券의 경우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면 分離課稅를 선택할 수 있고 保有期間은 따지지  않음.</li> <li>* 分離課稅를 선택하고자 할 때에는 이자를 지급받을 때(利子所得의 收入時期)에 이자를 지급하는 金融機關 등에 分離課稅申請書를 제출해야  됨.</li> <li>○(좌  동)</li> </ul>
債券讓渡 差益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課稅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  동)</li> <li>* 上場株式 讓渡差益은 課稅되지  않음.</li> </ul>

2) 改正事由

- 지금까지는 分離課稅되는 金融所得을 個別的으로 列擧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득별로 分離課稅 또는 綜合課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基準金額을 정하여 人別(또는 夫婦合算)로 합산한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分離課稅하고 기준금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綜合課稅를 받게 된다.

- 따라서 非課稅所得이나 稅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소득 및 특별히 분리과세를 받게 된다고 선택한 長期債券의 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金融所得이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가) 長期住宅마련貯蓄의 경우

- 1996년 1월부터는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延長되는바, 이러한 改正 規程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저축에 加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저축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기 전인 1995년 12월 말 이전에 貯蓄契約을 체결한 것은 기간 연장에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저축하면 從前에 따라 非課稅(조감령 부칙 제11조)한다.

#### 나) 貯蓄性 保險差益의 경우

- 1994년 9월 말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자가 수취하는 3년 이상 5년 미만 유지된 저축성 보험차익은 계속 현재와 같이 비과세되나, 1994년 10월 이후 保險契約을 체결한 것의 경우에는 期間으로 按分計算하여 1996년 1월 이후 해당분은 과세를 받게 된다.

#### 다) 長期債券의 경우

- 1996년 1월 이후 발생한 이자를 支給받을 때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1995년 말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도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다.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 計算

1) 改正內容

現 行	改 正
<p>&lt; 신 설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稅額計算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소득과 合算하여 綜合所得稅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稅액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다른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나온 稅액을 比較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구체적인 稅액계산에 관하여는 다음의 계산사례 참조)</li> </ul> </li> </ul>

2) 改正理由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合算하여 종합과세하게 되는데 기준금액의 限界線上에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오히려 분리과세시보다도 稅金이 줄어 들게 되어 기준금액 초과자와 기준금액 미달자간 稅後所得이 逆進되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源泉徵收稅率에 의한 稅額과 綜合課稅時의 稅액을 比較하여 과세하는 比較課稅制度를 도입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년 1월 이후 發生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시 부터 적용한다.

## 【 사례 (기본)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6천만원
  - 다른 종합소득 : 3천만원
- } 인 경우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함.

$$\textcircled{1} = \text{가} + \text{나} = 962\text{만원} + 600\text{만원} = 1,562\text{만원}$$

$$\text{가} = [(6\text{천만원} - 4\text{천만원}) + 3\text{천만원}] - 460\text{만원}(4\text{인가족 기준 공제액}) \times 30\%(\text{세율}) - 400\text{만원}(\text{누진공제액}) = 962\text{만원}$$

$$\text{나} = 4\text{천만원}(\text{기준금액}) \times 15\%(\text{원천징수세율}) = 600\text{만원}$$

$$\textcircled{2} = \text{다} + \text{라} = 900\text{만원} + 408\text{만원} = 1,308\text{만원}$$

$$\text{다} = 6\text{천만원} \times 15\% = 900\text{만원}$$

$$\text{라} = [3\text{천만원} - 460\text{만원}(4\text{인가족 기준 공제액})] \times 20\% - 100\text{만원}(\text{누진공제액}) = 408\text{만원}$$

- ①, ② 중 큰 금액인 1,562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됨.  
1,562만원 - 900만원(원천징수세액) = 662만원(납부할 세액)

## 【 사례 1 】 (§ 62① 1호 가목 및 나목의 괄호 외 규정 해당시)

- 금용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4,500만원(A)
- 비상장법인 배당 : 500만원(B)
- 다른 종합소득 : 3,000만원(C)

$$\text{○ 금융소득} = 4,500\text{만원}(A) + 500\text{만원}(B) = 5,000\text{만원}$$

$$\text{○ 기준금액 초과금액} = 5,000\text{만원}(A+B) - 4,000\text{만원} = 1,000\text{만원}(D)$$

$$B(500\text{만원}) < D(1,000\text{만원})$$

⇒ § 62① 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괄호 외 규정 적용.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함.

$$\textcircled{1} = \text{가} + \text{나} = 662\text{만원} + 600\text{만원} = 1,262\text{만원}$$

$$(가) = [(4,500만원 + 500만원) - 4,000만원] + 3,000만원 - 460만원(4인가족 기준 공제액) \times 30\% - 400만원(누진 공제액) = 662만원$$

$$(나) = 4천만원 \times 15\% = 600만원$$

$$\textcircled{2} = (대) + (라) = 750만원 + 408만원 = 1,158만원$$

$$(대) = 5,000만원 \times 15\% = 750만원$$

$$(라) = (3,000만원 - 460만원) \times 20\% - 100만원 = 408만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262만원이 산출세액임.

$$1,262만원 - 750만원(원천징수세액) = 512만원(납부할 세액)$$

【사례 2】 (§ 62① 1호 가목 및 나목의 괄호 내 규정 해당시)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2,000만원(A)
- 비상장법인 배당 : 3,000만원(B)
- 다른 종합소득 : 3,000만원(C)

- 금융소득 = 2,000만원(A) + 3,000만원(B) = 5,000만원
- 기준금액 초과금액 = (A+B) - 4,000만원 = 1,000만원(D)  
B(3,000만원) < D(1,000만원)

⇒ § 62① 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괄호 내 규정 적용.

-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함.

$$\textcircled{1} = (가) + (나) = 1,262만원 + 300만원 = 1,562만원$$

$$(가) = [(3,000만원 + 3,000만원(C)) - 460만원] \times 30\% - 400만원(누진공제액) = 1,262만원$$

$$(나) = (A+B-B) \times 15\%(원천징수세율) = 2,000만원 \times 15\% = 300만원$$

$$\textcircled{2} = (대) + (라) = 750만원 + 408만원 = 1,158만원$$

$$(대) = 5,000만원 \times 15\% = 750만원$$

$$(라) = (3,000만원 - 460만원) \times 20\% - 100만원 = 408만원$$

∴ ①과 ② 중 큰 금액인 1,562만원이 산출세액임.

$$1,562\text{만원} - 750\text{만원(원천징수세액)} = 812\text{만원(납부할 세액)}$$

라. 金融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調整 및 稅金優待貯蓄의 整備

1) 改正內容

	現 行	改 正
利子·配當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li> <li>- 分離課稅分 …… 20%</li> <li>- 綜合課稅分 …… 2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부터 20%(또는 25%)의 稅率을 15%로 引下.</li> <li>*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이후에 걸치는 경우에는 期間으로 按分하여 1995년분은 20%, 1996년분은 15%의 稅率을  적용.</li> </ul>
稅金優待貯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非課稅</li> <li>- 근로자장기(증권)저축</li> <li>- 근로자증권저축</li> <li>- 주택청약저축(입주자저축)</li> <li>- 국민주신탁</li> <li>- 장학적금</li> <li>- 농·수·축협 등 예탁금</li> <li>- 근로자재형저축</li> <li>- 농어가목돈마련저축</li> <li>○ 5% 低率分離課稅</li> <li>- 우리스주저축</li> <li>- 소액가계저축</li> <li>- 소액채권저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부터 10% 세율 적용.</li> <li>- 다만, 농·수·축협 등의 預託金의 경우에는 1996년까지는 계속 非課稅하고 1997~1999년까지는 5%, 2000년부터는 10% 세율 적용.</li> <li>- 종합과세 基準金額  계산 시 稅金優待貯蓄의 이자도 포함하여  계산.</li> </ul>

	現 行	改 正
	- 노후생활연금(투자) 신탁 ○ 貯蓄稅金控除 - 우리사주저축(15%) - 근로자장기증권저축(10%)	○ 1996년분 勞動所得을 年末精算할 때부터 貯蓄稅金控除 적용 배제

2) 改正理由

- 金融所得에 대한 綜合課稅를 계기로 金融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을 引下 調整하고 稅金優待貯蓄에 대한 우대폭도 縮小하였다.
- 즉, 금융상품간 租稅의 中立性을 유지함으로써 稅金이 資金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가급적 줄여 종합과세시 金融資産이 세금우대 쪽으로 지나치게 몰리지 않게 하고 또 金利自由化라는 측면도 고려하여 현재 比과세되거나 5%의 저세율이 적용되는 稅金優待貯蓄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합소득세의 最低稅率 수준인 10%로 上向調整하였다.
- 아울러 綜合所得稅의 실효 세부담이 원천징수세율에 미치지 못하는 少額 金融所得者의 稅負擔面을 고려하여 金融所得에 대한 일반적인 源泉徵收稅率을 20%에서 15%로 인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改正 源泉徵收稅率은 1996년 1월 이후 발생하는 金融所得부터 적용하되 既存 稅金優待貯蓄 加入者에게는 경과조치 인정.
- 1994년 9월 말 이전에 稅金優待貯蓄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초 契約日부터 滿期時까지(만기시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非課稅 또는 5% 稅率로 源泉分離課稅.

\* 1994년 9월 말부터 1995년 12월 말 사이에 稅金優待貯蓄에 가입한 경우에는 1995년 말 이전분의 利子에 대해서만 현행 규정에 의한 稅金優待를 적용받고 1995년 1월 이후분에 대해서는 改正稅率 적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경우에는 1998년 말 이전 加入分까지는 현행 규정에 의하여 계속 非課稅.
- 勤勞者財形貯蓄의 경우에는
  - 1994년 9월 말 이전 加入者는 貯蓄契約이 만료할 때까지 계속 현행과 같이 이자소득 非課稅와 貯蓄稅額控除 가능.
  - 1994년 10월 1일~1994년 12월 말까지의 加入者는 1994년 12월 말까지의 저축분에 대해서만 利子所得 非課稅와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음.
  - 1995년 1월 이후 加入者는 이자소득 非課稅 등의 稅金優待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 金融所得 資料 등 所得資料 提出制度 補完

1) 改正內容

現 行	改 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分離課稅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支給調書提出 免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金融所得에 대한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1996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한 支給調書提出을 義務化</li> <li>- 다만, 다음의 少額 金融所得資料는 국세청장이 요구할 때만 提出하도록 猶豫</li> <li>· 잔액이 30만원 미만이고 1년간 거래가 없는 休眼計座인 경우</li> <li>· 연간 발생 利子·配當이 3만원 미만인 경우</li> </ul>

現 行	改 正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綜合課稅되는 소득에 대한 자료는 그支給日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國稅廳에 제출</li> <li>○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지급조서는 個別로 작성하여 제출</li> <li>○ 不誠實 提出에 대한 加算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제출가산세 : 지급액의 1.5%</li> <li>- 지연제출가산세 : 지급액의 0.3%</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所得資料 제출이 유예된 것이라도  종합과세 基準金額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li> <li>○  원칙적으로 支給日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電算媒體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월분 : 8월말</li> <li>· 1~12월분 : 익년 2월말</li> </ul> </li> </ul> </li> <li>○  건별로 제출하는 대신에 利子·配當所得 支給明細書로 일괄제출 가능</li> <li>○  소득자료량이 많은 報告義務者에 대해서는 디스켓 등 電算媒體에 의하여 資料를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利子·配當所得 : 자산이 20억원 이상이고 연간 提出資料가 600件 以上인 金融機關</li> <li>- 勤勞·退職所得 : 상시 종업원 50人 以上인 사업주</li> <li>- 源泉徵收對象 事業所得 : 연간 제출자료가 600件 以上인 者</li> </ul> </li> <li>○ 支給調書 불성실제출 가산세율을 법인기업 수준에 맞추어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가산세 : 지급액의 3%</li> <li>- 지연제출가산세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내 제출시 지급액의 1%, 2월내 제출시 2%</li> </ul> </li> </ul>

2) 改正理由

- 금융소득에 대한 성실한 所得稅 申告를 유도하고 申告를 받은 후 신고내용을 檢證하기 위해 지금까지 所得資料의 제출이 면제되

있던 金融所得에 대해서도 종합과세가 시행되는 1996년부터 支給調書 등의 소득자료 제출을 法定化하였고

-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金融機關 등 자료보고의무자의 업무부담 증가를 덜어 주고 國稅廳에서도 효율적으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량이 많은 경우에는 所得資料의 내용을 전산데이프나 디스켓에 담아 제출토록 하며
- 所得資料를 불성실하게 제출시에 적용되는 加算稅率을 法人企業의 경우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년 1월 이후 발생한 金融所得을 支給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과세 시행 전에 금융기관과 국세청간 效率的인 所得資料 通受報體系를 마련하고 국세청의 電算시스템도 試驗稼動해 보기 위해 1994년분 金融所得資料는 1995년 4월 말까지, 1995년 상반기분 자료는 1995년 8월 말까지, 1995년 하반기분 자료는 1996년 2월 말까지 각각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였음. 다만, 이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法律 第4804號 法人稅法 附則 §7③).

## ■ 綜合所得 稅率構造 改編 및 各種 控除 調整

### 가. 綜合所得 稅率構造의 改編(法 §55)

#### 1) 改正內容

現 行		改 正	
課稅標準	稅率(%)	課稅標準	稅率(%)
400만원이하	5		
400 ~ 800만원이하	9	1,000만원이하	10
800 ~ 1,600만원이하	18	1,000 ~ 3,000만원이하	20
1,600 ~ 3,200만원이하	27	3,000 ~ 6,000만원이하	30
3,200 ~ 6,400만원이하	36	6,000만원초과	40
6,400만원 초과	45		

#### 2) 改正理由

- 金融所得綜合課稅의 시행과 함께 각종 人的控除를 큰 폭으로 上向調整하는 한편, 最低稅率을 1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最低稅率이 가지는 의미를 살리도록 하고
- 最高稅率도 40%로 인하하여 綜合課稅가 金融貯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課稅標準 現實化에도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동시에 6단계의 課稅階級도 4단계로 단순화하였다.

####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년 1월 이후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 2. 1995年 稅法改正(案) (1995년 9월 2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신설하고 각종 자료제출절차를 간소화함.

## 가. 分離課稅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신설

現 行	改 正 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원천징수세율(1996년)로 분리과세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신설</li> <li>- 신용카드와 가계수표 등의 결제가 가능한 1세대에 1통장만 허용</li> <li>- 불입한도 : 1,200만원</li> </ul>

## 【개정이유】

-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의 일상적인 신용카드와 가계수표의 결제 등을 위한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 제고
  - 금융기관과 세무관서의 업무부담 경감

<참고>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추가 인하

現 行	改 正 案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20%(1995년) → 15%(1996년)	- 10%(1997년)

【개정이유】

- 실효소득세율이 15% 이하인 저소득근로자·영세사업자에게는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이의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소액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최저세율인 10%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
- 종합과세 실시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요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자의 불안심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도운용방향을 미리 예고할 필요가 있음.
- 종합과세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기준금액 인하방안도 검토

【시행시기】

- 1997년 1월 1일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 1996년 입법조치

나. 公社債型 證券投資信託利益의 課稅方法 改善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투자신탁은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구분하여 과세상 달리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채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그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li> </ul> </li> <li>- 주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것으로 그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채형의 경우도 주식형의 경우와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또는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現 行	改 正 案
·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 차익 또는 평가차익에서 발생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 개인이 수취하는 주식·채권의 양도차익 또는 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형평 유지

## 다. 源泉徵收時期 調整

現 行	改 正 案
○ 할인매출하는 어음이나 채권은 원칙적으로 만기상환일에 원천 징수 - 다만, CP의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	- CP의 경우 납세자가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상환일 또는 할인매출일중 선택
○ 무기명개발신탁 수익증권 -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원천 징수	-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

## 【개정이유】

- CP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금융상품  
(예 : 채권)간의 중립성 유지
- 종합과세하에서는 수취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득자료를 보고  
할 수 없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연결시킬 수 없는 점을 감안하  
여 무기명개발신탁 수익증권의 원천징수시기를 조정

라. 所得資料提出制度의 補完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배당소득 지급시에는 매월 지급조서(소득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월분 : 8월말</li> <li>· 1~12월분 : 다음해 2월말</li> </ul> </li> </ul> </li> <li>○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제출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연제출금액의 1% 또는 2%</li> </ul> </li> <li>- 미제출 가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제출금액의 3%</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출횟수를 연 4회(매분기 1회)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li> </ul> </li> <li>- 폐지</li> <li>- 미제출 가산세를 2%로 인하하여 기간경과 후 즉시 적용</li> </ul>

【개정이유】

- 소득자료 제출횟수를 줄여 보고의무자와 국세청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가산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

마. 子女養育費控除 新設

現 行	改 正 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여성근로자 또는 남성독신근로자에 대하여는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의 자녀양육비공제 허용</li> </ul>

【개정이유】

- 주부인력의 산업참여 유도
- 공제액은 경로우대공제 등 다른 공제와 형평을 맞춤.

- 부양가족공제와 합할 경우 자녀 1인당 연 150만원 공제됨.  
(국·공립시설 평균 보육비의 83% 수준)

#### 바.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徴收 改善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25%</li> <li>○ 기타소득 중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를 공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로 인하조정</li> <li>- 아파트 입주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75% 필요경비율 인정</li> </ul>

#### 【개정이유】

- 1996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고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도 20%에서 15%로 하향조정되므로 이에 맞추어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조정
-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 및 배상금 중 아파트 지체보상금은 필요경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강연료 수준의 필요경비(75%)를 인정

#### 사. 稅務士試驗制度의 改善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평가에 의하여 선발</li> <li>· 각 과목 40점, 평균 60점 이상</li> </ul> </li> <li>○ 시험과목의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법1·2부(12과목), 회계학 축소, 지방세법(취득, 등록세 등) 추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격예정인원제도(상대평가)로 전환</li> <li>· 각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li> <li>- 세법1·2부를 8과목으로</li> </ul>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무교육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합격자만 실시</li> <li>모든 세무사 자격자로 확대</li> </ul> </li> <li>○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국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경력자 및 공인회계사 등</li> <li>- 국적요건 삭제</li> </ul>

【개정이유】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 및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세무대리수요 증대에 부응하면서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 규모의 확대와 세무사 시장 개방(1996년 1월 1일)에 대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 3. 債券 等에 대한 綜合課稅 關聯 業務處理要領 (1995년 9월 30일)

#### ■ 債券 등에 대한 綜合課稅 基本構造

	從 前 案	改 正 案
- 이자소득의 귀속	이자수령자의 소득으로 귀속 → 종합과세	○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보유자에게 각각 귀속 → 종합과세
- 원천징수의무자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법인 └ 이자를 지급하는 자 * 원천징수의무(대행)자 └ 개인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개인 * 개인간 거래는 채권을 매수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시 보유기간별 보유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분할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원천징수방법	이자지급시 15% (법인 20%) 세율로 원천징수	○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에 매도시 별도 약정하는 경우 매입금융기관이 원천징수 가능 ○ 채권을 매수·매도시 및 이자지급시 15%(법인 20%) 세율로 원천징수 * 시행일자 : 1996년 1월 1일



- (5) 법인 E가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발행기업 甲이 법인 E의 보유기간인 ⑤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원천징수 납부

## ■ 細部事項

### 가. 保有期間別 課稅方式의 導入 趣旨

#### 1) 도입취지

- 종전의 채권 과세방식은 이자수령자에게 이자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자지급시에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 채권을 중도매각하는 경우 매매 가격결정과정에서 이자상당액에 대한 세금이 전가되어 최소한 원천세율만큼의 세금은 부담하게 되는 점과
  - 채권유통을 활성화시켜 채권시장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점을 감안한 것이었음.
-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채권에 대한 종합과세가 이자수령자 과세방식인 점을 이용하여 각 금융기관이 만기 직전 재매입방식에 의하여 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 판매하여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함으로써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2) 채권매매차익 과세와 다른 점

- 중도매각시 원천징수 대상은 매매차익(매도가액-매입가액)이 아니라, 발행수익률(표면금리와 할인액 또는 할증액)로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이며
  - 순수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순수한 매매차익 부분은 주식의 매매차익과 마찬가지로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1998년 이후 검토하기로 한 주식양도차익문제와 연계하여 양도차익과세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 3)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문제

-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은
  - 채권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현행 제도하에서 매매차손만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매매차손이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실세금리 채권의 수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예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귀책사유에 속하는 이러한 투자위험(risk)까지 고려하기는 곤란함.

### 나. 債券 等의 範圍

- 원칙적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 → 채권, CD, CP, 증개어음, 포지어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 주식을 제외한 양도가능한 모든 증권(신탁상품으로 운용되는 것도 포함)
  - \*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한 상환기간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경우도 포함됨.
  -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30~25%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종결

#### <참고 1> 분리과세되는 5년 이상 장기채권

- 5년 이상 장기채권도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15%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 다만,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30~25%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

- ┌ 5~10년 : 30%
- └ 10년이상 : 25%

- '5년이상'이라 함은 채권의 보유기간이 아니라 상환기간(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참고 2> 특정금전신탁 등 소위 '절세상품'에 대한 처리

- 특정금전신탁 등 '절세상품'에 포함된 채권은 특정금전신탁계약서상 원본보전이나 이익보족을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과세의 대상이 됨.
- 다만, 기존의 특정금전신탁 가입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에서 1995년 9월 13일 이전 특정금전신탁 가입자에 대하여 해약시 중도해지 수수료 면제가 가능토록 조치한 바 있음.

다. 源泉徵收 義務

1) 원천징수의무자

<중도 매각시>

- 다음 거래 중 ①·③·④에 대하여 원천징수  
(매도자) (매수자)

- ① 개인(A) → 법인(甲)(○)
- ② 개인(B) → 개인(乙)(×)
- ③ 법인(C) → 법인(丙)(○)
- ④ 법인(D) → 개인(丁)(○)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되나, ③·④의 경우에는 매도자인 법인 C·D가 원천징수를 대행하도록 규정

\* ③의 경우 매수법인이 금융기관인 때에는 매수자가 원천징수 가능

<이자지급시>

- 이자를 지급하는 자(채권 등의 발행기업, 원천징수의무자·대리자 등)

## 2)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행 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상의 법인은 모두 포함됨.
  - 국가(국가가 관리하는 기금 포함),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법인격이 있는 상법상 회사,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 등

## 3) 원천징수의 법률적인 성격

- 이자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채권 발행법인이 갖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지만, 원천징수에 대하여 세법상 대리 위임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 현행 세법에서도 원천징수 업무에 관하여는 대리 위임에 의하여 그 의무를 대행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 \* 예를 들면 단자·종금사 등은 기업이 발행한 어음 등을 인수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 당해 기업을 대신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음(법률적 대리 위임 관계).
- 또한 중도매각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경우는 당해 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의 성격도 가지게 됨.

## 라. 保有期間 利子相當額의 計算

-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의 방법에 따라 「발행수익률」(표면금리와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 기준으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함.
  - 만기이자지급식 : 표면금리
  - 할인식 : 할인금리
  - 이표식 : 권면에 약정된 표면금리

- 할인(할증)발행과 표면이율이 같이 있는 경우  
: 할인(할증)액과 표면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리
- 변동금리부채권 : 각 이자지급기간의 시기에 약정된 금리
- 첨가소화되는 저금리 채권 : 표면금리
- 전환사채 : 표면금리. 단, 전환만료일 이후에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금리
- 선매출 채권의 경우 : 매출시 발행일까지의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발행일 이후에는 발행수익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과세
- \* 이자계산방법이 복리지급방식인 경우 : 약정에 따라 복리방식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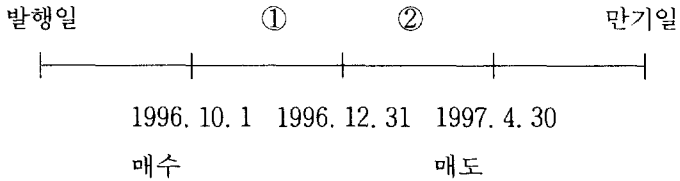
<참고 3>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채권매매시 보유기간이자 계산방법

- 금융기관 등 법인이 동일한 종목의 채권(발행회사, 발행일, 금리, 만기일이 같은 채권)을 매입하여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경우
  - 당해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의 계산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 당좌자산·투자자산 :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 재고자산 :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 각 평가방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보유기간 이자 및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는 발생하나 종국적으로 총보유기간 이자 및 세액은 동일하게 됨.

<참고 4> 채권의 보유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치는 경우

- 채권의 보유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치는 경우의 보유기간이자의 귀속연도는
  - 당해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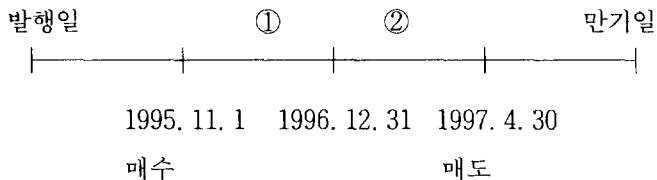
【사례 1】



⇒ ①·② 기간 이자상당액 전부를 1997년 4월 30일 원천징수하고  
1997년 소득으로 귀속

- 다만, 개인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수한 채권을 1996년 이  
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 1995년 이전 기간이자상당액은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 종합과세가 실시되는 1996년 이후 기간이자상당액은 15% 세  
율로 원천징수한 후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종  
합과세하게 됨.

【사례 2】



⇒ ①·② 기간 이자상당액 전부를 1996년 4월 30일 원천징수하되  
①기간은 20% 세율, ②기간은 15% 세율을 적용하고, ②기간소득만  
1996년 소득으로 귀속

마. 源泉徵收 方法

1) 중도매각시 원천징수방법

① 개인 A → 개인 B → 법인간 거래의 경우

-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이후의 각 개인별 보유기간 전체이 자상당액에 대하여 매입하는 법인이 개인 B로부터 원천징수
- 다만, 개인 B가 계좌거래내역 또는 여타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기간중 각 보유자별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 각 보유자별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종합과세 받음.
- 각 보유자별 보유기간을 입증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이 자상당액 전부가 개인 B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종합과세됨.

## ② 법인 → 법인간 거래의 경우

- 법인간에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함.
  - 매도자인 법인이 자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를 대행
  - 다만, 연·기금 등 일반법인이 금융기관에 매도시 별도 약정을 하는 경우 매입금융기관이 원천징수 가능

## ③ 법인 → 개인간 거래의 경우

- 법인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매도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대행

## 2)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원천징수계약액을 추징
  - 당해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와 자료의 미제출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2%(법인은 3%)를 부과

## 3) 1995년 이전 발행 채권의 경우

-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인이 매입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함.

- 1995년 12월 31일 이전의 이자소득분에 대해서는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로부터 계산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시행 전 이자상당액)
- 1996년 1월 1일 이후 이자소득분에 대해서는 15%(법인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

4) 개인간 거래에 있어 자기보유기간의 확인방법

- 계좌거래분 : 전산시스템 또는 통장에 의해 확인이 가능함.
- 실물거래분 : 실제 보유기간의 확인이 어려우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
  - ① 법인의 매출확인서 및 개인간 매매내용에 대한 공증 등에 의하여 확인
  - \*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임.
  - ②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계속 소지한 것으로 간주

5) 5년 이상 장기채권

- 30%(상환기간 5년 이상) 또는 25%(10년 이상)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장기채권을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하기 전에 분리과세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대행)자에게 제출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
  - 원천징수세율은 5년 이상은 30%, 10년 이상은 25%를 적용

<참고 5> CP의 경우

- CP의 경우 원천징수시기가 현재 할인매출일로 되어 있으나 1996년부터 할인매출일과 만기상환일 중 납세자(고객)가 선택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시기를 조정할 예정

- 원천징수시기가 만기상환일인 경우 다른 채권 등과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면 되나,
  -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중간단계 보유자를 파악하여 금융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필요
- 만기전 중도환매 : 투금사에서 1996년 이후 발생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국세청에 통보
  - 만기상환의 경우 : 은행이 투금사에 만기상환 받은 CP 사본을 통보 → 투금사는 금융소득자료 작성 → 국세청 통보
- \* 1995년 12월 31일 이전 발행 CP로서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연도에 걸치는 경우
  - 원천징수는 할인매출일에 20% 세율을 적용하나,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이자상당액은 종합과세
  - 20% 원천징수한 세액 중 1996년 이후 발생분은 종합과세시 보유기간별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등으로 정산

바. 課稅시스템 構築

- 현재 채권과 CD, 개발신탁수익증권 등은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되고 있으며 채권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음.
  - 다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하게 되면 이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 등이 필요하며 연말까지는 이에 대한 준비는 진행해 나갈 것임.
- 전산프로그램 개발
  - 채권별로 증권금리(표면금리 및 할인액) 및 채권만기 등 기본자료 입력
  - \* 대부분의 채권 등의 기본자료는 증권회사에 이미 입력되어 있음.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 및 원천징수 프로그램 개발

\* 전산개발(보완)할 사항(예시)

- ① 유가증권관리시스템 중 채권관리시스템
- ② 회계처리시스템
- ③ 원리금지급시스템
- ④ 상품채권관리시스템
- ⑤ 계좌 원장관리시스템(위탁자, 저축자 등)
- ⑥ 종합과세시스템 : 국세청통보, 지급조서발급 조회서비스

-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본인에게 통보하는 전산통보프로그램 개발(→ 종합과세 기초자료로 제공)

\* 전산통보프로그램은 이미 개발되어 있으며, 이자지급액 대신 기간이자상당액으로 대체만 하면 됨.

○ 실물거래분에 대한 대책

- '발행수익률' (이자와 할인 또는 할증액)의 확인을 위하여 실물 발행 또는 매출시 표면금리 할인(할증)발행금액을 채권 등의 표면에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 변경

\* 현재 CP 외의 대부분의 채권에는 할인 발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이표채의 경우 현재 이표(coupon)에 이자귀속기간 및 표면금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재하도록 양식 변경

- 할인매출시 원천징수하는 CP 등의 경우는 당해 할인매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 실적을 보유 관리

## 4. 1995年 稅法 施行令 改正(案) (1995년 12월 12일)

## ■ 所得稅法 施行令

## 가. 債券 保有期間利子 課稅方法 등 推進

- 채권 등을 만기 전에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종합과세

現 行	改 正 案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등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와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모든 유가증권(채권, CD, CP, 증개어음, 포지어음, 개발신탁수익증권 등)</li> </ul> </li> <li>○ 법인의 범위 : 모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으로 신청한 단체 포함)</li> <li>○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금 × 약정이자율</li> <li>· 약정이자율 : 표면금리에 할인·할증액을 가감 다만, 전환사채의 경우는 만기보장 수익률</li> </ul> </li> </ul>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천징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자지급시 또는 당해채권의 매입시</li> </ul> </li> </ul>
< 신 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좌 거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시스템 또는 통장 원장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확인</li> </ul> </li> <li>- 실물거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과 거래간 : 법인의 매출확인서</li> <li>· 개인간 : 공정증서</li> </ul> </li> </ul> </li> </ul>

【개정이유】

- 채권 보유기간이자 과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함.
  - 표면금리가 낮은 전환사채의 경우는 표면금리가 아닌 만기 보 장수익률로 보유기간 이자를 계산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사례를 방지

나. 分離課稅 選擇 가능한 5年 以上 長期貯蓄의 範圍 등 規程

- 5년 이상 장기저축에 대해서는 30%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가능

現 行	改 正 案
<p>&lt;신 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년 이상 장기저축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축 계약일로부터 만기일(또는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li> <li>-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원금을 인출할 수 없을 것</li> </ul> </li> <li>○ 이자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매월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음</li> </ul> </li> <li>○ 취급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고유계정)· 상호신용금고· 신탁· 새마을금고· 단위농·수·축협</li> </ul> </li> <li>* 보험사· 은행(신탁계정)· 투신사· 단자사· 증권사· 증권회사는 제외</li> <li>○ 저축상품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 적금· 부금</li> <li>· 다만, 적금· 부금은 균등불입상품만 허용</li> </ul> </li> <li>○ 저축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계약내용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li> </ul> </li> <li>○ 가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5년말 이전 가입분도 허용</li> <li>* 1995년말 이전 발생분은 20% 분리과세</li> </ul> </li> </ul>

## 【개정이유】

- 제도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 방지를 위하여 신설되는 5년 이상 장기저축의 범위를 정함

## 다. 公社債型 證券投資信託受益證券 課稅制度 改善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투자신탁은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구분하여 과세상 달리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채 편입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그 이익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과세</li> </ul> </li> <li>- 주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편입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그 이익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li> <li>· 다만,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평가차익에서 발생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채형의 경우도 주식형의 경우와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 및 주식 등 유가증권 매매차익·평가차익에서 발생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li> </ul> </li> <li>○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Income Gain)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수한 매매차익(Capital Gain)만 과세대상에서 제외</li> </ul> </li> </ul>

## 【개정이유】

- 개인이 수취하는 주식양도차익·채권양도차익 및 평가차익은 과세제외되고 있는 것과 형평 감안

라. 信協·새마을금고 控除差益 課稅轉換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5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차익은 과세</li> <li>- 보험회사의 생명·손해보험</li> <li>- 농·수·축협중앙회의 생명 손해공제</li> <li>- 체신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탁중앙회·새마을금고연합회가 취급하는 저축성 공제상품의 공제차익도 과세</li> <li>·보장성 공제상품의 경우에는 연 50만원 한도의 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li> </ul>

【개정이유】

- 신탁이나 새마을금고의 공제는 보험과 유사하므로 공제차익을 과세로 전환
  - 공제상품 가입자의 불입액은 보험료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보험료 공제(연 50만원) 인정

마. 源泉徵收時期 및 收入期間 調整 등

現 行	改 正 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만기상환일에 원천징수</li> <li>- 다만, CP는 예외적으로 할인대출일에 원천징수</li> <li>○ 무기명개발신탁 수익증권</li> <li>-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원천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 및 표지어음은 납세자가 원천징수시기를 만기상환일 또는 할인대출일 중 선택</li> <li>- 다만, 할인대출일에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보관통장방식에 의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한함.</li> <li>-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li> </ul>

【개정이유】

- CP와 표지어음의 경우 일반채권 및 예금과 형평을 맞추어 납세자가 원천징수시기를 할인매출일과 만기상환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 무기명개발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소득자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시기를 지급받은 날로 조정

■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더불어 일상적인 소액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0% 원천세율로 분리과세

現 行	改 正 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요건</li> <li>- 1세대 1통장</li> <li>- 불입한도(원금잔액기준): 1,200만원</li> <li>-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의 결제가 가능한 계좌</li> </ul>

【개정이유】

-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가계수표 또는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가 가능한 계좌로 한정

〈시행시기〉

-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附錄 III. 主要國의 金融所得 課稅制度<sup>1)</sup>

### 1. 美國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 가. 綜合所得稅制度

##### 1)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의 範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미국시민, 거주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이다. 美國市民의 경우 종합소득세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은 居住, 非居住를 불문하고 全世界에서 취득한 소득이고, 居住外國人은 미국 내 거주기간에 걸친 전세계에서 취득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非居住外國人은 미국 내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만 과세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총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데, 이때 總所得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源泉如何를 불문한 모든 소득을 말한다. 구체적인 소득의 종류는 <附表 III-1>과 같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控除는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事業經費控除(Business Deductions)와 의료비 공제, 기부금공제, 잡손실공제, 차입이자저불공제 등의 경비를 인정하는 事業外控除(Nonbusiness Deductions), 기초공제, 부양가족공제에 해당하는 人的控除(Personal Exemptions)로 나누어진다.

1) 本章의 內容은 韓國租稅研究院에서 發刊한 『國稅行政 改革方案』, pp. 468~513의 內容을 轉載한 것이다. 各國의 制度는 세법개정으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柳時權 外, 『國稅行政 改革方案』, 韓國租稅研究院, 1994.10. 참조.

< 附表 Ⅲ-1 > 所得의 種類

총 소 득	근로에 대한 보수 사업에서 생기는 총소득 자산의 거래에서 생기는 이득 이자 임대료 로열티 배당 부양료, 별거수당 연금 생명보험계약, 양로보험계약으로부터의 소득 퇴직연금 채무면제에 의해 생기는 소득 조합총소득으로부터의 분배지분 피상속인에 관한 소득 유산재산 또는 신탁재산의 권리에서의 소득
-------	--

2) 綜合所得稅 稅率

종합소득세율은 5단계 累進稅率體系를 갖고 있으며 獨身者用, 家口主用, 夫婦別算用, 夫婦合算用의 네 가지 세율표가 사용되고 있다. 단, 과세계급 구분기준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되지만 1995년까지 상위 두 계급의 기준은 조정되지 않는다.

가) 夫婦合算의 경우

(단위: 달러, %)

과세소득 구분	한 계 세 율
36,900 이하	과세소득의 15
36,900 ~ 89,150	과세소득의 28
89,150 ~ 140,000	과세소득의 31
140,000 ~ 250,000	과세소득의 36
250,000 이상	과세소득의 39.6

나) 夫婦別算의 경우

(단위: 달러, %)

과세소득 구분	한 계 세 율
18,450 이하	과세소득의 15
18,450 ~ 44,575	과세소득의 28
44,575 ~ 70,000	과세소득의 31
70,000 ~ 125,000	과세소득의 36
125,000 이상	과세소득의 39.6

다) 家口主의 경우

(단위: 달러, %)

과세소득 구분	한 계 세 율
29,600 이하	과세소득의 15
29,600 ~ 76,400	과세소득의 28
76,400 ~ 127,500	과세소득의 31
127,500 ~ 250,000	과세소득의 36
250,000 이상	과세소득의 39.6

라) 獨身의 경우

(단위: 달러, %)

과세소득 구분	한 계 세 율
22,100 이하	과세소득의 15
22,100 ~ 53,500	과세소득의 28
53,500 ~ 115,000	과세소득의 31
115,000 ~ 250,000	과세소득의 36
250,000 이상	과세소득의 39.65

마) 遺産財産과 信託資産 所得의 申告

(단위: 달러, %)

과세소득 구분	한 계 세 율
1,500 이하	과세소득의 15
1,500 ~ 3,500	과세소득의 28
3,500 ~ 5,500	과세소득의 31
5,500 ~ 7,500	과세소득의 36
7,500 이상	과세소득의 39.6

####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일반적으로 金融所得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 후 통상의 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고 있다. 利子·配當所得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1982년부터 納稅者番號制度를 실시하고 있고, 이자·배당을 年 10달러 이상 지불하는 자는 국세청에 지불조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982년 이자·배당소득의 신고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명되어 課稅의 公平과 稅收增大를 위해 1982년도에 10% 이자배당 源泉徵收課稅制度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10% 원천징수제도는 금융업계의 격렬한 저항으로 연기되었다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수취인이 이자배당의 지불자에게 납세번호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 括 源泉徵收制度(Backup Withholding System)를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수취이자, 배당금, 기타 지급에 대해 지급액의 31%를 원천징수하는 - 括 源泉徵收制度(Backup Withholding System)를 적용하는데, 1) 수취인이 납세번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취인이 납세번호를 틀리게 제공하여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경우, 3) 국세청으로부터 수취인이 이자 및 배당금에서 원천징수 대상자라는 통고를 받은 경우, 4) 1983년 이후에 개설된 이자 및 배당 계정에 대해 수취인이 위의 3)항하의 원천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 5) 1983년 이후에 개설된 이자, 배당, 물물교환 계

< 附表 Ⅲ-2 > 樣式의 種類

	양식의 내용
양식 W-8 : 외국인자격 증명	양식 W-8은 이자, 중개거래, 물물교환거래의 지급상에서 비거주외국인과 외국기업이 미국의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자, 중개, 물물교환거래에서 지불하는 사람은 이 증명서를 얻기 위하여 양식 W-8을 비거주 외국인, 외국인 기업, 외국인 동업기업, 외국 유산재산, 외국 신탁재산에게 보내야 한다.
양식 W-9 : 수취인에 대한 납세번호 요구와 확인	수취인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거나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을 수취인으로부터 증명받을 경우 양식 W-9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 의해서만 수취인이 제공한 납세자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납세자번호나 사회보장번호를 노출시키거나 연방법에 위배되게 이용하면 형사상의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정 또는 1983년에 비활동 중개계좌의 경우 수취인이 제공한 납세자번호가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31%의 세율로 源泉徵收해야 하는 期間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취인이 납세자번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 아니면 납세자번호를 제공할 때까지 원천징수하고, 이때 납세번호를 대기중인 자 양식 W-9의 납세자번호欄에 '신청중 Applied for'라고 표기하여 납세번호 대기증임을 증명할 수 있고, 60일 이내에 납세자번호를 받지 못하면 원천징수를 시작하여 납세번호를 제공할 때까지 계속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둘째, 納稅者番號 訂正確認書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확인서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받을 때까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넷째, 국세청으로부터 수취인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후의 지급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이나 수취인으로부터 중단하라는 국세청의 통지서를 받으면 이를 중단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는 그 통지서를 받은 다음 해 1월 1일에 중단한다.

다섯째, 국세청으로부터 수취인이 제공한 납세번호가 잘못되었음을 통고받은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30일 이후의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착수하고(국세청으로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언제든지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시작할 수 있다), 확정된 납세번호를 받고 30일 이내에 원천징수를 중단한다.

참고로 납세번호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은 첫째, 납세번호가 국세청의 번호 및 社會保障簿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째, 국세청의 번호 및 사회보장부의 번호와는 일치하지만 납세번호에 해당하는 이름이 소득신고상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납세번호가 잘못된 경우이다.

전년도에 所得申告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납세번호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서의 사본과 양식 W-9를 수취인에게 보내어 (1) 국세청이 수취인이 제출한 납세번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정했다는 것, (2) 신고소득에 대하여 각각 20%의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것을 수취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잘못된 납세번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후에 한 지급은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한다. 확정된 납세번호를 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중지한다. 만약 수취인이 확정된 다른 납세번호를 제출하면 그 번호를 이용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 다. 所得資料 提出

##### 1) 所得資料의 區分

所得資料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樣式을 말하는데, 소득자료는 1) 소득세법의 특정대상인 同業企業(partnership), 免稅機關, S corporation으로 불리는 규모가 작은 기업(Pub. 589)의 소득자료, 2) 고용주가 종업원들에게 지불하는 給與와 其他 支給額 報告資料(Pub. 937), 3) 共濟加入者의 所得資料(양식 5500), 4) 非從業員에 대한 지급과 타인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자료로 구분된다.

法人과 同業企業(partnership)은 1) 의료비지급, 2) 연방소득세와 의 국납부세의 원천징수, 3) 물물교환거래, 4) 배당금과 비과세 소득을 대신한 대체 지급, 5) 부동산 저당소득의 소지자에게 지급 또는 발생하는 이자 또는 원금 발행할인액, 6)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취득 및 포기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수취인의 이름이 法人格(株式會社, (株)○○, ○○法人 등)으로 끝나면 법인을 수취인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동업기업에 지급한 것은 보고해야 한다.

受取名義人 또는 仲介人의 소득의 경우 만약 다른 사람 소유의 금전에 대한 소득자료를 받은 경우는 수취인으로서 實際所有者임을 밝히는 같은 형태의 소득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비종업원과 타인과의 거래에 대한 지급보고는 양식 1099 일체를 이용하는데 이 양식들은 일반 경비지급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기타의 양식은 특정하게 지급받았거나, 지급한 특정 기타 거래를 보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다.

##### 2) 提出書式

제출서식의 종류 및 내용은 <附表 III-3>과 같다.

〈附表 Ⅲ-3〉 提出書式的 種類 및 內容

	제 목	보고내용	보고대상금액	국세청	수취인
1042 -S	원천징수 대 상인 외국인의 국내 소득원	이자, 배당금, 로열티, 연금, 도박상금, 인적 용역에 대한 보수를 포함한 법 3장에 의 하여 원천징수 대상 이 되는 지급	전액	3.15	3.15
1098	담보증서 이자 계산	개인으로부터 사업 상 받은 담보증서 이자	\$600 이상	2.28	차용인 지급인 에게 1.31
1099 -A	담보받은 자산의 인수 및 포기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경우에 빚을 담보로 받은 자산의 인수 및 포기에 대한 정보	전액	2.28	차용인 에게 1.31
1099 -B	중개거래와 교환거래에서 얻은 수익	주식매도 또는 상환, 선물거래, 상품거래, 물물교환 거래	전액	2.28	1.31
1099 -DIV	배당금과 주식배당	주식에 대하여 지급 받은 배당금, 주식 배당, 자본이득배당 또는 비과세배당, 상환 배당	\$10이상 단, 상환배당인 경우 \$600이상	2.28	1.31
1099 -G	특정한 정부지급	실업보상금, 주· 지방소득세 환급금, 농업보조금, 조세 보조금, 연방정부 에서 받은 탕감액	실업수당과 조세환급금인 경우는 \$10이상, 기타의 경우는 \$600이상	2.28	1.31
1099 -INT	이자소득	IRA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 이자 지급	\$10 이상 어떤 경우에는 \$600이상	2.28	1.31
1099-OID	할인발행자금	할인발행차금	\$10 이상	2.28	1.31
1099 -PART	협동조합에서 받은 과세 배당소득	협동조합이 동업자 에게 주는 배당 내역	\$10 이상	2.28	1.31

< 附表 III-3 >의 계속

	세 목	보고내용	보고대상금액	국세청	수취인
1099-R	연금, 기금, 퇴직연금 또는 이윤할당제, IRAs, 보험협약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퇴직연금 또는 이윤할당제, IRAs, SEP, 보험협약	전 액	2.28	1.31
1099-S	부동산거래로 인한 이득	부동산의 매매로 얻은 총수익	전 액	2.28	1.31
1099-MISC	잡소득 (\$5,000 이상의 직판 또는 소비재의 소매의 보고도 양식을 이용한다).	<p>임대료 및 로열티 지급,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닌 TV 또는 라디오 쇼프로그램에서 받은 상금</p> <p>어선의 선주 또는 기관장이 선원들에게 주는 지급, 수렴물의 판매로 얻은 수익의 지급에 대한 보고</p> <p>의사, 병원, 그외 의료 보조 프로그램 또는 사고보험 계획에서 주로 제공되는 건강 및 의료용역에 대한 지급</p> <p>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사업과정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지급. (예) 하청인, 감독자에게 주는 급료, 비종업원에 대한 보수로 처리되는</p>	<p>\$600 이상 단, 로열티의 경우는 \$10 이상</p> <p>전 액</p> <p>\$6,000 이상</p> <p>\$600 이상</p>	2.28	1.31

〈附表 Ⅲ-3〉의 계속

	제 목	보고내용	보고대상금액	국세청	수취인
		오락시설 이용료 대체 배당금과 비과세 이자, 중개인에 의해서 보고할 만한 소득	\$10 이상		
		군인보험차익금	\$600 이상		
4789	현금거래보고	\$10,000 이상의 현금거래로 이루어지는 예금, 인출, 환전 혹은 금융기관(카지노는 제 외)에 의하거나(by) 금융기관을 경유하거나 (through), 혹은 금융 기관에 귀속되는(to) 현금거래 지급이나 이전	\$10,000 이상	거래일 이후 15일 이내	불필요
5498	IRA자료	IRA에 대한 부담금과 IRA 또는 단순고용 연금(SEP) 계정의 가치	전액	3.31	가입자에게 는 계정의 현재 가치에 대한 내용을 1월 31일 까지, 부담 금에 대한 대한 내용은 3월 31일 까지
8027	봉사료소득에 대한 고용주의 연간소득 자료	요식업을 경영하면서 받은 종업원에 의하여 보고되는 봉사료와 배분된 봉사료	별도의 지침서 참조	2월의 마지막 날	배분된 봉사료는 양식 W-2 1월31일까지
8300	사업상 받은 \$10,000 이상의	1회의 거래 또는 2회 이상의 관련거래로	\$10,000 이상	거래일 이후	지급인에게 1월 31일

<附表 III-3 >의 계속

	제 목	보고내용	보고대상금액	국세청	수취인
	현금지급에 대한 보고	사업상 받은 현금 및 외환 지급금 양식 4789를 신고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과 양식 8362를 신고하는 카지노와 국외에서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음		15일 이내	
8308	특정한 동업 기업지분의 매매에 대한 보고	환금하지 않은 수취 어음 및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재고를 포함한 동업기업 지분의 매매	거래만	보통 양식 1965에 첨부	인수자와 피인수자 모두에게 1월 31일
W-2G	특정한 도박 상금	승마, 하이알라이, 복권, 사격, 빙고, 슬롯, 머신, 키노의 우승상금	일반적으로 \$600이상, 빙고·슬롯머신은 \$1,200 이상, 키노는 \$1,500 이상	2.28	1.31
W-2	급여 및 세금계산서	급여, 봉사료, 기타 보수, 원천징수된 소득,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EIC 지급금, 상여, 휴가 수당, 퇴직수당, 이사비용 지급금, 여비수당, 산재수당	별도의 지침서 참조	SSA에게 2월 마지막 날	1.31

3) 提出時期 및 方法

1993년 3월 1일 이전까지 樣式 1099 일체, W-2G, 1098을 신고한다. 만약 서면양식으로 신고한다면 양식 1096(Annual Summary and Transmittal of U.S. Information Returns)과 함께 위의 신고양식을 국

세청에 제출한다. 각각의 양식의 형태에 따라 양식 1096은 별도로 이용해야 한다.

양식 1096과 적절한 所得資料(information return)를 국세청에 보낸다. 국세청신고 센터의 주소는 각 양식에 게재되어 있다. 신고할 소득자료가 250개 이상이면 마그네틱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250개의 보고서는 각 양식마다 개별적으로 이용된다. 마그네틱 매체 보고에 대한 접수 절차는 국세청 서비스센터와 관할 부서에서 받는다.

만약 마그네틱 매체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거나 신고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마감 30일 전까지(전자자료인 경우는 45일 전까지) 양식 4419(Application for Filing Information Returns Magnetically/Electronically)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국세청은 서면이나 다른 수단으로 회신을 한다. 일단 승인을 받았으면 매년 재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文書作成에서 마그네틱 매체를 이용한 申告의 撤回申請을 위하여 양식 8508 (Request for Waiver from Filing Information Returns on Magnetic Media)을 이용한다. 철회신청은 일년에 한 번 이상 할 수 없다.

만약 書面樣式이나 마그네틱 매체 또는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마감일까지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양식 8809(소득자료 신고 연기 신청서)를 받는다. 그러나 필요한 계산서는 마감일까지 수취인에게 전해져야 한다. 영수인에게 명확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계산서를 제공해야 한다.

양식 1098, 1099-A, 1099-B, 1099-G, 1099-Mic, 1099-R, 1099-S, 5498, W-2G에 의해 보고된 자료의 경우, 영수인에게 준 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양식의 사본일 필요는 없다. 계산서에 다른 보고서나 고지서를 합칠 수도 있고, 계산서에 이자에 대한 다른 자료도 포함할 수 있다. 영수인에게 공식적인 국세청 양식으로 받은 사본의 뒤에 적절한 지참을 적어줄 수 있다.

만약 配當金, 同業 配當金 또는 利子를 지급한다면 登記郵便이나 인편으로 공식적인 양식 1099를 지급받는 사람 각각에게 전달해야 한다. 로열티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에게 계산서가 전달되어야 하지만 공식적인 양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계산서에는 1) 양식 W-8, 양식 W-9, 양식 1099 일절, 양식 1098, 양식 5498 수취인 계산서, 2) 양식 W-2 수취인 계산서, 3) 수표 또는 동봉할 수표가 없는 것에 대한 사유서, 4) 동봉한 수취인 계산서에 의한 정보에 따른 조세에 대한 설명서, 5) 수취인 계정의 계산서를 동봉한다.

수취인 계산서는 수표나 계정 계산서에 수취인 계정에 지불을 보이게 천공할 수 있다. 수취인 계산서는 봉투에 넣고 봉한 후에 뚜렷한 글씨로 '중요한 세금신고자료 첨부'라고 쓴다. 위와 같은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봉인하거나 advertising(통지) 또는 promotional material이 없는 경우는 수취인에게 우편으로 계산서를 보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표 또는 계산서가 공식적인 양식과 일치한다면 대체양식 1099를 이용할 수 있고, 인쇄양식 1179가 포함된 대체양식 1099로 납세절차에 응할 수 있다. 대체양식 1099-B, 1099-DIV, 1099-G, 1099-INT, 1099-MISC, W-2G(사본 B)에 대한 수취인의 사본은 반드시 "이것은 중요한 조세자료이고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所得申告를 해야 하는 소득인데 국세청에서 이 소득에 대하여 신고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태만 벌칙 및 다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식 1098, 1099, W-2G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 자료들을 더 일찍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축채권 상환의 경우 양식 1099-INT는 償還期限까지 수취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거래일자에 관계없이 最終配當支給을 양식 1099-PART로 제출할 수 있고 物物交換去來는 1993년 6월 1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양식 1099-B를 신고할 수 있다.

## 4) 未提出時 制裁方法

所得資料의 遲延申告에 대한 처벌은 遲延申告 期間에 따라 다르다.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요구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부정확한 자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받는다. 마감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각 신고서에 \$15의 벌금을 부과하고 罰金の 限度는 일년에 \$75,000이다. 마감일 이후 30일이 경과하고 8월 1일까지는 각 申告書마다 \$30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의 한도는 일년에 \$150,000이다. 8월 1일 이후에 신고하였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각 신고서마다 \$50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벌금의 한도는 일년에 \$250,000이다. 中小企業(small business)도 각 신고서마다 위와 동일한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최고한도는 각 기간에 따라 \$25,000, \$50,000, \$100,000이다.

수취인에게 지정한 날까지 지정한 內譯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못한 내역서마다 \$50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벌금의 한도는 일년에 \$100,000이다. 필요한 자료를 모두 포함하지 못했거나 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벌금처벌을 받는다.

지정된 날까지 특정한 자료상의 보고요건에 따르지 못하면 불이행 건수마다 \$50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벌금의 한도는 \$100,000이다. 이러한 요건 중에 대부분은 자료의 所得申告書, 內譯書, 기타 다른 자료의 제출과 포함한 납세번호와 관련된 것들이다. 단, 요구사항을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고의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는 벌칙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1일까지 오류가 정정되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자료로 신고된 자료의 수가 작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sup>2)</sup>

1) 秘密保障法의 報告義務

가) 外國人 銀行計定

외국의 銀行, 證券, 其他 金融計定에서 利子を 받았거나 signature authority가 있는 모든 美國人과 機關은 그 外國計定을 미국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에는 보고하는 사람의 소득세 신고서를 포함해야 한다. 필요한 자료로는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계정번호, 외국은행 또는 기관의 명칭, 계정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의 최대금액에 대한 것이다. 關聯計定(The account relationship)은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계정이 25개 이상이면 이 사실을 밝히고 그 계정들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면 된다.

나) 現金의 輸出入

\$5,000 이상의 현금과 通貨手段의 輸出入에 관계한 사람이나 기관은 언제든지 그 거래를 미국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화폐, 은행수표, 여행자 수표, 환어음, 투자증권, 양도성예금증서에 적용된다. 우선적인 보고의무는 개인적인 현금의 송금 또는 이동에 대한 것이다. 송금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수령인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受領金額, 受領日, 通貨手段의 形態, 送金者의 身元을 밝혀야 한다. 은행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이동된 현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은행은 외국에서 받은 현금을 外換去來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10,000 이상의 現金去來

각 금융기관은 미국정부에 預金, 引出, 換錢 또는 \$10,000 이상의 現

2) 미국의 Bank Secret Act를 요약하였음.

金の移轉에 대한 것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國外去來와 國內去來에 모두 적용된다. 이 규정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화폐에는 적용되지만 수표나 통상 화폐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표나 양도성 예금증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보고는 거래일 이후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의무는 국내외에 관계없이 銀行間의 去來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은 소매점, 대중음식점, 운동경기장, 오락공원과 같은 합법적인 국내영업에 대한 통상적인 거래는 제외할 수 있다. 正規 給與引出도 제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은 '고객알기'규칙('know your customer' rule)에 근거를 둔다.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은 현금거래가 보고되지 않은 모든 고객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秘密保障法에 의한 記錄保管義務

### 가) 外國銀行 計定

외국은행계정에서 金融所得 利子를 갖는 개인이나 기관은 그 계정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計定保有者の 이름, 계정번호, 서명, 외국은행 및 계정을 관리하고 있는 기타의 사람의 이름과 주소, 계정의 유형, 보고기간 동안의 최대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5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조사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5,000 이상의 國內貸出 및 國外貸出

금융기관은 不動産을 담보하지 않는 \$5,000 이상의 信用貸出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국내거래와 국외거래에 모두 적용된다. 이 기록에는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고객의 이름과 주소, 대출일자와 금액을 포함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는 거래의 성격과 목적도 포함해야 한다.

### 다) \$10,000 이상의 海外移轉

금융기관은 現金이나 信用狀으로 개인계정간 그리고 미국 외의 다른 곳으로 \$10,000 이상이 이전되는 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통지서, 요청서, 금융기관이 받거나 금융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준 거래와 관련된 설명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 의무는 고객이 휴가나 사업상의 출장으로 국외에 6개월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10,000 이상의 現金去來

금융기관은 금액상 \$10,000 이상의 현금이 관여된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記錄保管義務는 국내외거래에 모두 적용된다. 현금이란 발행국에서 통상 화폐로 받아들여지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화폐(동전 포함)를 의미한다. 특히 금융기관은 실제로 보고하는 現金去來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기록에는 예외에 대한 보증과 사유, 관여한 국내은행의 이름과 주소, 이와 같은 예외를 받은 고객의 이름, 주소, 직업, 납세번호, 계정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고객에 대한 예외 기록은 인출, 예금에 관계없이 취급하고 예외에 대한 금액한도를 명시해야 한다. 재무부 규정은 그 기록들을 한 데 모아서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록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顧客의 身元

금융기관은 讓渡性 預金證書를 팔거나 預金計定을 개설한 후 45일 이내에 각 예금계정 고객의 納稅番號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계정이나 증서가 두 사람 이상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금융기관은 고객들 중에 한 명의 납세번호만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비록 납세번호를 입수하지 못하더라도 (1) 납세번호를 입수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하였거나 (2) 납세번호를 제시하지 않은 모든 고객의 이름, 주소, 계정번호목록을 보관하고 있으면 비밀보장법을 위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계정을 개설할 때 요청하고 서면으로 추가의 요청을 하여 '상당한 노력' 의무를 충족시켜야만 된다. 秘密保障法은 이러한 의무를 면제하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다.

#### 바) 手票와 어음

금융기관은 수표, 어음, 금융기관에서 인출되거나 금융기관에 의하여 발행되고 지급해야 할 \$100 이상의 환어음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본들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유기법을 이용해서 보관할 수 있다. 외형이 큰 商業計定, 企業計定, 政府計定の 配當金이나 給與와 같은 것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수표의 앞뒷면의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이면이 백지이거나 규격화된 인쇄양식만 있는 경우는 앞면만 한다.

#### 사) 기타 기록

금융기관은 계정에 대한 많은 기록들의 原本 및 寫本을 보관하여야 한다.

## 2. 英國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 가. 綜合所得稅制度

영국 所得稅는 1799년의 소위 「피트의 소득세」에서 시작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歷史를 가지고 있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영국의 소득세는 독자적인 발전을 하여 스케줄제도나 源泉徵收制度(PAYE) 등 영국의 독특한 제도가 되었다.

#### 1) 納稅義務者

영국의 所得稅 納稅義務者는 그 개인의 거주형태에 따라 판정되며,

원칙적으로 영국의 통상 居住者라면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非居住者의 경우에는 영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영국 稅法上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4월 5일로 종료하는 각 稅務年度마다 판정된다. 판정의 기준은 세법상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거주자로 판정된다.

- ① 세무연도중 183일 이상 영국에 체재하는 경우(입국일과 출국일은 제외한다)
- ② 과거 4세무연도 연속해서 영국에 체재하고 그 평균체재일수가 1년에 3개월 이상인 경우
- ③ 영국에 사용가능한 거주(통상은 자기 집을 의미한다)를 갖고 있는 경우 — 이 경우에는 영국에서의 체재기간이 단기이더라도 다음 세무연도에서 거주자로 된다.

1년마다의 거주가 아니며 영국에 상태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통상의 거주자로 판정되며 과세범위가 보다 넓게 된다. 실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통상의 거주로 판정된다.

- ① 당초부터 3년 이상 체재할 예정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때부터 통상의 거주자로 된다.
- ② 영국에 입국할 때 체재예정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으로부터 3년 경과한 후의 최초의 4월 6일부터 통상의 거주자로서 취급된다.
- ③ 영국에서 거주용 주택을 구입 또는 3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구입 또는 임대차한 최초의 연도부터 통상의 거주자로 된다.
- ④ 과거 4세무연도 연속해서 영국에 체재하고 그 평균체재일수가 1년에 3개월 이상인 경우 익년도부터 통상의 거주자로서 취급된다.

개인이 최종적으로 영주를 생각하고 있는 항구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永住地라 하며 개인은 동시에 2개의 영주지를 가질 수 없다. 영국을 영

주지로 하는 영주자는 비영주자보다도 課稅範圍가 넓다.

## 2) 課稅所得의 範圍

課稅對象이 되는 소득의 계산으로는 스케줄제도(Schedular System)가 있다. 이것은 소득을 그 원천에 따라 스케줄A(부동산소득), 스케줄C(공채이자소득 등), 스케줄D(사업소득 등), 스케줄E(급여소득 등), 스케줄F(배당소득)의 5가지의 스케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 구분마다의 소득을 損益通算한 다음에 綜合課稅하는 制度이다. 이 스케줄에 해당하는 소득은 모두 과세되지만 다른 소득, 예컨대 현상금에 의한 소득이나 증여에 의한 소득과 같이 위의 스케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과세된다.

스케줄A는 영국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서 생긴 賃賃料, 기타 유사한 지불금에서의 소득이다. 임대료 등의 수입에서 必要經費를 뺀 것이 소득이다.

스케줄C는 영국의 국내에서 公共團體 등으로부터 지불되는 公債利子 등으로부터의 소득이다.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지불시에 源泉徵收된다.

스케줄D는 다음의 6종류로 구분된다. 제1종은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 제2종은 전문적 직업에서 생기는 소득, 제3종은 이자·연금·할인료 스케줄C에 속하지 않는 공채이자에서의 소득, 제4종은 영국 국외의 증권에서 생기는 소득, 제5종은 영국 국외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제6종은 다른 스케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스케줄D의 타 종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득이다.

스케줄E는 고용에서 얻는 보수 등의 소득이다. 이 중에는 給與, 退職金 등이 포함된다. 給與所得에 대하여는 給與所得控除는 없이 職務上 부득이 지출한 費用의 공제가 인정되는 정도이다. 또, 독특한 영국 源泉徵收制度인 PAYE에 의하여 납세된다(PAYE에 대하여는 후술).

스케줄F는 영국 國內法人에서 받는 配當으로부터의 所得이다. 이 소

득에 관한 납세는 豫納法人稅(Advance Corporation Tax ; ACT)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것에는 상기 스케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득 이외에 소득세법에서 특히 非課稅所得으로서 인정된 것이 있다. 소득세법상 특히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國民貯蓄銀行(National Savings Bank)의 普通預金の 70파운드까지의 이자, 國民貯蓄債券(National Savings Certificates)의 利子, 非課稅貯蓄特別口座(Tax-exempt Special Savings Accounts ; TESSA)의 利子, 아동수당, 3만파운드까지의 퇴직수당, 전쟁미망인에 대한 수당 등이 있다.

영주자인 거주자 및 통상의 거주자는 雇傭契約에 의한 업무가 실시된 장소나 영국에 대한 소득의 送金 有無에 관계없이 雇傭所得 金額이 課稅對象으로 된다. 配當 利子所得이나 事業所得 등의 기타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비영주자인 통상의 거주자가 거주자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급여소득은 영국 송금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과세대상이 된다. 고용주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영국 외에서의 업무에 관하여 별개의 雇傭契約을 체결하며 당해업무에 관계되는 소득을 영국 외에서 취급한다면 영국에 송금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비영주자인 통상의 거주자 이외의 거주자가 영국 외에서 실시한 업무에 관계되어 취급한 급여소득은 영국에 송금된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비영주자인 거주자 및 통상 거주자의 國外源泉 投資所得에 대해서는 송금베이스로 과세된다. 따라서, 영국 외에서 발생한 배당 이자소득이나 부동산소득 등은 영국에 송금된 금액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비영주자인 거주자 및 통상 거주자의 영국 외 資産處分에서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영국에 송금된 금액만이 과세대상으로 된다. 비거주자는 영국원천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 3) 控除制度

영국에서는 각 納稅者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所得控除나 稅額控除의 制度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前年の 物價上昇率에 합하여 매년 변경되고 있다. 다만, 그해의 재정사정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1993년도 세계개정안에서는 1993년도에 적용될 제 공제액의 거치가 제안되어 있다).

모든 납세자에 인정되는 基礎控除(Personal Allowance)는 현재 3,455파운드이다. 이 기초공제는 65세 이상은 4,200파운드, 75세 이상은 4,370파운드로 인상된다. 다만, 이 控除의 割増適用을 받기 위하여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課稅單位는 원칙적으로 個人이다. 다만, 夫婦에 대하여는 夫婦控除(Married Couple's Allowance)가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당해 공제는 먼저 夫의 所得에서 공제되고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妻의 所得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취급은 남녀를 세제상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1993년도 이후 선택에 따라 당해 공제의 반을 먼저 妻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부부쌍방의 합의가 있으면 공제의 전액을 妻의 所得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소득세 창설 당시부터 夫婦는 1단위로 하여 合算課稅되어 왔으나 합산과세에 의한 세부담의 상승을 피하고 여성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개선되어 1990년 4월 이후 夫婦는 個別課稅로 이행되었다.

夫婦에 대해서는 1,720파운드의 夫婦控除가 인정되고 있다. 이 공제는 원칙적으로 먼저 夫의 所得에서 控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93년도 이후 선택에 따라 먼저 妻의 所得에서 控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 부부공제도 基礎控除와 같이 高齡者에 대하여 높은 控除額을 인정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2,465파운드, 75세 이상은 2,505파운드로 인상하였다. 다만, 이 控除의 割増을 받기 위하여

는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또한, 1993년도 稅制改正案에서는 1994년 4월 이후 夫婦控除 및 그와 연동하는 控除의 적용을 輕減稅率 20%의 적용소득에 제한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가) 人的控除 및 其他控除

人的控除는 다음과 같다.

(단위: 파운드)

	1991/92
기 초 공 제	3,295
배 우 자 공 제	1,720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90년 4월 6일부터 夫婦의 合算課稅制度가 廢止되고 夫婦가 각각 納稅義務者로 되는 個別課稅制度가 導入되었다. 부부에게는 각각 기초공제가 부여되지만 配偶者控除는 우선 夫에게 부여된다. 夫의 소득이 낮아 이 배우자공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妻가 이 배우자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課稅年度의 일부만 영국거주자인 경우에도 基礎控除 및 配偶者控除는 全額利用할 수 있다. 다만, 연도의 도중에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期間按分된다. 반면,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扶養控除制度는 없다.

社會保險料(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의 個人負擔分은 所得控除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適格個人年金의 賦金은 所得控除가 인정되어 있다. 賦金の 限度額은 年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賦金の 對象이 되는 所得은 7만 1,400파운드가 上限이다.

자기의 주된 거주에 사용하는 住宅의 購入 또는 改築을 위한 借入金 利子에 대해서는 借入金の 原本 3만파운드에 대응하는 利子の 所得公제가 인정되어 있다. 다만 控除額은 基本稅額 相當額으로 制限되어 있다.

〈附表 Ⅲ-4〉 年齡 階級別 賦金限度額

연 령	한 도 액 (%)
~ 35	대상소득의 17.5
36 ~ 45	20.0
46 ~ 50	25.0
51 ~ 55	30.0
56 ~ 60	35.0
61 ~	40.0

慈善團體에 대한 寄附金은 證書에 의한 4년 이상의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경우, 1회뿐이라도 600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및 給與控除方式으로 지불하는 경우(1년도 600파운드 이내)에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다.

#### 나) 稅額控除

영국 居住法人으로부터 수취하는 配當金에 적용되어 있는 稅額控除는 債務에서 控除할 수 있다. 支拂人의 「소득에 대한 charge」를 구성하는 年次支拂金은 지불시에 基本稅率에 의해 소득세가 源泉徵收되며 당해 源泉所得稅는 債務에서 控除할 수 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소득에 영국소득세의 實效稅率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가 인정된다. 控除限度를 초과한 부분의 이월은 인정되지 않는다. 外國稅額控除를 이용하지 않고 經費로서 損金에 算入하는 것도 가능하다.

#### 4) 稅率體系

所得稅의 稅率은 超過累進稅率로 되어 있다. 현재의 세율구조는 20, 25, 40%의 3단계로 되어 있다. 「대처」정권의 성립 이후 세율구조의 완화가 추진된 결과, 1978년도에는 11단계였던 세율이 1988년도에는 2단

계(25, 40%)까지 감소되었다. 또, 대부분의 납세자가 포함되는 基本稅率은 1978년도에는 83%였던 것이 1988년에는 25%까지 인하되고 最高稅率도 1978년도에는 83%였던 것이 1988년에는 40%로 되었다. 또한, 현행 20% 輕減稅率은 1992년도의 稅制改正에서 도입된 것이다. 1993년도 세제개정안에서는 이 輕減稅率의 適用範圍를 넓히는 것이 제안되어 있다. 즉, 1993~1994년도에는 20%세율 適用上限을 2,500파운드로 그리고 1994~1995년도에는 3천파운드로 인상할 계획이다.

課稅所得에 대한 個人所得稅率은 다음과 같다.

資本利得(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을 과세소득에 가산한 후 아래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소득(파운드)	세 율(%)
1 ~ 2,000	20
2,001 ~ 23,700	25
23,701 ~	40

### 5) 申告와 賦課決定

영국은 賦課方式을 채용하고 있지만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역시 申告書를 제출하여 소득, 공제 및 자본이득의 내역을 세무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賦課決定額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은 법인의 경우와 같다.

給與所得 납세방법에는 PAYE시스템과 Direct collection의 두 가지가 있다. 급여소득의 지불은 통상 고용주가 매월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PAYE(Pay As You Earn)에 의하여야 한다. 社會保險料의 지불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에 의해 납부한다.

Direct collection으로 알려져 있는 대체적 납부방법이 租稅檢査官에 의해 인가되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조세검사관의 견적에 의한 賦課決定에 따라서 4회로 나누어 豫定納稅하여 연도종료 후, 신고에 의거한 最終賦課決定額과의 差額을 납부하는 것으로 된다. Direct

collection은 통상 고용주가 영국 내에 고정된 사업장을 갖지 않는 경우이며 조세감사관이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실무상 영국 내에 주재원사무소 등이 회사명의로 은행구좌를 갖고 거기에서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는 Direct collection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줄어들고 있다.

급여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도 말의 신고에 의거한 부과결정에 따라서 납세하여야 한다. 賦課 및 納付의 타이밍은 소득의 종류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決算日을 포함한 稅務年度 종료 후의 1월 1일과 그 후의 7월 1일의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되고 있지 않는 投資所得에 대한 소득세는 수취한 세무연도 종료 후의 1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후의 투자소득에 대하여 高稅率이 적용되는 경우, 高稅率 상당액의 소득세는 수취한 세무연도 종료 후의 12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資本利得에 대한 稅額은 익세무연도의 12월 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利子所得은 綜合課稅된다.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定期分所得稅 課稅時에 精算한다. 1991년 3월까지의 「混合稅率(Composite Rate)」에 의한 源泉徵收가 취해졌다. 이것은 기본세율보다도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기본세율로 원천징수된 것과 유사하게 된다. 基本稅率適用者는 源泉徵收로 과세가 종료되고 割增稅率適用者는 할증세율분을 납세한다. 그러나 課稅最低限 이하의 납세자는 還拂 請求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원천징수되는 세율은 매년 변경되어 모든 구좌보유자가 각자의 세율로 과세된 경우도 동액의 세수가 되는 율로 정하여지고 있다. 예컨대 1990년도의 기본세율은 25%였으나 원천징수세율은 22%였다. 현재 그 제도는 개정되어 이자에 관한 세액은 기본세율 25%로 원천징수되어 할증세율적용자는 신고를 하여 할증세율분을 납세하고 비과세자는 신고에 의하여 환부를 받는 원천징수제도로 되어 있다. 원천징

수한 세금은 매 분기 익월 14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과세최저한 이하자는 미리 원천징수면제의 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영국에서는 비과세의 이자가 있으며, 國民貯蓄債券의 利子, 國民貯蓄銀行의 연 70파운드까지의 預金利子, 非課稅貯蓄特別口座(TESSA)에 예입한 合計殘高 9천파운드까지의 個人預金에서 수취하는 이자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이다. 구체적으로 1) 예금계좌가 法人名義로 된 경우, 2) 영국세법상 통상거주자가 아닌 경우(영국 내에 거주지가 없고 연간 91일 미만 영국에 체류하는 자, 외국에서 온 유학생 및 일시체류자), 3) 원금 5만파운드를 초과하는 特定定期預金, 4) 信託計定, 5) 기타 위에 준하는 내용일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총액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法人稅와의 二重課稅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配當控除가 인정되고 있다. 이 계산은 「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配當額과 그 75분의 25를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산출세액에서 수취배당액의 75분의 25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거주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세액공제(현재 배당금수령액의 25/75)가 적용되며 배당금수령액과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과세대상으로 된다.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가 소득세보다도 큰 경우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에 관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는 直接外國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법인은 間接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은 간접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영국의 소득세제도에서는 원래 資本利得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1962년 이후 자본이득에 대하여도 과세하게 되어 1965년에 자본이득세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초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구별하여 과세하였으나, 1971년 이후 이 구분은 폐지되었다.

현행 資本利得稅 연간 자본이득 중 5,800파운드를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의 附加稅率에 의하여 과세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의 총합과세로 되어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이득은 양도시의 가액에서 취득시의 가액을 차인하여 계산한다. 또, 資本損失(capital loss)이 생긴 경우에는 타 구분의 소득과는 손익통산이 되지 아니하나 그 연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부분은 익년도 이후의 자본이득에서 공제된다.

영국의 소득세제도는 賦課課稅制度를 취하고 있으나, 당국이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신고할 필요가 있다. 課稅期間은 4월 6일에서 익년 4월 5일까지이다. 신고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신고용지 발행일에서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1993년도의 稅制改正案에서 1996년도부터 신고납세를 선택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다. 급여소득에 관한 세액은 영국의 독특한 원천징수제도 PAYE(Pay-As-You-Earn System)에 의하여 징수된다. PAYE에는 급여를 지불하는 고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 되어 급여지불시에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분기마다 국내세입청에 그 세액을 납부한다.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인적 공제 등의 조정은 영국의 PAYE에서는 각 지불시에 그때까지의 支拂額의 累積額에 대하여 조정이 된다. 따라서, 매년조정은 없으며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 다. 金融機關의 所得資料 提出

영국 국세청은 Tax Management Act. 1970 (TMA 1970) 제17조 및 제20조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金融去來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자동적으로 또는 세무조사시 당해 금융기관에 요구하여 입수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TMA 1970 제17조에 따라 각 금융기관은 모든 利子所得者(소득세 원천징수자 및 원천징수면제자)에 관한 자료(이자소득명세서)를 국세청에 정기보고하여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매년 1회, 통상 4월(영국은 정부회계연도가 3월 31일에 종료함)에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고객에 대한 1년간의 利子支給 明細書(성명, 주소, 국민보험번호, 지급일시, 이자소득액수, 원천징수액수 등)를 국세청에 제출한다.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제출하는 자료 이외의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는 TMA 1970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할 때 세무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입수한다. 이 경우 稅務調査와 관련된 特定店舖와 特定人을 明示하여 資料를 要求해야 한다.

####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稅務當局은 金融機關이 소지한 金融去來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장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금융기관은 거래가 중단된 계좌에 대해서도 去來中斷(폐지) 후 2년간 相關자료와 기록을 보존하여 稅務調査時에 提示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claims branch 소속 조사관들은 1991년 이후 4년마다 금융기관에 대해 稅務報告(이자소득제출 등)와 金融去來記錄 保存義務 등을 성실하게 하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한다.

利子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稅法上의 非居住者에 대한 點檢은 국세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한 독립적인 外部監査人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단 통상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된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를 위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국세청 조사관이 상부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특정고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응하게 되어 있다.

### 3. 獨逸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 가. 綜合所得稅制度

##### 1)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의 範圍

독일 세법에 의한 소득세 納稅義務者(거주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한 사람이다. 독일에 거주하는 개인은 國內뿐만 아니라 國外의 全所得(독일 자회사의 종업원에 대해서 일본의 친회사로부터 지불된 급여 또는 보너스 등도 포함) 및 특정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지만 이것에는 租稅條約에 의해 각종 면세장치의 적용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非獨立的 勞動에서의 所得(給與所得 등) 또는 외국지점에서의 소득은 통상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비과세로 된다. 그러나 免稅適用을 받은 소득은 課稅所得에 적용되는 稅率의 산출에서는 고려된다.

독일에 비거주하는 개인은 독일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주요한 종류는 독일국 내에서 수행되는 비독립적 노동에 의한 소득, 지점 또는 항구적 시설에 귀속되어야 할 소득, 또한 독일에 있는 부동산에서의 賃貸所得 등이 있다. 課稅對象이 되는 資本利得은 非居住法人에 대한 法人課稅와 유사하다. 비거주자는 통상 독일을 원천으로 하는 배당, 로열티, 채권이자에 대해서 源泉稅가 징수된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개인의 항구적 시설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당해 源泉徵收額에 대해서는 稅額控除가 가능하다.

既婚 居住者는 각각의 소득을 個別課稅나 合算分離課稅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合算分離課稅上에서는 夫婦合算所得의 半額에 대해서 산정된 세액을 2배하게 된다. 非居住者는 既婚이나 獨身을 불문하고 個別課稅가 적용된다. 소득세상에서 자녀는 그 양친과는 별개로 과세된다.

居住納稅義務者는 1) 농림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독립적 노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4) 비독립적 노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자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소득종목에는 은닉된 이익의 배당을 포함하는 배당, 대부금, 은행예금이자를 포함하는 채권이자, 익명파트너로서 받은 分配利益이 포함됨), 6)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 7) 기타 소득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

## 2) 控除制度

7개 소득종목 각각의 총소득에서 각 범주의 소득획득에 관련한 비용(필요경비)이 공제된다. 예를 들면 職業團體에 대한 負擔金, 근무장소로의 통근비, 납세자가 소득획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보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 가) 標準必要經費 控除

實際費用이 다음 標準控除額을 超過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경우는 비독립적 勞動所得은 2천DM, 資產所得은 100DM, 기타 소득은 200DM를 공제할 수 있다.

### 나) 人的控除

거주납세자에게는 그 合算純所得에서 다시 각종 人的控除가 인정된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 납세자에 대한 老年者所得控除(年金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 3,720DM를 한도로 소득의 40%, 寡婦(夫)控除(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5,616DM가 인적공제로 공제된다.

### 다) 特別支出控除

거주자의 개인적 비용으로서, 영업이나 소득획득 목적에도 관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자 및 그 가족이 장래를 대비하기 위한 個人保險料, 社會保險料 및 建築貯蓄金庫에의 拂入金(공제한도가 있음) 등이 保險費用으로 控除되고 교회세, 세무상담비, 기부금, 직업훈련비 등(공제한도액은 없음)이 기타의 特別費用으로 控除된다.

독일국내에 자기 집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연도 이후 7년간 건물의 취득가액 전액과 토지 취득가액의 2분의 1의 합계액에 대해서 5%까지(다만 1만 5천DM를 상한으로 한다)를 공제 가능하다. 1986년 12월 3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에 필요한 住宅資金貸出에 관계되

는 支拂利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 이전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經過措置가 적용된다.

납세자는 實際額의 控除 대신에 자선 목적의 기부금 및 자기의 주택을 독일국내에서 취득한 자는 取得年度를 포함하여 8년간 주택을 建築費用(取得費用) 및 土地資金 半額의 合計 5%까지 1만 5천DM를 한도로 해서 공제할 수 있다. 주택취득을 위한 대출자금의 金利는 그 주택의 취득이 1986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其他 特別費用에 대해서 108DM의 概算控除(부부의 경우는 2배가 된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소득이 비독립적 노동에 의한 소득을 포함한 경우는 당해 비독립적 勞動所得에 의한 금액, 기혼·미혼, 자녀수에 따라 또 保險費用에 대해서는 보다 큰 概算控除를 할 수 있다.

#### 라) 異常負擔控除

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는 재해비 또는 병원비와 같은 負擔金에 대해서는 납세자에 의해서 通常負擔되어야 할 固有負擔分을 초과하는 支出部分을 控除할 수 있다. 납세자가 부양가족, 특히 부양자녀에 대한 직업교육 등에 지출한 때에는 부양자녀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5,400DM,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3,024DM의 공제가 인정된다. 이 공제는 비과세 아동수당을 수취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3) 稅率體系

#### 가) 居住者

獨身者의 경우 5,616DM(기초공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그것에서 8,150DM까지 19%의 限界稅率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는 12만DM 이상에 적용되는 53%의 最高限界稅率까지의 累進稅率이 적용

< 附表 III-5 > 獨身者의 稅負擔

(단위: 마르크, %)

과세소득	세부담	
	세액	평균세율
20,000	2,943	15
40,000	8,067	20
60,000	14,423	24
80,000	21,977	27
100,000	30,743	31
120,000초과	120,000마르크 초과액 × 53% + 40,751마르크	

< 附表 III-6 > 夫婦合算申告時의 稅負擔

(단위: 마르크, %)

과세소득	세부담	
	세액	평균세율
20,000	1,672	8
40,000	5,886	15
60,000	10,708	18
80,000	16,134	20
100,000	22,168	22
120,000	28,846	24
200,000	61,486	31
240,000 초과	240,000마르크 초과액 × 53% + 81,502마르크	

된다.

夫婦인 경우에 거주자는 각각의 소득이 별도로 과세되거나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고 다시 분리하는 合算分離 課稅方法을 선택할 수도 있

다. 다음 <附表 III-5>, <附表 III-6>은 2만DM에서 26만DM까지의 독신자와 합산분리과세를 선택한 부부의 세액표를 예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세는 소득세 또는 노임세의 8%에서 9%(교회세는 소득세법상 공제)이다.

#### 나) 非居住者

所得合算 分離課稅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부부라도 거주독신자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5%를 下廻할 수 없다.

####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最近(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 利子所得 源泉課稅制度가 導入되었다. 1992년 이전은 전환사채, 이익배당사채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의 선취로서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기타 이자소득은 신고에 의해 과세되었는데 이것에 대하여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당시의 利子課稅制度가 違憲이라는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1993년 1월 1일부터 현행 이자소득 일반에 대한 源泉徵收制度가 도입되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적금 이자소득, 국내 및 국외의 회사채에 대한 이자소득, 공개등록 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원천 稅率이 적용된다. 轉換社債와 利益配當社債 등에 대하여 25%의 세율로 각각 원천징수를 하고 있다(이것을 특히 「資本收入稅」라고 부름). 配當所得도 利子所得과 마찬가지로 타 소득과 합하여 과세(종합과세)된다. 종래부터 25%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고 있으며(자본수익세), 1993년 1월부터의 이자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도에 변경은 없었다. 源泉所得稅 및 7.5%의 附加稅를 원천 징수한다. 납세자는 綜合所得稅 申告納付時에 源泉徵收 당한 利子所得稅를 算出稅額에서 控除받는다.

資本利得은 7가지의 소득유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으로는 비과세된다. 다만 投機賣買에 의한 所得이나 人去來에 의한 所得은 각각 「기타의 소득」,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유형에 포함되어 과세된다<sup>3)</sup>.

投機賣買란 取得에서 讓渡까지의 期間이 土地에 대하여는 2년, 其他 資産에 대하여는 6개월 이하인 경우의 讓渡行爲를 의미한다. 투기매매에 의한 소득에는 1천마르크의 면세점이 설정되어 있으며 投機賣買益이 당해 免稅點을 하회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1천마르크 이상의 경우 全投機賣買益이 課稅所得에 포함된다. 이때 大去來란 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최근 5년간에 保有하고 있는 者가 資本의 1%를 초과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거래에 의한 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한 후에 讓渡益이 3천만마르크 이하의 경우는 소득을 합산한 경우의 實效稅率의 2분의 1의 세율이 적용되며 3천만마르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通常稅率로 課稅된다.

#### 다. 源泉徵收와 所得資料 提出

독일은 銀行 등 金融機關이 預金者의 利子所得資料를 國稅청에 通報하도록 義務化하는 稅法規程이 없다. 다만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이자소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을 뿐이다. 납세의무자는 通常 査正期間(Veranlagungszeitraum)이 되는 역년의 3월, 6월, 9월, 12월 매10일에 前분기 査定시의 稅額을 基準으로 豫納(Vorauszahlung)한다. 그리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稅務서에서 송부되는 稅액사정통지서에 의하여 精算納付(Abschlusszahlung)한다.

非獨立勞動所得과 資本財産所得에 대하여는 源泉徵收가 行하여진다. 각각 賃金稅(Lohnsteuer), 資本收益稅(Kapitalertragsteuer)라고 부르고 있으나, 독립적인 稅목은 아니다. 또한 源泉徵收稅額이 所得 전체에 대한 稅額을 上廻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還給된다.

####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稅務당국은 특정인에 대한 金融소득자료를 金融기관에 요청할 수 있

3) 법인의 경우 자본이득은 전액, 통상의 법인소득으로서 과세된다.

으며 이때 금융기관은 당해 고객(납세자)에 대한 預金關聯 資料를 提出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예금자의 預金計定 寫本을 징취할 수 없다(금융기관의 예금자 비밀보호관계 규정).

#### 4. 프랑스의 金融所得 課稅制度

##### 가. 綜合所得稅制度

##### 1) 納稅義務者와 課稅所得의 範圍

프랑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源泉地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된다. 이에 대해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프랑스를 원천지로 하는 소득에만 과세된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개인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첫째, 개인의 주거 또는 주된 주거가 프랑스에 있는 경우 둘째, 개인이 1과세연도에 통산 183일 이상 프랑스에 살고 있다면 프랑스에 '주된 주거'를 갖는 자로 간주한다.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은 프랑스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租稅條約에 의해서 프랑스에 귀속하는 소득을 포함) 및 어떤 프랑스의 자산을 처분한 경우 발생하는 資本利得에 대해서만 課稅된다. 프랑스를 원천으로 하는 配當, 利子 및 로열티를 수취하는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通常 源泉稅 또는 特別稅(prélèvements)에 의해 종료된다.

프랑스에서의 기타 소득,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의 僱傭所得,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등에 관해서 비거주의 개인은 그 平均稅率이 적어도 25%(다만, 납세자가 그의 전세계 소득을 통산한 결과, 프랑스에서 과세되었다면 보다 낮은 實效稅率로 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이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거주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또 상기 25%의 最低稅率을 적용해서 算定한 稅額이 2천프랑 이

하이면 납세는 면제된다.

所得稅의 課稅對象이 되는 것은 동년중에 실현 또는 처분한 소득을 말하는데 내용은 다음의 <附表 III-7>과 같다.

課稅單位는 원칙적으로 가족이므로 夫의 申告所得은 通常 妻 및 扶養하고 있는 子女의 所得을 加算하여야 하지만, 만일 유리하다면 子女의 所得을 分離해서 申告할 수 있다.

## 2) 控除制度

所得控除에는 일정한 소득 범주에만 인정되는 것으로서는 給與所得 控除, 利子配當所得控除, 社會保障料控除 등이, 所得 總額에서 공제가 인정되는 것으로서는 敬老控除, 障礙者控除, 寄附金控除 등이 있다.

從業員 課稅所得의 계산상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社會保險料(다만, 退職年金賦金 등에는 일정한 상한이 있음), 2) 상기의 社會保險料를 控除한 給與所得 10%의 概算費用 控除(다만, 개선비용공제의 상한은 6만 6,950프랑, 하한은 2천프랑), 3) 다만, 납세자가 자신의

< 附表 III-7 > 所得의 種類 및 內容

	소 득 의 내 용
상 공 업 소 득	상업, 공업, 수공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개인소득
부 동 산 소 득	납세자가 소득하는 부동산의 임대로부터 발생한 소득
농 립 업 소 득	자작농, 소작농 등이 농업·임업을 경영해서 얻은 소득
금 여 소 득	급여, 수당, 연금, 종신정기금 등
자 유 직 업 소 득	자유직업의 수행으로 발생한 소득, 기타의 것
동 산 자 본 소 득	주식배당, 예금·채권이자
특정회사임원보수	법률에 예거된 사회임원에 대한 보수
자 본 이 득	동산(유가증권을 포함), 부동산의 자본이득

必要經費가 10% 이상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실제 발생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그것이 필요경비로서 정당한 것이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4) 상기의 공제를 한 후의 殘額에 대한 20%의 給與所得控除(상한은 12만 1,400프랑) 등이다.

綜合所得은 給與, 手當, 年金, 終身定期金 등으로 구성되는데 급여 · 수당에 관해서는 必要經費에 대하여 통상 10%의 概算經費控除가 인정되는 외에 특정한 직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概算控除가 인정된다. 그 내용으로는 1)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실액의 공제도 인정, 2) 연금 · 종신정기금에 관해서도 10%의 공제가 인정, 3)쌍방 모두 10% 공제 후 각각 급여소득공제, 일반공제가 20% 씩 인정 등이 있다.

個人所得控除보다 오히려 所得分割制 또는 所得單位制를 이용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세금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즉, 어떤 가족의 총소득은 단위수에 의해서 나누어지며 다시 1단위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단위 총수를 곱한 것이 전체의 소득금액이 된다. 독신자는 1단위로 계산되며, 부부는 2단위로 계산되고, 부양되는 자녀는 1인당 2분의 1 단위로 세번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또 2분의 1 단위가 추가된다.

稅率은 累進的이기 때문에 所得分割制에 의해 가족의 세금은 통상, 그 총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해서 계산된 세액보다 낮다. 그렇지만 이 제도에 의해 절약할 수 있는 세액은 납세자가 독신, 이혼자 또는 과부의 경우, 1단위를 초과하는 2분의 1 단위마다 또 결혼한 경우는 2단위를 초과하는 2분의 1 단위마다 각각 1만 2,180프랑이 한도가 된다.

稅額控除 項目으로는 납세자의 주된 주거구입 또는 수선을 위한 차입금 연간 이자의 4분의 1이 공제되고, 연간 控除限度額은 1만 5천프랑(기혼자는 3만프랑)이며,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2천프랑이 추가된다. 이 공제는 5년간 적용이 가능하다. 연간 生命保險料의 4분의 1이 공제되고, 공제한도액은 연간 4천프랑이며, 부양하고 있는 자녀 1인당 1천프랑이 추가된다. 이들의 공제는 과세소득이 일정액(1990년도는 1가족 단위당 21만프랑)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3) 稅率體系

個人所得稅率은 法人稅率과 같이 당해 연도에 결정된다.

나. 金融所得 課稅制度

利子所得에는 公社債 그 밖의 流通債券, 債券, 預·積金, 國庫證券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이 포함된다. 利子所得에 관해서는 綜合課稅와 源泉分離課稅(Prélèvement Libératoire)의 選擇이 認定된다. 源泉分離課稅의 경우는 支拂機關이 利子支拂時에 徵收하고, 稅率은 利子の 종류에 따라 15% 또는 35%이다. 다만, 이것에 부가하여 3.1%의 附加稅가 賦課된다(1993년 7월부터 4.4%로 인상).

< 附表 III-8 > 課稅階級에 따른 稅率

(단위: 프랑, %)

과세소득의 구분	각 구분에 대한 세율
0 ~ 36,280	0.0
36,280 ~ 37,920	5.0
37,920 ~ 44,940	9.6
44,940 ~ 71,040	14.4
71,040 ~ 91,320	19.2
91,320 ~ 114,640	24.0
114,640 ~ 138,740	28.8
138,740 ~ 160,060	33.6
160,060 ~ 266,680	38.4
266,680 ~ 366,800	43.2
366,800 ~ 433,880	49.0
433,880 ~ 493,540	53.9
493,540 이상	56.8

대부분의 利子는 課稅되지만, 上場債券이나 社債利子의 年額 가운데 최초의 1만 6천프랑(기혼자의 경우) 및 최초의 8천프랑(독신자의 경우)은 대부분의 경우 非課稅된다. 이것은 상술한 配當所得의 免稅措置와 같은 것이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아니고, 이자 및 배당의 금액을 통산한 것에 대한 한도액인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거주자는 公社債 및 預·積金의 利子를 課稅所得에서 除外하고, 그 대신에 特別稅(prelevement)를 선택할 수 있다.

貯蓄金庫 A통장의 이자, 庶民通帳의 이자, 産業振興計座의 이자, 大衆貯蓄計劃의 범위 안에서 얻은 이자 등은 非課稅(이것들에는 일정한 예입한도액이 설정)된다. 公社債利子는 株式配當과 합해서 독신자의 경우에는 8천프랑, 부부의 경우는 1만 6천프랑의 공제가 인정된다.

配當所得에 포함되는 것은 株式이나 會社의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배당이라는 형태로 분배되는 것을 의미한다. 配當所得에 대한 課稅方式은 綜合課稅이며, 源泉徵收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居住法人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은 배당금액의 50%에 상당하는 稅額控除權(avoir fiscal)이 부여된다. 즉, 수취배당액에 그의 2분의 1(프랑스 법인세율은 33과 3분의 1%이므로 稅後의 配當額의 2분의 1은 세액에 상당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所得總額에 算入한 다음에 稅率表를 적용하고 該當 算出稅額에서 배당의 2분의 1 상당액을 稅額控除하는 計算方法을 취하는 것이다(「임퓨테이션」(Imputation) 방식). 반면, 通常의 法人稅率(33과 3분의 1)에서의 法人稅가 賦課되지 않는 收益에서 配當이 지불되었을 경우에는 稅額控除權은 인정되지만 그 대신에 配當法人이 稅額控除되는 金額에 상당하는 調査稅(Precompte)를 부담하게 된다. 이것은 외국에서 실현된 수익 등 프랑스에서의 法人稅가 免除 또는 課稅對象 外로 되어 있는 경우나, 장기 자본이득 등 法人稅의 輕減稅率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단, 後者の 경우는 法人稅를 부담하고 있는 한 調査稅(Precompte)와 減額된다)에 발생한다. 稅額控除權(avoir fiscal)은 프랑스 거주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租稅條約을 체결한 외국의 거주자에

제도 적용된다. 프랑스의 거주자가 프랑스에서의 投資에 대한 지분이 나, 신탁기금(mutual fund)에 대한 稅額控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한 연도의 일정금액까지 - 기혼자이면 최초의 1만 6천프랑까지, 독신자이면 최초의 8천프랑까지 - 의(稅額控除權을 포함하였다) 배당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有價證券을 제외한 動産, 不動産에 관계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그 보유기간에 따라 課稅方法이 다르다. 法人稅가 적용되는 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개인은 당해 지분 매각익의 연간 합계액이 定額(1990년도는 3만 7,600프랑)을 초과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16% 과세된다. 단기 자본이득(보유기간이 2년 이내의 경우)에 대해서는 통상 소득과 같이 과세된다(다만, 6천프랑의 소득공제가 인정).

長期 資本利得(보유기간이 2년 초과인 경우)은 取得價額(자경비를 포함)이 物價調整을 받고, 不動産에 대해서는 2년 이후, 動産에 대해서는 1년 이후, 保有期間 1년당 3.33%의 資本利得을 감하며, 그 위에 이와 같이 산출한 長期 資本利得의 합계를 5로 나눈 후, 純所得總額에 加算하고 算出稅額 가운데 장기 자본이득의 가산에 의한 증가액을 5배한다. 이와 같이 長期 資本利得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종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年間讓渡總額이 32억 5,800프랑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또한 다른 所得과 綜合되지 않고 16%의 稅率로 分離課稅되는데, 다만 이것에 부가하여 2.1%(1993년 7월부터 3.4%로 인상되었다)의 附加稅가 부과된다. 資本損失은 당년 또는 그것에 계속되는 5년간에 실현된 동종의 자본이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 다. 源泉徵收 및 申告

납세의무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所得總額이나 家族狀況을 상세히 기입한 申告書를 稅務署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는 통상 연 2회(2월 15일까지와 5월 15일까지) 예납이라는 형태로 하고 申告時 清算한다.

徵收面에서 최대의 특징은 給與所得을 포함하여 源泉徵收가 원칙적

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외는 과거의 일정기간 내에 발행된 公社債의 利子和 利子所得에 관해서 源泉分離課稅를 선택한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의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비거주법인이나 프랑스 국외에 주소를 둔 개인은 수취하는 배당에 대하여 25%의 源泉稅가 徵收되며 납세의무는 종료된다.

支拂利子の 源泉徵收의 경우 1987년 1월 1일 이전에 프랑스에서 발행된 社債, 地方債, 流通債券의 利子에 대해서는 수취인이 거주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10%의 源泉稅가 徵收된다. 國債의 利子도 (대부분은 免稅이지만) 같은 원천세가 징수된다.

개인에게 지불된 非登錄債券의 利子에 대한 源泉稅는 2%가 상승되며 個人所得稅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자를 수취하는 거주법인은 10%의 원천세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개인은 원천세를 개인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다음에 서술하는 特別稅(prélèvement)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비거주자는 特別稅(prélèvement)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個人은 通常 所得稅 대신에 특별세(prélèvement)를 지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즉, 公社債 또는 기타 流通債券 利子の 16%, 또 預·積金 利子の 36%를 源泉納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비거주법인이나 프랑스 국외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이자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특별세(prélèvement)가 強制的으로 源泉課稅되며 그것이 最終的인 稅負擔이 된다.

割引債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1985년 6월 1일 이후, 프랑스 거주자에 의해서 취득된 경우 취득자가 통상의 소득세를 대신하여 최종 16%의 源泉稅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源泉稅가 아니고 所得稅가 賦課된다. 한편 외국의 거주자인 경우, 二重課稅防止條約에 의해 源泉稅가 부과된다. 外國換管理法에 의해 인정된 경우 1987년 6월 20일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이자는 국내법에 의해 원천세는 免除된다. 그날 이후 지불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세경감의 표준

적인 form은 요구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해 면제는 국내법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租稅條約과는 관계가 없고 또 외국의 이자 수취인의 상황에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 라. 金融機關의 情報提供 範圍

銀行法 제57조 제1항은 銀行秘密(banking secrecy)을 위반할 경우, 1~6개월 혹은 500프랑~1만 5천프랑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銀行의 秘密維持義務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동 조항은 사실상 金融機關의 業務에 從事하거나 자신의 직무상 秘密情報를 습득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서 그 범위가 아주 넓다.

銀行秘密保護 維持義務 原則의 例外는 實定法에 의해 부여된다. 1984년 銀行法 제57조의 일반적 성질 때문에 직업상 비밀보호의무는 예외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규제에 의해서만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 (1) 프랑스 政策當局者 - 예를 들면 租稅, 稅關, 銀行委員會, 프랑스 銀行, 證券去來委員會, 公企業計定管理統制所, 電算情報漏出 관련 法에 의한 監督機關 - 에 대한 情報傳達 義務
- (2) 刑事訴訟,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혼소송이나 복직소송과 같은 민사소송 혹은 상사소송의 경우 은행비밀보호유지의무의 면제.
- (3) 특정 경우에 어떤 형태의 문서를 인도할 의무
  - a) 압류
  - b) 별거수당의 징수와 벌금의 징수
  - c) 상업적 회사에 대한 1966년 1월 24일 법에 의한 회사의 회계감사원에 대하여

입법자는 은행비밀보호유지의무가 발동될 수 없는, 그리고 정치적 공공정책과 관련된 네 가지 경우를 정의하고 있다. 즉, 秘密保障義務는 형사 재판중인 법정에 대하여, 租稅와 關稅當局에 대하여, 捐稅의 경우,

그리고 國際協力の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租稅節次法 제8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 당국의 기구와 조직, 주 당국에 의해 인가되었거나 통제 받고 있는 자의 기구와 조직, 그리고 행정당국의 통제하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기구나 조직은 중앙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보유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